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Developing the Indicators of Human Rights
in the University

2009. 12.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Developing the Indicators of Human Rights
in the University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 12.

연구수행기관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연구책임자 강 수 택 (경상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중 섭 (경상대학교)

박 재 홍 (경상대학교)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문

대학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제1단계의 지표항목으로 총 311개가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표항목의 인권영역별 대표성, 중요성, 시급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서 두 단계의 압축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30개의 지표항목이 마련되었다. 최종적인 30개의 대학인권 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의 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지표항목으로서

- 1)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
- 2)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에 인권부서,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 하위기구의 설치 여부
- 3) 대학에 공식적인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의 존재 여부
- 4) 대학 차원의 인권증진 계획안의 존재 여부
- 5)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존재 여부
- 6)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

2.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으로서

- 1) 학생선발 안이나 학생활동 규정에 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에 관한 차별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성폭력을 신고할 기구와 피해자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3)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대수
- 4) 학생의 입학 혹은 졸업 요건에 종교 가입 여부나 활동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5) 학교 규정에서 학생들에게 정당가입 같은 정치단체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 6) 학교 규정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 7) 대학평의회나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의 전체 구성원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 8) 학생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 및 재심 요청 기회의 존재 여부
- 9) 인권 및 다문화 관련 강좌의 개설 여부
- 10) 근로학생에 대한 보상지급에 있어서 학교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보상금

지급을 지체하지는 않는지 여부

3. 교수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으로서

- 1)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
- 2)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이나 인종의 교수, 혹은 장애인 교수에 대해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3) 교수가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 4) 교수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 5)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에서 연구, 교육, 학생지도가 아닌 다른 항목의 배점 비율
- 6)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수준
- 7)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4. 일반직원 및 조교 인권에 관련된 지표항목으로서

- 1) 일반직원과 조교의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여부
- 2) 일반직원과 조교가 동료 사이에서나 혹은 재단사람, 교수, 학생과의 사이에서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을 당하여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여부
- 3) 일반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특정한 사상에 대한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4) 대학평의회나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과 조교가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 5) 일반직원과 전업조교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 6)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의 존재 여부
- 7) 일반직원과 조교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들 30개의 지표항목에는 대학 구성원의 인간 존엄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속하는 항목들과 대학의 규정, 기구, 시설, 자원, 계획안에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대학의 인권문화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국가와 대학 스스로가 대학의 인권증진을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

적인 노력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지표항목은 인권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값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간의 인권 문화 성숙도를 손쉽게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최종 단계의 30개 지표항목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지수화 하는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들 지표항목은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의 기준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특별히 공공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학 종합평가 지표들을 대학 인권지표 항목과 비교함으로써 보완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차 례

요약문	1
차례	4
표 목차	7
그림 목차	9
부록 목차	10
I. 서론	11
II. 대학 인권론	14
1. 대학에서의 인권 실행	14
2. 대학 구성원의 인권	17
3. 대학 환경의 인권 실행 요건	20
4. 대학 활동에서의 인권 실행	22
5. 인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대학	23
III. 대학 인권지표의 개발과정과 지표체계	24
1. 사회지표와 대학 인권지표	24
2. 대학 인권지표의 개발 과정과 인권지표 체계	25
IV. 대학 구성원의 인권 1 : 학생 편	41
1. 인간 존엄권	41
2. 시민적 권리	45

3. 정치적 권리	48
4. 경제적 권리	52
5. 사회적 권리	54
6. 문화적 권리	60
7.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61

V. 대학 구성원의 인권 2 : 교수 편 64

1. 인간 존엄권	64
2. 시민적·정치적 권리	69
3. 경제적 권리	72
4. 사회적·문화적 권리	76
5.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78
6.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80

VI. 대학 구성원의 인권 3 : 직원 및 조교 편 81

1. 인간 존엄권	81
2. 시민적 권리	85
3. 정치적 권리	87
4. 경제적·사회적 권리	89
5. 문화적 권리	94
6.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96
7.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97

VII. 대학의 제도 및 운영과 인권 101

1. 대학의 규정과 인권	101
2. 대학의 기구와 인권	103
3. 대학의 재정 및 인력과 인권	106

4. 대학의 시설과 인권	108
5. 대학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111
6.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112
VIII. 대학종합평가 지표와 인권지수	116
1. 대학종합평가 지표와 대학 인권	116
2. 인권지수	120
IX. 맺음말	126
참고문헌	128
부록	131

표 목차

<표 3-1> 학생의 인권지표 체계	29
<표 3-2> 교수의 인권지표 체계	33
<표 3-3>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체계	35
<표 3-4> 조교의 인권지표 체계	37
<표 3-5>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체계	39
<표 4-1> 학생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42
<표 4-2> 학생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43
<표 4-3> 학생의 인간 존엄권 - 안전권 지표	44
<표 4-4> 학생의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지표	46
<표 4-5> 학생의 시민적 권리 - 사생활 보호권 지표	46
<표 4-6> 학생의 시민적 권리 - 학문 자유권 지표	47
<표 4-7> 학생의 시민적 권리 - 종교 자유권 지표	48
<표 4-8>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언론 출판 자유권 지표	49
<표 4-9>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집회 결사 자유권 지표	49
<표 4-10>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자치권 지표	50
<표 4-11>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의사 결정 참여권 지표	51
<표 4-12> 학생의 경제적 권리 - 노동권 지표	52
<표 4-13> 학생의 경제적 권리 - 복지권 지표	53
<표 4-14>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교육 선택권 지표	55
<표 4-15>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교육기회 평등권 지표	56
<표 4-16> 학생의 사회적 권리 - 인권 교육권 지표	56
<표 4-17> 학생의 사회적 권리 - 정보 접근권 지표	57
<표 4-18> 학생의 사회적 권리 - 환경권 지표	58
<표 4-19>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건강권 지표	59

<표 4-20> 학생의 문화적 권리 - 문화활동 참여권 지표	60
<표 4-21> 학생의 문화적 권리 - 종교활동 보장권 지표	61
<표 4-22> 학생의 제3단계 10개 인권지표 항목	62
<표 5-1> 교수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66
<표 5-2> 교수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68
<표 5-3> 교수의 시민적 권리 지표	69
<표 5-4> 교수의 정치적 권리 지표	70
<표 5-5> 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 지표	73
<표 5-6> 비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 지표	74
<표 5-7> 교수의 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	77
<표 5-8> 교수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79
<표 6-1> 일반직원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82
<표 6-2> 조교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83
<표 6-3> 일반직원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84
<표 6-4> 조교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84
<표 6-5> 일반직원의 시민적 권리 지표	86
<표 6-6> 조교의 시민적 권리 지표	86
<표 6-7> 일반직원의 정치적 권리 지표	87
<표 6-8> 조교의 정치적 권리 지표	88
<표 6-9> 일반직원의 경제적 권리 지표	91
<표 6-10> 조교의 경제적 권리 지표	91
<표 6-11> 일반직원과 조교의 사회적 권리 지표	93
<표 6-12> 일반직원의 문화적 권리 지표	94
<표 6-13> 조교의 문화적 권리 지표	95
<표 6-14> 일반직원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96
<표 6-15> 조교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97

<표 6-16> 일반직원 및 조교의 제3단계 7개 인권지표 항목	99
<표 7-1> 대학 규정 관련 인권지표	102
<표 7-2> 대학 기구 관련 인권지표	104
<표 7-3> 대학의 재정 및 인력 관련 인권지표	107
<표 7-4> 대학 시설 관련 인권지표	110
<표 7-5> 대학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관련 인권지표	112
<표 7-6>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제3단계 6개 인권지표 항목	114
<표 8-1> 대학종합평가 인권 관련 지표 : 학생 및 직원·교수 영역	117
<표 8-2> 대학종합평가 인권 관련 지표 :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119
<표 8-3> 30개 지표항목 선택지 점수의 재 부호화	124

그림 목차

<그림 1> 대학 인권지표 개발 체계도	27
-----------------------------	----

부록 목차

<부록 1> 학생의 인권지표 (제1단계 : 138항목)	131
<부록 2> 교수의 인권지표 (제1단계 : 52항목)	139
<부록 3>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제1단계 : 38항목)	143
<부록 4> 조교의 인권지표 (제1단계 : 36항목)	146
<부록 5>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1단계 : 47항목)	149
<부록 6> 학생의 인권지표 (제2단계 : 20항목)	153
<부록 7> 교수의 인권지표 (제2단계 : 14항목)	155
<부록 8> 일반직원/조교의 인권지표 (제2단계 : 14항목)	157
<부록 9>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2단계 : 12항목)	159
<부록 10> 학생의 인권지표 (제3단계 : 10항목)	161
<부록 11> 교수의 인권지표 (제3단계 : 7항목)	162
<부록 12> 일반직원/조교의 인권지표 (제3단계 : 7항목)	163
<부록 13>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3단계 : 6항목)	164
<부록 14> 대학 인권지표 (제3단계 : 30항목)	165

I. 서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오래 전부터 세계 각 지역 혹은 각국의 인권실태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인권지표에 주목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여러 인권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인권지표들을 적극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그리고 인권기관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인권지표들을 통하여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도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 경찰관서 등의 인권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구 한국청소년 개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학은 사회의 여러 영역 가운데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속하지만, 그래도 대학 역시 인권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다. 체육특기자 학생들이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나 교수와 대학원 학생 사이, 혹은 선후배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게 매스컴을 장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중심기관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인권문화는 대학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무의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인권문화를 전체 사회로 확산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교육 및 경험이 인권친화적인 것이 되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이나 특히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평가 사업들은 대체로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학의 인권적 측면이 도외시 되고 때때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학평가의 기준에 인권적 측면을 반영시키는 것은 향후 인권친화적인 대학문화 발전에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인권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기존의 대학평가기준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교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인권친화적인 대학제도와 대학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대학뿐 아니라 대학 바깥의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문화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학인권 지표의 개발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지표개발 연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표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대학의 많은 요소들이 인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실제로 인권의 관점에서 대학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인권의 시야에 들어올 뿐 아니라 대학문화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많은 인권지표를 구성해두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학이 인권증진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고 실행과제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인권지표 항목 가운데에는 가치의 면에서나 전략의 면에서 경중과 시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인권문화 수준을 대학 간에 비교하려든지 아니면 기존의 대학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인권친화적인 대학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면 보다 중심되는 인권지표 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팀은 최종적으로 30개의 핵심 인권지표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간단계에서 최종 지표수의 두 배인 60개의 항목으로 인권지표를 압축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그 결과 제1단계에서 구성된 총 311개의 지표항목이 제2단계에서는 60개로,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30개로 압축되어 최종적인 지표항목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지표항목을 구성한 후에 본 연구팀은 이들 지표항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간략히 진행하였다. 하나는 지표항목을 대학 간의 인권문화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지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학발전의 전략으로 현재 적극 시행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의 기준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이들 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30개 지표항목 각각에 대해서 평가결과의 값을 부여하는 지수화 안을 간단한 형태로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대학평가 기관들 가운데 공공적 특성이 뚜렷하고 영향력이 큰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 종합평가 기준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대학 종합평가 지표들을 인권지표 항목과 비교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전체 작업을 위해 본 연구팀은 대학의 인권영역을 학생, 교수, 직원/조교의 세 구성원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구성원 영역은 다시금 인간 존엄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여섯 인권유형으로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였다.¹⁾ 그리고 대학의 제도와 운영과 같은 구성원 외의 요소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

1)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적 권리에 속하는 법적 방어권이 논의의 편의상 잠정적으로, 교수의 인권과 일반직원 및 조교의 인권 지표를 개발하는 제1단계 작업에서 다른 시민적 권리 범주와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물론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이들이 모두 시민적 권리라는 하나의 인권유형 범주 속에서 제시된다.

기 때문에 이를 대학의 규정, 기구, 재정 및 인력, 시설,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다섯 영역으로 나눈 후에 세 연구자가 분담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 같은 소수자 집단의 인권은 특별한 주목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학의 세 구성원 집단에 걸쳐서 존재할 뿐 아니라,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이들 세 소수자 집단의 인권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여 각자 보다 집중적으로 지표항목을 개발한 후에 연구팀 공동의 검토 작업을 거쳐 전체 지표체계 상의 적절한 위치에 편입시켰다.

이 연구는 2009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의 특성상 유기적인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팀은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빈번한 이메일 교환을 통해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유기적인 최종결과를 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제를 원래 기획할 당시에는 대학인권 지표 초안을 만든 후에 전문가를 통한 검증과정과 함께 통계적인 검증과정도 거침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졌었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시안을 대상으로 통계적인 검증작업을 행함으로써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대학인권 지표는 대학 스스로가 인권친화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한 독자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인권 지표는 기존의 경쟁력 중심의 대학평가기준을 인권친화적인 평가기준으로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인권지표의 관점에서 기존의 대학평가기준의 질을 평가하게 되면 대학평가를 실시해온 기관들이 경쟁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교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학인권 지표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대학의 인권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까지 이루어진다면 대학 및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을 증진하는데 이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셈이 될 것이다.

II. 대학 인권론

1. 대학에서의 인권 실행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평등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 실현은 인류 사회의 약속이며 소망이다.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정신은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유엔자유권규약」으로 줄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으로 줄임)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고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여 관련되어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인권의 보편성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국제 사회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²⁾의 발족²⁾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인권 실행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인권 레짐(regime)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Robertson/ Merrills, 1996; Buergenthal, 1997; Evans, 1998).

인권의 보편성 실현은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한 가치였다. 이는 헌법과 많은 법률을 통하여 거듭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확립되었으며, 행정부 내에 법무부, 여성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기구 설치와 운용, 사법부의 인권 보호 집행 같은 인권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이 발전되어 왔다. 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 전반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권의 실행이 크게 발전하였다(김중섭, 2004).

이와 같이 인권 존중의 사회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개인이 어떤 근본적인 도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며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주체자로서 만드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지배받거나 방해

2) 유엔 총회는 지난 2006년 3월 15일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고, 5월 9일 초대 이사국을 선출하고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받지 않으며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Freeman, 1994: 507-508)이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은 인간의 삶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엄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 개념이나 목적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성격을 인식하면서 ‘인간’ 자체의 특별한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Freeman, 1994: 502; Donnelly, 1989).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국제 사회나 국내에서 인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여러 형태로 위협받으며,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김중섭, 2006). 이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특성 탓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인권 보장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는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는 언론을 통하여,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당면한 과제이다. 곧,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와 같은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인권 실행(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개선은 사회 전반의 인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크지 않다. 단적인 보기로서, 대학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또 인권 실천 수준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기초 작업으로서 대학의 인권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권은 사회적 맥락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학 고유의 인권 상황을 밝혀주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대학에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의 기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표준인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나 여러 국제 규약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건들은 인권 이론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인식은 인권이 인간 존엄과 안녕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에서 부여된 권리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곧, 생명을 가진 생물체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생명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존엄과 안녕 복리를 누리기 위하여 ‘개인적 안전과 인격’을 누릴 ‘인간 존엄권’을 가지며, 인격체로서 어느 누구로부터 억압당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며,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게 된다(김중섭 2001).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자유권이나 사회권도 크게 나누어, 자유권은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삶의 주체자인 시민으로서 누리는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 참여나 대표자 선임과 피선임 등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권리를 포괄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로 나누고, 사회권은 최소한의 의식주 걱정 없이 살면서 사람답게 존엄을 누리며 일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품위와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자유로운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시 제각기 더 구체적인 여러 내용의 권리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인권은 여러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인권이란 개념 자체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김중섭, 2001). 곧,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또 다양한 내용끼리 충돌하는 경향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안녕 복리를 위한 갖추어야 할 기본 권리라는 개념 수준에서 인권은 서로 밀접하게 뒤얽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의 다양성과 상호 불가분성 탓으로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권 실행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사회적 성격상 집단 차원에서 권리 행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 고유의 구성원 특성과 대학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곧, 학생, 교수, 조교,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인권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강조되는 인권 내용을 주목해서 인권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곧, 대학의 인권 상황은 구성원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고유의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 활동,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권지표의 구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학 구성원의 특성, 인권 실행의 요건인 대학 환경, 대학 고유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인권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 구성원의 인권

인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러나 실행 주체는 개인이지만, 성격상 집단 차원에서 권리 행사의 양상이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 권리(group rights)로서의 인권 실행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대학에서의 인권 실행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 교수, 조교, 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상황은 개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집단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크게 학생, 교원(교수, 조교, 비정규직 시간강사), 직원으로 나누어 인권실천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집단 성격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은 교육 과정에 등록하면서 대학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지적 성숙 과정에 있는 교육 대상자로서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습 과정에 있다. 교육 대상자라는 것은 교육 현장인 대학의 규율과 규칙에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함의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은 사람으로서 존엄을 누릴 존재이며, 아울러 성인으로서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학생이 사람이라거나 성인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학생에게 부여된 이중적 성격은 학생 인권을 구성하는 특성이나 내용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과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직장으로 선택하여 생활하는 구성원이다. 직장인으로서 교원과 직원은 대학의 구성원으로 생활하지만, 두 집단의 성격은 담당하는 업무나 지위체계가 크게 다르다.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은 본부, 단과대학, 학과 같은 위계 조직에 속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나 교육 활동 영역에서 일정한 수준의 독자성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에 교원이나 학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규정에 따른 업무 분장과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학이란 직장의 고유한 특성은 교원이나 직원의 인권 상황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이밖에도 교원이나 직원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예를 들어, 고용 주체나 신분 에 따라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국공립 대학의 국가나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의 재단으로 구분되는 고용 주체에 따라 교원이나 직원의 인권 상황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전임 교수와 비전임 교수(혹은 시간강사, 비정규 교수)로 구분되는 교원이나, 정규직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 조교 같은 다양한 신분으로 고용되는 직원 같이 고용 신분 에 따라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와 같이 학생이나 교원, 직원은 모두 대학의 구성원이지만, 구성원의 특성이나 직무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하게 될 인권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권 지표는 학생, 교원, 직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여도, 대학의 구성원들은 기본 인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 내용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의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인권 사항이 그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곧, 이러한 문건의 핵심 내용인 인간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 존엄권, 자유권의 주축 개념인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권의 주축인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 내용이다.

우선, 인간 존엄권은 국제인권 관련 선언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 전반에 기본 인권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제1조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인 차별 금지(제2조), 생명권과 안전권(제3조), 법적인 평등 대우(제6조, 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존엄권의 정신은 「유엔자유권규약」과 「유엔사회권규약」의 바탕에 깔려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나타나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제11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법률의 기초 근거가 되고 있다. 요컨대, 인간 존엄권은 어떤 상황에서 침범되어서는 않는 절대 가치의 인권으로 인식된다.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포괄하여 일컫는 자유권은 국가나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개인이 국가나 집단의 권력 행사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0조, 제11조),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제12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의사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0조) 등을 누릴 권리, 대표자 선출에 관한 참정권(제21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 사항은 1966년 유엔의 결의에 의해 채택된 「유엔자유권규약」에서 재확인되고 있다(정인섭 2000). 시민으로서 개인이 누리는 권리 영역인 시민적 권리와 정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권리 영역인 정치적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규정하고 있는 이 자유권규약은 1976년 발효되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조항을 유보하고 있지만, 1990년에 가입한 이래 이 규약을 지킬 것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다.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여 일컫는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다. 사회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될 즈음에 충분히 발전되

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 기본 정신은 이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제22조), 노동에 관한 사항(제23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제24조), 기본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행복과 건강을 누릴 권리(제25조), 교육받을 권리(제26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의 내용은 1966년 「유엔사회권규약」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규약 역시 1976년 효력이 발휘되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이행 목표가 되었다. 경제 활동 영역에 관련된 경제적 권리, 교육 기회나 선택, 환경, 건강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관련된 사회적 권리, 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관련된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과 안녕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에 가입하여 이 조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크게 여섯 영역을 나누어진 기본 인권은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 실행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생과 교원, 직원은 제각기 다른 하위분류를 설정하였다. 특히, 교원으로 분류되지만,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은 성격상 인권 상황이 크게 다르며, 따라서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데 요구되는 강조점이 다르다. 이 점은 일반 직원과 조교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특히, 조교는 행정을 맡고 있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에 위치한 특별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부분은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공통 내용이 되겠지만, 주목해서 보게 될 내용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간 존엄권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인 평등권이 나 폭력, 특히 성폭력으로 보호받을 권리인 인격권은 누구나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내용이 될 것이다. 시민적 권리로 분류되는 사생활 보호권, 종교 사상의 자유권이나, 정치적 권리에 속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것은 기본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 학생과 교원 및 직원은 각기 다른 지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사항에 관하여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과 직장으로서 생활하는 교원, 직원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곧,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의 경우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게 되겠지만, 교원과 직원은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경우, 성년이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범죄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인간 존엄권의 영역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권을 설정하여 인권 측면에서 교육 공간, 휴식 공간, 체육시설, 식당, 상담시설, 보건소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

육이다. 따라서 합당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강조하여 교육 선택권, 교육 기회 평등권, 인권 교육 권, 정보 접근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환경권 같은 항목을 사회적 권리에 설정하고, 학생 고유의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문화적 권리 영역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결권은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결권은 「유엔 사회권규약」 제1조와 「유엔자유권규약」 제1조에서 공히 강조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곧,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녀 학생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권과 사회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적 권리 영역의 사생활보호권, 학문 자유권, 정치적 권리 영역의 집회 결사 자유권, 자치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년이지만 여전히 보호자의 지원 아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위치를 감안하여 경제적 권리에 복지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은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 존엄권의 평등권에서는 채용이나 승진, 근무 기간에 따른 차별 여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고, 적정 보수권, 노동권, 노동3권 같은 경제적 권리가 주목되고, 사회적 권리에서는 사회보장권, 문화적 권리에서는 교육권 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인권 상황은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주요 준거틀을 만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원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 환경의 인권 실행 요건

인권을 누리고 실천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작용하는 주요 요건이다. 곧, 대학의 인권 문제는 구성원의 인권 문제이지만, 시설이나 제도, 기구 등 여러 요소의 환경도 인권 보호와 증진 상황을 반영하는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인권 실행은 교육기관이라는 특별한 성격의 환경에서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증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환경은 1차적 기능인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제도 등이 중심적인 구성물이다. 곧, 강의실, 실험실과 같은 학습 공간이나, 도서관이나 컴퓨터센터 같은 학습 지원 시설 같은 것이 대학 환경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휴식 공간, 학생회관, 거주 공간인 기숙사, 문화 활동을 위한 공연장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도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정하는 학칙이나 기구 같은 제도적 측면도 대학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고유의 환경이 인권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인권 실행의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대학 환경을 인권 실행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환경에서 주목하게 되는 인권 사항은 앞서 구분한 인권 유형의 여러 영역과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존엄권의 주요 내용인 안전하게 살 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 안전 교육 실시 유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정이나 기구 구성 등 제도적으로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도 인권 발전의 지표로서 유용하다. 또는 인간 존엄권의 주요 내용인 인격권이 올바르게 보장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폭력에 대처하는 기구나 상담 시설 등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시설물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인권 실행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대학 환경은 인간 존엄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적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 보호권과 연결되는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정치 활동의 규제 여부를 정하고 있는 학교 규정 문제, 사회적 권리에 넣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나 건강하게 살 권리에 속한 사항들, 경제적 권리에 관한 노동권이나 복지권의 문제들, 문화적 권리 사항인 문화 활동 공간 문제 등 여러 내용들이 모두 대학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관련 인권 사항들은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쟁점이 아니다. 직장으로서 대학에서 생활하는 교원이나 직원의 작업 환경, 시설, 기구, 제도 등도 모두 인권 관련 상황을 가늠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들의 연구 환경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제약 등은 인권 상황을 밝혀주는 지표 내용이 될 것이다.

또는 급변하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으로서 다문화사회, 양성평등 사회 같은 시대 요구가 대학 환경 구성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권 실행 요건이 달라지는데, 인권 지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면서 육식을 하지 않는 문화권 출신을 위하여 채식주의 식당 메뉴가 제공되는지 여부도 인권 실행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이슬람 문화 출신의 학생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시설이나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올바르게 확보되어 있는지,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 예방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인

권 지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위원회, 인권부서, 인권연구기관, 다문화 교육 기관, 인권상담 기구 같이 인권관련 기구가 설치되었는지도 주요 사항이 될 것이다.

4. 대학 활동에서의 인권 실행

인권 상황은 행위자에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이지만, 아울러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점은 대학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대학의 고유 활동인 연구와 교육 과정에서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증진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생이나 교원, 직원이 대학 고유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학생의 경우, 교육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진로 직업 선택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인권 교육, 양성평등 교육, 다문화 교육 같은 인권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 자치기구나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나, 또 자치 활동의 지원이 원활한지 여부도 학생의 자치권 보호와 증진에 작용하는 변수일 것이다.

교원과 직원의 경우, 정치 단체 가입이나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지, 노동조합이나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인권 실행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이나 연구의 주체자인 교원의 활동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제한을 두거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지 여부도 인권 실행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 고유의 활동 역시 인권의 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보기를 들어, 학생의 교육과 학교생활은 차별받지 않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를 가늠하는 것은 인간 존엄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시민적 권리 영역으로서 기숙사 생활의 규제, 전자 정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도입되는 다기능 학생증(일명 스마트 카드)이나 감시카메라 같은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언론, 출판, 집회나 단체 결성, 자치 기구 참여 등은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활동은 경제적 권리 영역에서, 학술 대회 발표, 교과 과목 선택, 진로 선택, 인권 관련 교과목 선택, 도서관이나 컴퓨터센터, 휴식 공간 같은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

회적 권리 영역에서, 문화 활동, 종교 활동 등은 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들이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고유 활동에서도 인권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 고유의 활동 영역에서 인권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판단하며 인권의 보호 증진을 모색하는 인권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인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대학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 기관인 대학의 고유한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학의 인권 실행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선도적 위치나 기능으로 볼 때 대학의 인권 발전은 사회 전반의 인권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대학이 인권 친화적 공간으로 바뀌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연구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만큼 사회 전반의 인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을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을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증진되도록 개선하려는 제도적 장치나 집합적 노력이 요구된다. 곧,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인권 침해 방지와 증진을 위한 집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인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구, 제도,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인권 중심으로 구성되며 집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은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문화를 확장하며, 인권 중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인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행된다면, 대학의 인권 실행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전반의 인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I. 대학 인권지표의 개발과정과 지표체계

1. 사회지표와 대학 인권지표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인 ‘대학 인권지표’는 ‘대학’이라는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인권’이라는 제한된 주제를 다루는 사회지표의 한 형태이다. 대학 인권지표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사회지표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1960년대 중반 이래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방법론으로 군림해 왔다. 정책적 면에서 보아도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복지와 사회발전 수준을 시·공간적(역사적·비교사회적)으로 비교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지표 체계를 수립,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 처음으로 사회지표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 책자를 펴내고 있다. 그 책자의 발간기관인 통계청(2008: 37)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지표란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최초로 작성·발표한 이래 사회변동에 따라 지표체계를 꾸준히 확대 개편하여 2008년에는 총487개 항목의 지표를 수립, 공표하였다.

사회지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준 지표(criterion indicators)”, “만족 지표(satisfaction indicators)”, “기술적(記述的) 사회지표(descriptive social indicators)”가 그것이다(Land, 1992:1845-47). ‘기준 지표’ 유형은 사회지표가 다른 무엇보다 정책적 관심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인식 하에 사회지표란 공공정책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변화의 타겟(target), 산출(output), 혹은 목표가치(end-value) 변수들로 이해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사회지표를 규범적 복지 지표(normative welfare indicators)나 정책지표(policy indicators)로 규정하기도 한다(Land, 1992: 1846). 한편, ‘만족 지표’ 유형은 사회변동과 삶의 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상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양자 간 관계가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유형에서의 사회지표는 만족 혹은 주관적 안락감 지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사회지

표'는 세 가지 지표 유형 중 가장 포괄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의 주요 특성들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과 상호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이 유형의 지표는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는 '기준지표'를 포함하는, 관심 범위가 보다 포괄적인 지표 유형이다. 정책지표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사회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지표 유형 중에서 대학 인권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준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대학 인권지표는 대학의 인권상황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삼아 각 구성원의 인권 존중/침해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인권지표는 대학 인권 상황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함으로써 대학별 인권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개선하게 하는 정책적,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 구성원별, 인권 유형별로 어느 집단과 어느 유형에서의 인권 상황이 취약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학 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도 가능하도록 글로벌한 기준에 부합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랜드(Land, 1992: 1847-48)는 사회지표의 계몽적 기능으로서 “모니터링”, “사회적 보고 (social reporting)”, “미래 예측” 세 가지 기능을 지적한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인 대학의 인권지표는 앞의 두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기능은 말 그대로 사회현상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상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사회적 보고’ 기능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없이 지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세상물정에 눈을 뜨게 하는 “공공적 계몽(public enlightenment)” 기능이다. 대학 인권지표는 대학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대학 구성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대학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대학 인권지표의 개발 과정과 인권지표 체계

대학 인권지표 개발에 착수하여 연구 초기단계에서 직면한 과제는, 1) 인권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과 2) 지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작업은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지표 선정기준을 우선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인권지표 선정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청소년 인권지표를 개발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길은배(2001) 등 연구진은 그 기준으로 ① 충족성, ② 적합성, ③ 균형성, ④ 수월성, ⑤ 다양성, ⑥ 비교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 복지시설 인권 평가지표를 개발한 이용교(2005) 등 연구진은 ① 타당성, ② 중요성, ③ 측정 가능성, ④ 자료확보 용이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창욱(2006) 등 연구진은 그 기준으로 ① 타당성, ② 측정가능성, ③ 국제비교 가능성, ④ 실용성, ⑤ 해석의 용이성, ⑥ 계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연구진에서 선정한 이러한 기준들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각각의 기준들이 나름대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연구진 역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① 타당성, ② 측정 가능성, ③ 실용성, ④ 비교 가능성 ⑤ 자료 획득 용이성,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타당성이란 우리가 관찰하고자 했던 현상을 각 지표들이 잘 반영하고 대표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측정 가능성이란 각 지표들이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계량화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실용성은 대학 인권지표가 대학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 인권단체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교 가능성은 이 지표들이 국내 각 대학 간의 인권상황을 비교하고 나아가서 국제적 비교도 가능하도록 보편적 준거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획득 용이성이란 각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최창욱 외, 2006: 142-45; 길은배 외, 2001: 91-96 참조).

대학 인권지표는 연구원간의 금요일 정례 모임,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한 몇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다. 대학 인권지표 개발 체계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진은 인권 관련 문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정례 모임을 가졌다. 수차례의 정례 모임을 통해 인권 유형 분류 작업과 지표 선정 기준에 관한 의견을 모아 나갔다. 이 두 작업은 물론 한 번의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거듭된 논의 끝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각 연구원의 연구 영역도 결정하였다. 대학 인권지표를 대학 구성원별로 1) 학생 집단, 2) 교수 집단(전임 및 비전임 포함), 3) 직원 및 조교 집단으로 나누어 세 연구원이 각각 하나의 하위 집단씩을 맡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 후, 각 연구원이 자신이 맡은 하위집단의 인권지표를 최대한 나열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학생 지표 169개, 교수 지표 61개, 직원/조교 지표 69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 1차 시안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 교수 지표는 극심한 대학 분규를 겪었던 C 사립대학교의 사회과학 분야 전공 교수가, 직원/조교 지표는 전국대학노조의 정책 분야 간부가, 학생 지표는 G 국립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생이 꼼꼼히 검토하고 우리가 만든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해 주었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인권지표 2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2차 시안이 1차 시안과 다른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대학 내 하위 집단별(학생, 교수, 직원/조교) 지표 외에 대학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지표도 따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대학 구성원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 경우 대학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를 새로 만든 것이다. 둘째, 인권지표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60개 항목을 추려서 2단계 지표로 삼고 다시 30개 핵심 항목을 추출하여 3단계 지표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지표의 실제 활용에 대비하여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60개 혹은 30개로 핵심 지표를 축소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한 2차 시안은 2009년 12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논평을 받았다. 연구원들은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의 논평 내용을 반영하여 2차 시안에서의 분류체계를 다시 다듬고 그 밖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학 인권지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인권지표를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보고서로 작성했다. 이 연구의 지표 개발을 위해 수립한 인권지표 체계를 각 부문별로 표로써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인권지표 체계

<표 3-1> 학생의 인권지표 체계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평등권	차별 규정	S11-1	학생 선발(신입, 편입) 차별 규정
			S11-2	학생자치기구 차별 규정
	S11-3		학생자치기구 성차별 규정	
	차별 실태	S11-4	교육 과정(수강 과목 신청) 차별 실태*	
		S11-5	장학금 수혜자 선발이나 기숙사 입사 선정 차별*	
		S11-6	학생회 구성의 양성 평등 참여*	
	인격권	폭력	S11-7	교내 폭력
			S11-8	폭력 신고기구
			S11-9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S11-10	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성폭력	S11-11	교내 성폭력 비율
			S11-12	성폭력 경험*
			S11-13	성폭력 신고기구 운영
	성폭력	S11-14	성폭력 신고기구 상근자	
		S11-15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S11-16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시설(예: 성폭력 상담소 등)		
S11-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안전권	범죄	S11-18	1년간 학생 100명당 교내 범죄 건수	
		S11-19	범죄 신고기구 운영	
		S11-20	범죄 신고기구 상근자 유무	
		S11-21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S11-22	범죄 피해자 상담 시설	
		S11-23	범죄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S11-24	교내 긴급 구호 전화 설치	
	S11-25	교내 순찰		
	안전사고	S11-26	안전사고 비율	
		S11-27	안전사고 시 교내 응급 처치 시설	
S11-28		안전사고 처리 및 후속 조치 체계(예: 비상 연락망, 응급후송)		
안전사고	S11-29	안전사고 보험 가입		
	S11-30	안전 교육		
	S11-31	시설물의 안전 점검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법적 방어권	징계	S12-1	징계위원회 구성에 소속 대학장 참여 기회 제공	
			S12-2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 기회	
			S12-3	징계 대상자의 재심 요청 기회	
	사생활 보호권	다기능 학생증	S12-4	다기능 학생증 (일명 스마트카드) 도입	
			기숙사 생활	S12-5	기숙사 출입시간 제한
				S12-6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학문 자유권	검열	S12-7	학교 규정상 출판 검열	
			S12-8	학회 발표 등 학문 활동의 사전 허가	
		징계	S12-9	학문 자유 관련 징계	
			종교 자유권	종교활동	S12-10
S12-11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활동 강제성				
정치적 권리 (S13)	언론출판 자유권	신문	S13-1	대학 신문 발간 횟수	
			S13-2	대학 신문에 발표 참여기회	
			S13-3	대학신문 제작 이전의 검열 제도	
		방송	S13-4	대학 방송(TV, 라디오) 방영 시간	
			S13-5	대학 방송 대본의 사전 검열제도	
			S13-6	대학 방송 제작의 학생 참여	
	집회 결사 자유권	정당 활동	S13-7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 제한	
			집회 자유	S13-8	학교 규정에 집회 제한 규정
		동아리 활동		S13-9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 제한 규정
			S13-10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S13-11	학생 동아리 수	
			S13-12	학생 동아리 참여수	
			S13-13	동아리 당 평균 회원 수	
자치권	학생 자치기구	S13-14	학생자치기구 구성의 제한이나 간섭*		
		S13-15	학생회 선거 참여		
		S13-16	학생 자치 활동 영역 규정		
		S13-17	학생 자치 활동 공간 제공		
		S13-18	자치 활동 공간 크기		
의사결정 참여권	의사결정 기구	S13-19	대학 전체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S13-20	학생의 대학평의회 참여 기회		
		S13-21	단과대학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S13-22	학과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S13-23	기타 조직 협의체(예: 생활협동조합) 학생 참여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S14)	노동권	경제활동	S14-1	학생 경제활동(인턴, 아르바이트 등) 지원 기구	
		교내근로	S14-2	학교 내 근로 학생 비율	
			S14-3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	
			S14-4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 상황	
			S14-5	작업장(실험실 포함) 내 업무 관련 불만 처리 기구	
	복지권	장학금/ 학자금	S14-6	장학금 수혜 비율	
			S14-7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 비율	
			S14-8	학자금 용자 지원	
			S14-9	학자금 수혜 학생 비율	
			S14-10	등록금 대비 학자금 수혜액 비율	
		생활비	S14-11	1달 평균 용돈(주거비 제외)	
			S14-12	용돈(주거비 제외)의 학생 본인 부담 비율	
	복지지원		S14-13	학생 복지 담당 기구	
			S14-14	학자 담당 기구 상근자 수	
사회적 권리 (S15)	교육 선택권	과목 선택	S15-1	교과목 개설 논의 과정의 참여 기회	
			S15-2	학생들의 교육 과정 선택(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S15-3	수강 신청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인쇄물)	
			S15-4	강의 평가제도	
			S15-5	교과 과정(커리큘럼) 정보 제공	
			S15-6	강의계획서 사전 공지/ 배포	
			S15-7	수강 과목의 변경/ 철회 기회	
			S15-8	학과 선택을 위한 전과 기회	
	진로/ 직업 선택		S15-9	진로/ 직업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및 준비 과정	
			S15-10	퇴학(자퇴/제적) 후 재입학 기회 제공	
			S15-11	진로/ 취업 지원 기구	
			S15-12	학생 1,000명당 진로/ 취업 지원 기구 상근자 수	
	교육기회 평등권	등록	S15-13	등록률	
			S15-14	전체 학생 대비 자퇴, 제적 등 탈락률	
			S15-15	평균 재학 연한	
			S15-16	개설 교과목 당 학생 수	
	인권 교육권	인권 교육		S15-17	인권 관련 교과목
				S15-18	인권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 비율
		양성평등 교육		S15-19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개설
				S15-20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수강 학생 비율
		다문화 교육		S15-21	다문화 교육 교과목
				S15-22	다문화 교육 교과목 수강생 비율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정보 접근권	컴퓨터 시설	S15-23	유비쿼터스 실행 장치 설치	
			S15-24	학생 공용 컴퓨터 활용 기회	
			S15-25	컴퓨터 구입의 재정적 지원	
	S15-26		컴퓨터 구입 편의(예: 공동구매, 정보제공) 제공		
	정보교육	정보교육	S15-27	정보 교육기관	
			S15-28	정보 교육 교과목	
			S15-29	정보 교육 수혜 비율	
	도서관 정보접근	도서관	S15-30	도서 대출 허용 권수	
			S15-31	도서 대출 허용 기간	
			S15-32	도서 구입 예산 비율	
			S15-33	좌석수	
	환경권	교지/교사시설	S15-34	교지 확보율	
			S15-35	교사시설 확보율	
	S15-36		기숙사 수용 비율		
	정화 시설	정화 시설	S15-37	실험실의 오염물질 정화 시설	
	건강권	교육공간	교육공간	S15-38	실험실 유해물질 보호 체계
				S15-39	실험실의 환기 시설 설치
		휴식공간	휴식공간	S15-40	실내 휴식 공간(예: 음악 감상실, 카페) 설치
				S15-41	옥외 체육 시설
				S15-42	옥외 체육 시설 공간 크기
S15-43				옥내 체육 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S15-44	옥내 체육 시설 공간 크기	
			S15-45	식당 좌석수	
			S15-46	식당 메뉴 종류	
			S15-47	채식주의자 식단 제공	
식당	식당	S15-48	상담 시설(예: 학생생활상담소)		
		S15-49	상담 시설에 전문 상담 요원 배치		
		S15-50	보건(진료)소		
상담시설	상담시설	S15-51	전문 의료인(의사, 간호사) 배치		
		S15-52	정기 검진 실시		
		S15-53	학생 지원 의료 보험 가입		
문화적 권리 (S16)	문화활동 참여권	문화시설	S16-1	옥내외 공연장 면적	
			S16-2	전체 기성회 예산 대비 학생 문화 공연 지원 예산 비율	
			S16-3	교내 문화 공연 횟수	
	공연활동	공연활동	S16-4	교내 문화공연 종류	
	종교 활동 보장권	종교 활동	S16-5	종교 활동 제한	
S16-6			종교 시설(예: 기도실, 법당) 설치		

2) 교수 인권지표 체계

<표 3-2> 교수의 인권지표 체계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11)	평등권	채용/ 교수평가	P11-1	교수채용 심사기준으로 신양 항목 포함 여부	
			P11-2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심사기준으로 신양 항목 포함 여부	
			P11-3	교수 채용시 성별·연령·장애·출신지에 따른 차별 여부*	
		차별대우	P11-4	총장·보직교수·재단의 교수 차별대우 여부*	
			P11-5	차별대우 정도*	
			보직/ 위원회	P11-6	여교수의 비율
				P11-7	부처장급 이상 보직 여교수 비율
				P11-8	본부 위원회 여교수 위원 비율
	인격권	폭력	P11-9	언어적·신체적 폭력 여부*	
			P11-10	폭력 정도*	
		인격모독	P11-11	교육·학생지도·연구 이외 활동 강요 여부*	
		성폭력	P11-12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 여부*	
			P11-13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 빈도*	
시민적 권리 I (P12)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간섭	P12-1	사생활이나 가정사, 통신, 교류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명예·신 용 비난	P12-2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불필요한 비난*	
	거주이전 자유권	주거지	P12-3	학교 인근에 거주하라는 압력*	
	양심·사 상·종교 자유권	양심·사 상 자유	P12-4	대학당국이나 재단이 특정 이념·사상 억압하거나 수용 요구*	
		종교자유	P12-5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 요구*	
정치적 권리 (P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P13-1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승진누락이나 증징계(해임 포함)*	
			P13-2	교육, 연구, 학과(전공)운영과 관련한 의사표현 방해나 억압*	
		언론출판	P13-3	비전임 교수들 간 공통 관심사항 논의 매체 존재 여부	
	집회결사 자유권	자발적 결사	P13-4	비전임 교수들 간 공통 관심사항 논의 단체 구성 여부	
	참여권	교수(협 의)회	P13-5	교수(협의)회가 학칙에 명시된 기구인지 여부	
			p13-6	교수(협의)회의 학칙 혹은 내규 상 권리 수준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P14)	적정 보수권	보수	P14-1	부교수(급)의 연봉 수준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P14-2	전임교원 중에서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율
		근무조건	P14-3	전임교원 1인의 주당 평균 시수
		업적평가	P14-4 P14-5	연구, 교육, 학생지도 이외의 평가항목 존재 여부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 이외 항목 배점 비율
	노동3권	노동조합	P14-6	교수노조 조직 여부
	적정 보수권	보수	P14-7 P14-8 P14-9 P14-10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수준 방학 중 시간강사료 분할지급 제도 유무 시간 강사료 이외 재정 지원 유무 학교측 사정으로 폐강시 재정적 보상 여부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P14-11 P14-12	시간강사 위촉/계약 기간 총 강의시간 중 시간강사 담당 강의시간 비율
	노동3권	노동조합	P14-13	비전임(비정규) 교수노조 조직 여부
	사회적 권리 (P15)	사회 보장권	4대보험	P15-1 P15-2 P15-3 P15-4
문화적 권리 (P16)	교육권	연구년/안식년	P16-1 P16-2	연구년제/안식년제 수혜 교수 비율 연구년제(안식년제) 해외파견 교수에 대한 1년당 경비지원 액수
		연구비	P16-3 P16-4	전임교수 1인당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규모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수혜율
		연구시설	P16-5	시간강사들을 위한 강의준비 및 연구 공간
시민적 권리II (P17)	법적 방어권	고충처리	P17-1 P17-2	학칙이나 내규 상 교원 고충처리위원회 존재 여부 교원에 대해 고충처리 상담 해 준 사례 수
		징계절차	P17-3 P17-4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자 대변하는 위원 포함 여부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제도 존재 여부
		고충상담	P17-5	비전임 교수들의 고충 상담·처리 기구나 프로그램 존재 여부
		해촉	P17-6	비전임 교수들의 해촉·계약해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지침 존재 여부

3-1)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체계

<표 3-3>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체계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E11)	평등권	채용	E11-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유무*
			E11-2	전체 직원에서의 여성비율
			E11-3	전체 직원에서의 장애인비율**
	평등권	보수·직무·승진	E11-4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서 성별, 출신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 유무*
			E11-5	보수, 승진/승급, 정년에서 직종에 따른 차별 유무 *
			E11-6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유무 *
			E11-7	과장급 관리 직원에서의 여성비율
			E11-8	계장 (혹은 대리)급 관리 직원에서의 장애인비율
	근무기간	E11-9	성별에 따른 근무기간 제한의 차별 유무*	
	인격권	폭력	E11-10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동료 직원으로부터의 폭력 유무*
E11-11			교수로부터의 폭력 유무*	
E11-12	교수에 대한 직원의 폭력 유무*			
E11-13	학생에 대한 직원의 폭력 유무*			
성폭력	성폭력	E11-14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동료 직원으로부터의 성폭력 유무*	
		E11-15	교수로부터의 성폭력 유무*	
시민적 권리 (E12)	사생활 보호권	두발·복장	E12-1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의 존재 여부
		감시 카메라	E12-2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여부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E12-3	학교 인근지역에서의 거주 의무 여부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E12-4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억압이나 강요의 존재 여부*
		종교	E12-5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 강요 여부*
정치적 권리 (E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E13-1	상급직원, 동료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자유의사 표현의 방해 여부*
		언론출판	E13-2	직원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대중매체의 존재 여부
	집회·결사 자유권	결사	E13-3	직원의 공동이익을 대변할 노조 외의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여부
	참정권	참정	E13-4	대학총장 선출과정에서 직원의 참여 가능성
E13-5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의 참여 장치 존재 여부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E14)	적정 보수권	소득	E14-1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직원의 비율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E14-2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
	노동3권	노조결사	E14-3	일반직원의 노동조합 참여 가능성
		단체교섭	E14-4	직원의 이익대변을 위한 단체교섭의 존재 여부
사회적 권리 (E15)	사회 보장권	적정생활 수준유지	E15-1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의 비율
문화적 권리 (E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E16-1	직원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 무시 여부*
		문화생활 참여권	E16-2	체육·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E16-3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의 존재 여부
			E16-4	지난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E16-5	업무용 기본정보의 자유로운 획득을 막는 규정, 관행의 존재 여부	
시민적 권리II (E17)	법적 방어권	징계의 객관성	E17-1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구성
		자기 변론권	E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자기변론 기회 제공 여부
		법적 구제권	E17-3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3-2) 조교의 인권지표 체계

<표 3-4> 조교의 인권지표 체계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A11)	평등권	채용	A11-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유무*
		보수·직무·승진	A11-2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서 성별, 출신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 유무*
			A11-3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유무*
	A11-4		일반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받는 행정조교의 존재여부*	
	인격권	폭력	A11-5	성별에 따른 근무기간 제한의 차별 유무*
			A11-6 A11-7	재단사람, 상급직원, 동료 조교로부터의 폭력 유무* 교수로부터의 폭력 유무*
		성폭력	A11-8 A11-9 A11-10	재단사람, 상급직원, 동료 조교로부터의 성폭력 유무* 교수로부터의 성폭력 유무* 학생으로부터의 성폭력 유무*
			사생활 보호권	임직원 관계
	교수관계	A12-2		교수로부터의 사생활침해 유무*
	학생관계	A12-3		학생으로부터의 사생활침해 유무*
두발·복장	A12-4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의 존재 여부		
감시 카메라	A12-5	학과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여부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A12-6		학교 인근지역에서의 거주유무 여부*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A12-7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억압이나 강요의 존재 여부*
	종교	A12-8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 강요 여부*	
정치적 권리 (A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A13-1	교수, 상급직원, 동료에 대한 직무관련 자유의사 표현의 방해 여부*
		언론출판	A13-2	조교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대중매체의 존재 여부
	집회결사 자유권	결사	A13-3	조교의 공동이익을 대변할 노조 이외의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여부
	참정권	참정	A13-4 A13-5	대학총장 선출과정에서 조교의 참여 가능성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교의 참여 장치 존재 여부
경제적 권리 (A14)	적정 보수권	소득	A14-1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조교의 비율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A14-2	전업(full-time)조교의 재임용기간을 관행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노조결사	A14-3	전업조교의 노동조합 참여 가능성
	노동3권	단체교섭	A14-4	전업조교의 이익을 대변을 위한 단체교섭의 존재 여부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A15)	사회 보장권	적정생활 수준유지	A15-1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업조교의 비율
문화적 권리 (A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A16-1	조교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 무시 여부*
		문화생활 참여권	A16-2	체육·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A16-3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의 존재 여부
			A16-4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A16-5	업무용 기본정보의 자유로운 획득을 막는 규정, 관행의 존재 여부
시민적 권리II (A17)	법적 방어권	징계 객관성	A17-1	조교를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의 존재 여부
		자기 변론권	A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자기변론 기회 제공 여부
		법적 구제권	A17-3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4)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체계

<표 3-5>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체계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규정 (M11)	학칙의 인권 침해성	M11-1	학칙에 인권침해 요소 존재 유무
	소수집단 인권보호	M11-2	여성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학칙상 조항의 존재 유무
		M11-3	장애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학칙상 조항의 존재 유무
		M11-4	외국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학칙상 조항의 존재 유무
개인정보 보호	M11-5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의 존재 유무	
	M11-6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의 존재 유무	
실험실 인권보호	M11-7	실험실 학생과 연구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지침의 존재 유무	
기구 (M12)	집행기구	M12-1	대학본부에 인권기구 설치 여부
		M12-2	교직원을 위한 고충처리기구 존재 여부
		M12-3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기구 존재 여부
		M12-4	외국인 학생의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의 존재 여부
		M12-5	외국인 교직원의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의 존재 여부
		M12-6	국제결혼자녀 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구나 전담직원의 존재 여부
	연구기관	M12-7	인권연구기관의 존재 여부
		M12-8	여성연구기관의 존재 여부
		M12-9	다문화연구기관의 존재 여부
	교육기관	M12-10	인권교육기관의 존재 여부
		M12-11	다문화교육기관의 존재 여부
		M12-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의 존재 여부
	상담기구	M12-13	대학구성원을 위한 인권상담 기구나 인력의 존재 여부
		M12-14	대학바깥의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인권상담 기구나 인력의 존재 여부
	학생 자치기구	M12-15	학생자치기구에 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하위기구의 존재 여부
		M12-16	학생 인권동아리의 존재 여부
재정 및 인력 (M13)	재정	M13-1	대학교 예산에서 인권관련 예산항목의 존재 여부
		M13-2	학생 및 교직원 100명당 인권관련 기구 총예산의 규모
	교수	M13-3	인권전공 교수의 수
직원	M13-4	대학의 인권기구 상근직원이나 인권전담 상근직원의 수	
시설 (M14)	도서	M14-1	도서관의 인권전문 서가 존재 여부
	여성을 위한 시설	M14-2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존재 여부
		M14-3	여학생 전용 휴식공간의 존재 여부
		M14-4	여학생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
		M14-5	여직원 전용 휴식공간의 존재 여부
		M14-6	여직원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
		M14-7	여성 화장실의 비율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장애인 시설 및 홈페이지	M14-8 M14-9 M14-10 M14-11 M14-12 M14-13 M14-14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의 비율 2층 이상 4층 이하 건물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비율 보행시 안내 점자판 등 시각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치 여부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의 존재 여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비율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 우선권의 제공 여부 장애인을 위한 학교 공식 홈페이지의 존재 여부
	외국인 학생공간	M14-15	외국인 학생 기구를 위한 공간의 제공 여부
인권 증진 프로 그램 (M15)	인권교육	M15-1 M15-2	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인권강좌의 개설 여부 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	M15-3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강좌의 개설 여부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M15-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혹은 적응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인권증진 계획안	M15-5	대학 인권증진 계획안의 존재 여부

* 이 지표들은 교수, 직원, 조교 단체 임원이나 개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다. 나머지 지표들은 대학본부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 비율이라고 할 때의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IV. 대학 구성원의 인권 1 : 학생 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은 교육 대상자이면서 또한 존엄을 누릴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이다. 교육 대상자로서 교육 현장인 대학의 규율과 규칙에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며, 아울러 합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학생은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학생의 이중적 성격은 학생 인권의 특성이나 내용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 인권의 가장 핵심 내용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권과 자치권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권 유형과 내용 구성에 연관되기 마련이다.

학생의 생활세계는 대학 교정, 강의실, 실험실, 기숙사 등과 같은 특별한 공간에서 교육 과정 이수, 학생 자치기구 결성과 참여 같은 특수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또 학생은 동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는 독특한 위상에 따른 특정한 성격의 인권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 인권의 잣대로만 학생 인권을 보거나, 또는 교육받는 사람이라는 특성만 주목하여 학생 인권을 보아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학생의 인권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 인권 상황을 파악할 지표 구성은 독특함을 갖게 된다. 곧, 인권의 기본 내용을 반영하는 인간 존엄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고유의 성격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1. 인간 존엄권

인권 실행의 핵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 존엄(human dignity)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 존엄권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이나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 존엄권의 실행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 권리로부터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자기의 고유 생활 영역을 간섭받지 않으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

이 인간 존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인간 존엄권은 연관된 여러 영역에서 위협받고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인간 존엄권의 강조점은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며, 또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인간 존엄권 지표 항목에는 학생 선발이나 교육 과정 같은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위협 받지 않을 인격권, 범죄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권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1) 평등권

인간 존엄권을 실행하는 핵심 요소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평등권의 효과적 실행은 차별 금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면서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인종, 국적, 지역, 종교, 성별, 연령, 신체조건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차별, 정보 접근이나 이동권 제약 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등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서는 차별 규정과 차별 실태만 다루고, 교육 기회의 평등, 정보 접근권 같은 사안은 사회적 권리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4-1> 학생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평등권	차별 규정	S11-1	학생 선발(신입, 편입) 규정에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	학생자치기구 규정에 차별(인종, 연령, 국적, 지역, 신체조건 등) 조항 명기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	학생자치기구 규정에 성차별 조항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차별 실태	S11-4	교육 과정(수강 과목 신청)에 차별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5	장학금 수혜자 선발이나 기숙사 입사 선정에 차별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6	학생회 구성에 양성 평등 참여 기회 여부 ①있다 ②없다	

이 부분의 차별 문제는 크게 규정과 실태로 나누어, 학생 선발(신입, 편입)이나 교육 과정, 학생 활동 등의 규정에 차별 조항 유무, 교육 과정이나 장학금 선발, 기숙사 입사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실태를 인권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제가 중시하여 학교 규정이나 학생 생활에서 나타난 성차별 항목을 포함하였다.

2) 인격권

인간 존엄권은 생명 보호와 생명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격 존중을 누릴 권리를 포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격 존중을 훼손하는 폭력과 성폭력을 인격권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인격권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력 비율, 그에 대처하는 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구성하였다. 성폭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성폭력 비율과 경험 유무, 성폭력에 대처하는 기구 운용,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4-2> 학생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인격권	폭력	S11-7	1년간 학생 1,000명당 교내 폭력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8	폭력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9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0	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 (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S11-11	1년간 여학생 1,000명당 교내 성폭력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12	성폭력 경험(성적 수치심 야기 등 성희롱 포함)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13	성폭력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4	성폭력 신고기구 상근자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15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6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시설(예: 성폭력 상담소 등)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 (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3) 안전권

<표 4-3> 학생의 인간 존엄권 - 안전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안전권	범죄	S11-18	1년간 학생 1,000명당 교내 범죄 건수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19	범죄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0	범죄 신고기구 상근자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21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2	범죄 피해자 상담 시설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23	범죄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4	교내 긴급 구호 전화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5	교내 순찰 실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안전사고	S11-26	1년간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27	안전사고 시 교내 응급 처치 시설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8	안전사고 처리 및 후속 조치 체계(예: 비상 연락망, 응급후송)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9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0	안전 교육 이행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1	1년당 시설물의 안전 점검 회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이상

인간 존엄을 누릴 권리는 생명 보호와 생명 존중의 생명권에서 시작되어 인격 존중을 누릴 인격권,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인간 존엄을 지켜주는 안전권 등과 이어진다. 학생들의 안전권 보장은 신체 위협 요소인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격리시키는 근거이다.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권의 실행 수준을 인권 지

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곧, 인간 존엄 부정하는 행위인 범죄나 신체 위해를 가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전사고 영역을 안전권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범죄와 안전사고로 나누어 각각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권의 위협하는 범죄율, 안전권의 보호 장치인 담당 기구나 지원체계(신고 기구 등), 방지 대책(순찰, 교육, 점검 등), 대처 방안(긴급구조 전화 등),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점점 증대되는 안전사고 문제를 중시하여 안전사고 관련 항목으로 응급 처지 시설, 신속한 후속 조치와 보험 가입 여부, 사전 방지를 위해 안전 교육 이행과 시설물 점검 등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시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인권의 주요 내용이다. 학생의 경우에도 시민적 권리는 특히 학교생활에서 인권 실행을 가능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러나 성인이지만 피교육생이라는 이중적 특성은 시민적 권리의 실행에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 규정과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 수준이 이중적 기준으로 따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규정과 학생 생활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항목을 설정하면서 학생의 지위를 감안하였다. 이에 따라 지표 영역은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작용하게 되는 법적 방어권, 일상생활 규제에 대응하는 사생활 보호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 또는 학문의 자유권과 종교 자유권으로 구성하였다.

1) 법적 방어권

학생은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학교라는 특별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탓으로 학교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는 자신을 변론하거나 소명 또는 재심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자기를 방어할 법적 절차의 권리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련 부서장(학과장, 학장 등)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또 징계 절차로 피의자가 소명 기회를 갖거나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구비하였나를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학생의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법적 방어권	징계	S12-1	징계위원회 구성에 소속 대학장 참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2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3	징계 대상자의 제심 요청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2) 사생활 보호권

학생들이 피교육생이고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기 위한 개인 생활 보호는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권의 측면에서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학교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지, 또 공동생활(기숙사)의 행동 규칙을 정해 놓고 규제하는지, 또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를 지표 항목에 넣어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실행 수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항목 구성에는 대학생이 성인이지만 여전히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보다는 통제와 간섭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표 4-5> 학생의 시민적 권리 - 사생활 보호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사생활 보호권	다기능 학생증	S12-4	다기능 학생증(일명 스마트 카드) 도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기숙사 생활	S12-5	기숙사 출입 시간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S12-6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대미만 ③1대-3대미만 ④3대-5대미만 ⑤5대이상

3) 학문 자유권

대학의 주요 기능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는 시민적 권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교수에게 중요하지만, 교육 받는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주요 내용이다. 학생도 교육과 학습의 결과물을 학회나 언론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와 달리, 피교육생이라는 측면에서 학습과 학문 활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관례가 있다. 곧, 학생의 학습 내용이나 학문 결과를 단행본 저서, 학교 교지, 신문, 학회지 등에 발표하는 것을 사전 검열하거나 허가하는 규정이나 관례는 분명히 학문의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회 활동의 검열 규정이나 사전 허가 실태를 항목에 반영하였으며, 또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징계 사례 빈도수를 항목에 포함하였다.

<표 4-6> 학생의 시민적 권리 - 학문 자유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학문 자유권	검열	S12-7	학교 규정상 출판 검열 규정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8	학회 발표 등 학문 활동의 사전 허가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징계	S12-9	지난 1년간 학문 자유 관련 징계 사례 [평가척도] ①없다 ②5건이하 ③6건-10건 ④11건-20건 ⑤21건이상

4) 종교 자유권

대학에 따라 설립 배경이나 교학 이념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교과 과정이나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강제 조약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존중해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는 상충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적 권리의 측면에서 종교 가입이나 활동을 요구하는 강제 조항은 피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규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나, 대학 입학과 졸업 요건으로 종교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가늠하는 인권 지표에 포함시켰다.

<표 4-7> 학생의 시민적 권리 - 종교 자유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종교 자유권	종교활동	S12-10	학교 규정에 종교 자유 제한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11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활동 강제성 부여 여부 ①있다 ②없다

3.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 역시 역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인권의 주요 내용이다. 학생의 경우에도 정치적 권리는 고유한 권리 내용이다.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자치권은 학생이면서 또한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필요한 권리 내용이다. 그러나 성인이지만 피교육생이라는 이중적 특성 탓으로 정치적 권리는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 규정과 정치적 권리의 주요 내용이 충돌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정치적 권리의 지표 영역을 언론 출판 자유권, 집회 결사 자유권, 자치권, 의사결정 참여권으로 구성하면서, 아울러 교내 언론 참여,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자치기구, 학교의 의사 결정 참여 등의 사항을 중점적인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1) 언론 출판 자유권

언론 자유는 사회 발전의 차원에서 볼 때 자유권의 핵심 내용으로 이해된다. 대학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는 자유권 신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개의 대학은 독자적인 신문이나 방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학생들의 특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언론 자유가 올바르게 행사되는지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이 인권 지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언론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 접촉 횟수, 발표 기회, 제작 사전 검열 등을 중심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직접적으로 언론 자유권 보장 여부는 신문 제작 이전의 검열제도나 대학 방송 대본의 사전 검열제도가 있는가에 따라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문의 발간 횟수나 발표 참여 기회, 방송의 방영 시간은 언론 소통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언론 출판 자유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S13)	언론출판 자유권	신문	S13-1	1년간 대학 신문 발간 횟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5회이하 ③6회-12회 ④13회-24회 ⑤25회이상
			S13-2	학생 100명당 1년 동안 대학 신문에 발표 참여기회 [평가척도] ①없다 ②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S13-3	대학신문 제작 이전의 검열 제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방송	S13-4	한 달간 대학 방송(TV, 라디오) 방영 시간 [평가척도] ①없다 ②30시간미만 ③30시간-60시간미만 ④60시간-90시간미만 ⑤90시간이상	
		S13-5	대학 방송 대본에 대한 교직원의 사전 검열제도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6	대학 방송 제작의 학생 참여 여부 ①한다 ②하지 않는다	

2) 집회 결사 자유권

<표 4-9>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집회 결사 자유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S13)	집회 결사 자유권	정당 활동	S13-7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집회 자유	S13-8	학교 규정에 집회 제한 규정 여부 ①있다 ②없다
		동아리 활동	S13-9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 제한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0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1	학생 100명당 동아리 수 [평가척도] ①1개미만 ②1개-4개미만 ③4개-7개미만 ④7개-10개미만 ⑤10개이상
			S13-12	학생 1명당 참여 동아리 수 [평가척도] ①1개미만 ②1개-2개미만 ③2개-3개미만 ④3개-4개미만 ⑤4개이상
S13-13	동아리 당 평균 회원 수 [평가척도] ①10명미만 ②10명-20명미만 ③20명-30명미만 ④30명-40명미만 ⑤40명이상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전통적으로 정치적 권리의 주요 내용이다. 학생의 경우, 교내외의 집회 참여, 단체 가입이나 결성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간접으로 정치적 권리와 연관되어 있다. 곧, 정치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규제하거나, 집회의 사전 허가나 제한 규정 등은 정치적 권리의 실행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교외의 정치 단체 가입과 활동 제한이나 집회 제한 규정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내 활동으로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의 제한 규정, 동아리 활동의 지원, 또 동아리의 활동 상황을 학생들의 결사 자유의 권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판단하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자치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은 「유엔사회권규약」이나 「유엔자유권규약」에서 강조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권리이다. 이 점은 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성인이지만,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이중적 위치 때문에 자결권은 갈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교수들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또 학생들의 생활을 관장하는 학교 당국과도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결권은 학생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결권을 학생 인권의 주요 내용으로 인식된다.

<표 4-10>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자치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S13)	자치권	학생 자치기구	S13-14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5	학생회 선거의 참여 보장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6	학교 규정에 학생 자치 활동 영역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7	학생 자치 활동 공간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8	학생 100명당 자치 활동 공간 규모[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m ² -3m ² 미만 ③3m ² -5m ² 미만 ④5m ² -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자결권의 핵심 내용은 자치권이다. 곧,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권리 행사는 자결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표를 뽑아 자신들을 대변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여러 자체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고유한 자치권은 학교 당국의 간섭이나 규제와 긴장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권의 항목에 자치기구(학생회) 구성의 제한이나 간섭, 대표자 선출 참여 보장, 자치 활동 영역의 제한 등은 자치권 실행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자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자치 활동의 주요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하여 자치 기구의 구성, 자치기구 선거 참여 보장, 자치 활동 영역의 제한, 자치 활동 공간 지원 등을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4) 의사결정 참여권

학생은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학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과 협의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학생들에 관련된 사안을 학생들이 배제된 채 결정되는 것은 학생들의 자결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학교의 공식 기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참여권도 학생을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는가를 반영하는 척도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학 전체나, 단과대학, 학과, 기타 조직에서, 대학평의회나 교수, 학생 협의체 같은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 제공 여부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4-11> 학생의 정치적 권리 - 의사 결정 참여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S13)	의사결정 참여권	의사결정 기구	S13-19	대학 전체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0	학생의 대학평의회 참여기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 [평가척도]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S13-21	단과대학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2	학과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3	기타 조직 협의체(예: 생활협동조합)에 학생 참여 여부 ①있다 ②없다

4. 경제적 권리

경제적 권리가 인권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학생의 지위에 비추어 경제적 권리는 교수나 직원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교수나 직원은 대학이 일터이지만, 학생에게는 배움터이기 때문에 경제적 권리의 주요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교 밖의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안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권은 제한된 의미일지라도 학생의 인권 상황의 주요 영역이다. 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생활비 등에 관련된 경제 상황은 사회 복지와 관련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경제적 권리와 이어진다고 보아 경제권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1) 노동권

학생들의 경제 활동은 크게 교외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과 교내의 근로학생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교외의 일자리는 대개 한시적 비정규직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인권 문제는 교수나 직원의 인권 부분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표 영역으로 설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 대신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교외 경제 활동 지원 기구 설치 여부를 지표 항목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학생들의 학교 내 근로는 노동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교내 근로 학생의 비율, 최저임금 보장 여부, 근로 임금의 지체 여부, 불만 처리 기구 설치 여부 등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4-12> 학생의 경제적 권리 - 노동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S14)	노동권	경제활동	S14-1	학생 경제활동(인턴, 아르바이트 등) 지원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교내근로	S14-2	학생 100명당 학교 내 근로 학생 비율 [평가척도] ①10명미만 ②10명-20명미만 ③20명-30명미만 ④30명-40명미만 ⑤40명이상
			S14-3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 위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4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 지체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4-5	작업장(실험실 포함) 내 업무 관련 불만 처리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2) 복지권

복지권과 인권의 관계는 성격상 많은 논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비 조달 문제는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관건이다. 곧, 장학금이나 학자금, 생활비는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변수이다. 이것들은 넓은 의미의 복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복지권 영역으로 분류하여 인권지표에 포함시켰다. 학생의 복지권은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학금 수혜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보조 방안인 학자금 융자, 생활비, 복지 지원 기구 등을 인권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4-13> 학생의 경제적 권리 - 복지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S14)	복지권	장학금/ 학자금	S14-6	학생 100명당 장학금 수혜 학생 수 [평가척도] ①10명미만 ②10명-15명미만 ③15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S14-7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 비율 [평가척도] ①10%미만 ②10%-20%미만 ③20%-30%미만 ④30%-40%미만 ⑤40%이상
			S14-8	학자금 융자 지원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9	학생 100명당 학자금 융자 수혜 학생 수 [평가척도] ①10명미만 ②10명-15명미만 ③15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S14-10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학자금 융자 수혜액 비율 ①10%미만 ②10%-20%미만 ③20%-30%미만 ④30%-40%미만 ⑤40%이상
		생활비	S14-11	학생 1인당 1달 평균 용돈(주거비 제외) [평가척도] ①10만원미만 ②10만원-15만원미만 ③15만원-20만원미만 ④20만원-30만원미만 ⑤30만원이상
			S14-12	학생 용돈(주거비 제외)의 학생 본인 부담 비율 [평가척도] ①10%미만 ②10%-30%미만 ③30%-50%미만 ④50%-70%미만 ⑤70%이상
		복지지원	S14-13	학생 복지 담당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14	학생 1,000명당 학생 복지 담당 기구 상근자 수 ①0.1명미만 ②0.1명-0.3명미만 ③0.3명-0.6명미만 ④0.6명-0.9명미만 ⑤0.9명이상

5. 사회적 권리

사회적 권리는 시민으로서, 또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 갖는 기본 인권이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특히, 학생은 교과 과정이나 진로 및 직업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적 존재이며, 교육 관련 정보를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쾌적하며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권은 교원이나 직원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는 문화적 권리의 하나이지만, 학생에게 있어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반영된 인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권은 문화적 권리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생에게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사회적 권리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교육권에 자결권과 평등권의 정신을 반영하여 교육선택권과 교육 기회 평등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회 제공 측면을 고려한 인권교육권과 정보 접근 기회의 평등을 고려한 정보 접근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반영하여 환경권과 건강권을 인권 지표로 구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 교육 선택권

교육은 대학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고, 학생은 교육 대상자이다. 학생의 자결권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권 지표의 항목으로 교육 과목 개설 논의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 교육 과정을 선택할 기회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수강신청 방법, 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 수강 과목이나 학과의 변경, 강의 평가제도 등을 교육 선택권 개념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진로나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준비 과정 개설, 지원 기구 설치, 복학 기회 제공 등을 지표 항목에 포함시켰다.

<표 4-14>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교육 선택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교육 선택권	과목 선택	S15-1	교과목 개설 논의 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	학생들이 교육 과정 선택(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3	다양한 수강 신청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인쇄물)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4	강의 평가제도 도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	교과 과정(커리큘럼)에 대한 정보의 사전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6	강의계획서 사전 공지/ 배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7	수강 과목의 변경/ 철회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8	학과 선택을 위한 전과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진로/ 직업 선택	S15-9	진로/ 직업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및 준비 과정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0	퇴학(자퇴/제적) 후 재입학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1	진로/ 취업 지원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2	학생 1,000명당 진로/ 취업 지원 기구 상근자 수 ①0.1명미만 ②0.1명-0.3명미만 ③0.3명-0.6명미만 ④0.6-0.9명미만 ⑤0.9명이상	

2) 교육 기회 평등권

학교의 여러 요소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 기회 평등권의 실행 상태는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기회 평등권은 개인의 차원보다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어, 학교 등록율이나 탈락율을 지표 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평균 재학연도, 강좌당 학생 수는 수리적인 교육 기회 균등에 머무르지 않고, 균등한 교육 질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교육 기회 평등권의 지표에 포함시켰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등록율과 탈락율, 평균 재학연한, 강좌당 학생 수를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기회 평등권의 실현에 기여하는 주요 내용이지만, 학생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복지권으로 분류하여 경제권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4-15>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교육기회 평등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교육기회 평등권	등록	S15-13	지난 1년간 등록률 [평가척도] ①70%미만 ②70%-80%미만 ③80%-90%미만 ④90%-95%미만 ⑤95%이상
			S15-14	지난 1년간 전체 학생 대비 자퇴, 제적 등 탈락률 [평가척도] ①1%미만 ②1%-3%미만 ③3%-5%미만 ④5%-10%미만 ⑤10%이상
			S15-15	지난 5년간 졸업생들의 평균 재학 년한 [평가척도] ①4년미만 ②4년-4.5년미만 ③4.5년-5년미만 ④5년-6년미만 ⑤6년이상
			S15-16	개설 교과목 1개 당 평균 학생 수 [평가척도] ①20명미만 ②20명-30명미만 ③30명-40명미만 ④40명-50명미만 ⑤50명이상

3) 인권교육권

<표 4-16> 학생의 사회적 권리 - 인권 교육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인권 교육권	인권 교육	S15-17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개-2개 ③3개-5개 ④6개-9개 ⑤10개이상
			S15-18	학생 100명당 인권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 수 비율 [평가척도]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양성평등 교육	S15-19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0	학생 100명당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수강 학생수 [평가척도]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다문화 교육	S15-21	다문화 교육 교과목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2	학생 100명당 다문화 교육 교과목 수강생 비율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학생의 평등권을 비롯하여 인권 전반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등권의 한 영역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항목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는 인권 일반에 대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각 부분의 인권교육 실시 여부,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 등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인권 실행의 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4) 정보 접근권

<표 4-17> 학생의 사회적 권리 - 정보 접근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정보 접근권	컴퓨터 시설	S15-23	유비쿼터스 실행 장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4	학생 100명당 학생 공용 컴퓨터 대수 [평가척도] ①1대미만 ②1대-5대미만 ③5대-10대미만 ④10대-20대미만 ⑤20대이상
			S15-25	컴퓨터 구입의 재정적 지원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6	컴퓨터 구입 편의(예: 공동구매, 정보제공)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정보교육	S15-27	정보 교육기관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8	정보 교육 교과목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9	학생 100명당 정보 교육 교과목 수강 학생 수 [평가척도] ①5명미만 ②5명-10명미만 ③10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도서관 정보접근	S15-30	지난 1년간 학생 1인당 대출 허용 권수 [평가척도] ①4권이내 ②5권-10권 ③11권-15권 ④16권-20권 ⑤21권이상
			S15-31	지난 1년간 학생 1인당 대출 허용 기간 [평가척도] ①5일이내 ②6일-10일 ③11일-20일 ④21일-30일 ⑤31일이상
			S15-32	도서 구입 비율 (전체 기성회 예산 대비) [평가척도]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S15-33	학생 100명당 좌석수 [평가척도] ①5석미만 ②5석-10석미만 ③10석-20석미만 ④20석-30석미만 ⑤30석이상

오늘날 정보 지식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권은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의 평등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보 접근권을 인권 지표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컴퓨터 시설, 정보 교육, 도서관 정보 접근으로 나누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접근의 주요 통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기회, 정보 활용 능력의 함양, 전통적 정보 출처인 도서관 이용 실태를 인권 지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이용 설비인 유비쿼터스 실행 장치, 컴퓨터 이용 조건 조성, 정보교육 기관이나 교육 과정 상황, 도서관 활용 상황이나 지원 및 설비 등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5)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교육 환경은 교지 확보나 교사 시설 같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권리 지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향유하는 공간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누리고 교정, 건물, 특히 학교 내 생활 공간인 기숙사의 면적을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환경권을 훼손할 요인인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지표 항목에 넣었다.

<표 4-18> 학생의 사회적 권리 - 환경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환경권	교지 확보 /교사시설 확보	S15-34	교지 확보율 [평가척도] ①100%미만 ②100%-150%미만 ③150%-200%미만 ④200%-300%미만 ⑤300%이상
			S15-35	교사시설 확보율 [평가척도] ①100%미만 ②100%-130%미만 ③130%-160%미만 ④160%-200%미만 ⑤200%이상
			S15-36	학생 100명당 기숙사 수용 비율 [평가척도] ①없다 ②10명미만 ③10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정화 시설	S15-37	실험실의 오염물질 정화 시설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6) 건강권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권리와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는 직결되어 있지만, 편의상 건강권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건강권의 주요 요소는 강의실, 실험실 등 교육 공간의 오염 상태, 식당 등 식생활 관련 환경의 여건, 휴식 공간(특히, 여학생 배려), 체육시설 설치 여부, 보건소, 상담(정신, 학교생활 등) 시설 등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채식주의자에 대한 배려, 상담시설에 전문상담 요원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항목에 반영하였다.

<표 4-19> 학생의 사회적 권리 - 건강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건강권	교육공간	S15-38	유해물질로부터 실험실 등을 보호하는 장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39	실험실의 환기 시설(예: 환풍기)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휴식공간	S15-40	실내 휴식 공간(예: 음악 감상실, 카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체육시설	S15-41	옥외 체육시설(스타디움, 대형 운동장)의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5-42	학생 100명당 옥외 체육 시설 공간 크기 [평가척도] ①10m ² 미만 ②10m ² -30m ² 미만 ③30m ² -50m ² 미만 ④50m ² -100m ² 미만 ⑤100m ² 이상
			S15-43	옥내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5-44	학생 100명당 옥내 체육 시설 공간 크기 [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m ² -3m ² 미만 ③3m ² -5m ² 미만 ④5m ² -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식당	S15-45	학생 100명당 식당 좌석수 [평가척도] ①1석미만 ②1석-5석미만 ③5석-10석미만 ④10석-20석미만 ⑤20석이상
			S15-46	식당 메뉴 종류 [평가척도] ①2개미만 ②2개-4개미만 ③4개-6개미만 ④6개-8개미만 ⑤8개이상
			S15-47	채식주의자 식단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상담시설	S15-48	상담 시설(예: 학생생활상담소)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49	상담 시설에 전문 상담 요원 배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보건시설	S15-50	보건(진료)소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1	전문 의료인(의사, 간호사) 배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2	정기 검진 실시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3	학생 지원 의료 보험 가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6. 문화적 권리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사람답게 사는 권리로서의 인권이 갖는 주요 요소이다. 문화권의 대상 범주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문화 관련 활동이 되겠지만, 편의상 지표 영역을 학생들의 교내 문화 활동과 종교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곧, 문화권의 지표 영역으로 문화 활동에 누릴 권리와 종교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설정하였다.

1) 문화 활동 참여권

학생들이 누리는 문화권의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지표에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 시설로서 공연장의 면적, 문화 활동 지원으로서의 문화공연 지원금 비율, 교내 문화 공연 횟수를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4-20> 학생의 문화적 권리 - 문화활동 참여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문화적 권리 (S16)	문화활동 참여권	문화시설	S16-1	학생 100명당 옥내외 공연장 면적 [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m ² -3m ² 미만 ③3m ² -5m ² 미만 ④5m ² -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문화활동 지원	S16-2	전체 기성회 예산 대비 학생 문화 공연 지원 예산 비율 [평가척도] ①0.1%미만 ②0.1%-0.5%미만 ③0.5%-1%미만 ④1%-2%미만 ⑤2%이상
		공연활동	S16-3	지난 1년간 교내 문화 공연 횟수 [평가척도] ①10회이하 ②11회-30회 ③31회-50회 ④51회-70회 ⑤71회이상
			S16-4	지난 1년간 교내 문화공연 종류 (예: 오페라, 연극, 전람회, 영화상영, 음악회, 콘서트, 기타) ①0개-1개 ②2개-3개 ③4개-5개 ④6개-7개 ⑤8개이상

2) 종교 활동 보장권

종교 활동 보장권은 앞서 자유권에서 논의한 종교 자유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 문화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권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문화권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 여부와 종교 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4-21> 학생의 문화적 권리 - 종교활동 보장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문화적 권리 (S16)	종교 활동 보장권	종교 활동	S16-5	종교 활동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종교 시설	S16-6	종교 시설(예: 기도실, 법당)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지금까지 학생의 인권지표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인권 유형을 인간 존엄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나누었고, 그 다음 각각에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눈 뒤, 소분류에 적절한 항목을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7.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지표 항목 구성을 살펴보면, 인간 존엄권은 평등권 6개, 인격권 11개, 안전권 14개, 총 31개 항목; 시민적 권리는 법적 방어권 3개, 사생활 보호권 3개, 학문 자유권 3개, 종교 자유권 2개, 총 11개 항목; 정치적 권리는 언론 출판 자유권 6개, 집회 결사 자유권 7개, 자치권 5개, 의사결정 참여권 5개, 총 23개 항목; 경제적 권리는 노동권 5개, 복지권 9개, 총 14개 항목; 사회적 권리는 교육 선택권 12개, 교육기회 평등권 4개, 인권교육권 6개, 정보 접근권 11개, 환경권 4개, 건강권 16개, 총 53개 항목; 문화적 권리는 문화 활동 참여권 4개, 종교활동 보장권 2개, 총 6개 항목으로 전체 138개 항목이다. 이는 학생 관련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한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을 효과적으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핵심 영역을 고르기 위하여 제2단계로 20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간 존엄권에서 평등권 2개, 인격권 2개, 안전권 1개, 총 5개 항목; 시민적 권리에서는 법적 방어권 1개, 사생활 보호권 2개, 종교 자유권 1개, 총 4개 항목; 정치적 권리에서는 집회 결사 자유권 2개, 자치권 1개, 의사결정참여권 1개, 총 4개 항목; 경제적 권리에서는 노동권 2개, 총 2개 항목; 사회적 권리에서는 교육 선택권 2개, 인권교육권 2개, 건강권 1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 학생 인권 지표의 핵심 사항으로 10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곧, 인간 존엄권 2개, 시민적 권리 3개, 정치적 권리 3개, 경제적 권리 1개, 사회적 권리 1개로 구성하였다.

<표 4-22> 학생의 제3단계 10개 인권지표 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 처
인간 존엄권 (S31)	평등권	S31-1	학생 선발(신입, 편입)이나 학생 활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S11-1+ 2
	인격권	S31-2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 기구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있나? ①신고 기구나 상담 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없다. ②신고 기구나 상담 시설은 있으나 법률지원체계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는 없다. ③신고 기구나 상담 시설은 없으나 법률지원체계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는 있다. ④신고 기구나 상담 시설과, 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⑤신고 기구, 상담 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함께 운영된다.	S11-9+ 10 + 13+ 14 + 15+ 16 + 17
시민적 권리 (S32)	법적 방어권	S32-1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있나? ①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없다. ②피의자 소명 기회는 있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없다. ③피의자 소명 기회는 없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있다. ④피의자 소명과 재심 요청의 기회가 모두 있다. ⑤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 규정은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S12-1~3
	사생활 보호권	S32-2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는? ①없다 ②1대미만 ③1대-3대미만 ④3대-5대미만 ⑤5대이상	S12-6
	종교 자유권	S32-3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가입 여부나 활동 정도를 반영하고 있나? ①있다 ②없다	S12-10+ 11
정치적 권리 (S33)	집회 결사 자유권	S33-1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를 제한하고 있나? ①있다 ②없다	S13-7
		S33-2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S13-9
	의사 결정 참여권	S33-3	대학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은?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S13-19+ 20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 처
경제적 권리 (S34)	노동권	S34-1	<p>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나?</p> <p>①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며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②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③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은 지체하지 않는다. ④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며 근로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지 않는다. ⑤근로 학생 제도가 없다.</p>	S14-3+ 4
사회적 권리 (S35)	인권 교육권	S35-1	<p>인권이나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나?</p> <p>①없다 ②1개-3개 ③4개-6개 ④7개-9개 ⑤10개이상</p>	S15-17+ 21

V. 대학 구성원의 인권 2 : 교수 편

학생의 인권 지표를 구성한 앞 장에 이어서 이 장에서는 교수의 인권 지표를 검토할 것이다. 교수의 보다 일반적인 법적 용어는 교원이다. 교원은 총·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성되는데 각 대학에는 이들과 더불어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둘 수 있게 하였다(「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이와 같이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는 크게 전임 교수와 비전임 교수(혹은 비정규 교수)라는 두 범주로 나뉜다. 비전임 교수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대학마다 달라 18개의 별칭을 갖는다 하는데, 이들 중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수는 시간강사,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등이며 ‘비정규 교수’라는 표현은 특히 이들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³⁾. 교수의 인권 지표를 다룰 이 장에서는 전임 교수와 비전임 교수 모두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지표를 구성하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작업은 인권의 범주를 설정하는 일이다. 인권의 범주에 관한 정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 채택된 「유엔자유권규약」과 「유엔사회권규약」이 시사하고 있는 범주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실제적 권리의 범주를 설정한 이창수 외(2005: 59)의 범주들을 주로 참고하여 인권유형과 하위 범주들을 설정했다. 인권유형과 하위범주의 대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인간 존엄권(평등권, 인격권), 2) 시민적 권리(양심·사상·종교 자유권, 거주 이전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3) 시민적 권리(법적 방어권), 4) 정치적 권리(언론출판 자유권, 집회·결사 자유권, 참여권), 5) 경제적 권리(노동권, 적정 보수권, 노동3권), 6) 사회적 권리(사회보장권,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7) 문화적 권리(교육권, 문화생활참여권)로 구분된다.

1. 인간 존엄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인권 논의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그 누구, 그 무엇으로부터도 억압받지 않고 각 개인의 신체와 정신이 존중되며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율적 인격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존엄성, 평등한 권리를

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비전임 교수보다 비정규 교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국회사무처, 2008; 제279회 국회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공청회 회의록 참조). 그러나 정년을 채운 명예교수나 고위 공직생활 경력을 가진 초빙교수까지 비정규 교수라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여기에서는 전임 교수에 대응하는 범주를 비전임 교수라고 부를 것이다.

제1조에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일차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약들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적 자유와 존엄성,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평등권과 차별 금지라는 하위 영역들로 나누어진다(이창수외, 2005: 205). 이러한 하위 영역들은 대체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⁴⁾ 사형, 고문, 생체실험, 강제노동과 노예제 등은 국가가 합법적 혹은 초법적으로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대학 인권 상황의 설명에 적절한 그 밖의 영역으로는 1) 평등권과 차별금지, 2) 인격적 대우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평등권과 차별금지는 「세계인권선언」 제1,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각종의 차별이 편재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은 대학 인권상황에도 잘 들어맞는 중요한 영역이 된다. 한편, 인격적 대우 범주(인격권)는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척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필자가 강조점 추가)는 규정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물론, 제5조 역시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대학사회에도 권력관계가 엄존하고(예: 대학당국·재단 vs. 대학구성원, 전임교수 vs. 시간강사·조교·대학원생, 남성 vs. 여성 등) 그에 따라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인격모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이라는 하위 영역을 대학 인권의 논의를 위해 설정하였다.

우선 평등권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인간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세계인권선언」 제7조), 어느 누구도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따른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유엔자유권규약」 제2조). 우리나라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1조)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평등권 이념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이 특히 일어나기 쉬운 몇몇 영역(성별, 장애, 연령)에 대해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2중, 3중의 차별금지 법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대학에서의 차별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예외적인 경우가 특정 종교와 신앙에 관련된 건학 이념이다. 사학의 경우 대체로 대학을 설립할 당시부터 건학 이념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데 종교재단 사학의 경우에는 신앙에

4) 인권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눈 프랑스 법학자 바삭(K. Vasak)은, 자유 이념에 기반을 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으로, 평등 이념에 기초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으로, 박애 이념에 근거한 연대성을 제3세대 인권으로 보았다(이창수 외, 2005: 58 참조). 이 중에서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에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주로 약자 보호와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송기춘, 2006: 99).

관련된 부분을 건학이념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이 국제인권규약이나 인권관련 국내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신앙 관련 건학이념을 갖고 출범했을 경우 사후에 만들어진 법적 잣대로 건학이념을 평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허나, 인권지표는 가급적 전향적 입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지표를 포함시켰다. P11-1은 학내 규정에 신앙관련 건학이념이 교수채용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P11-2는 채용용, 승진, 정년보장 심사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다.

<표 5-1> 교수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11)	평등권	채용/ 교수평가 (공통)*	P11-1	학교규정에 신앙관련 건학이념이 교수채용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1-2	학교규정에 신앙 관련 건학이념이 채용용·승진·정년보장 심사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1-3	지난 1년간 귀 대학의 교수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차별대우 (공통)*	P11-4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총장·보직교수, 재단측 인사가 교수의 비판적 성향, 출신지나 출신학교, 성별과 인종,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각종 심사와 평가에서 차별대우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P11-5	차별대우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심하다 ②심한 편이다 ③별로 심하지 않다 ④전혀 심하지 않다
		보직/ 위원회 (전임)*	P11-6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산식: 여교수 수/ 전체 교수 수) × 100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15%미만 ④15%-20%미만 ⑤20%이상
			P11-7	부처장(부실장, 부원장)급 이상 보직 여교수 비율은? (산식: 보직여교수 수/ 전체 보직교수 수) × 100 ①2%미만 ②2%-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P11-8	본부 위원회 여교수 위원 비율? (산식: 여교수 위원 수/ 전체 위원 수) × 100 ①2%미만 ②2%-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 (공통)은 전임·비전임교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표이고, (전임)은 전임교수에게만, (비전임)은 비전임교수에게만 해당되는 지표임. 이하 표에서의 표기방식 역시 동일함.

대학사회의 인권지표는 여교수 비율, 시간당 강사료 등과 같은 경성자료(hard data)에 의존

하거나 서베이 자료 같은 연성자료(soft data)에 의존해 구성할 수 있다. 조사의 편의성 측면에서 경성자료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표의 특성 상 경성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성자료에 의존하였는데 P11-3, 4, 5가 그 예이다. P11-3은 교수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지표이다. 이러한 차별은 앞서 열거한 각종 차별금지법 때문에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행해질 수도 있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묻는 게 필요하다. P11-4, 5는 총장, 보직교수, 재단 측 인사의 차별대우 여부와 그 정도를 물어 본 지표이다. 이 지표 역시 각종 규정에 드러나지 않겠고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해도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없기에 차별의 잠재적 피해자인 교수나 교수(협의)회 임원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차별대우는 교수(협의)회를 주도하거나 대학당국·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비판적 성향을 갖는 교수들에게 가해진다. P11-3에서 5까지의 지표는 사적 경험보다는 해당 대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형식을 취했다.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채용되지 않았을 테고 또한 각종의 차별대우를 받은 응답자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⁵⁾

<표 5-1> 하단에는 양성평등 관련 인권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P11-6), 부처장급 이상 보직교수 중 여교수의 비율(P11-7), 본부직속 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P11-8)로 양성 평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6)는 「국·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운영지침 및 평가계획(안)」에서 평가 지표를 수립한 바 있다. 평가지표들에 대한 배점 면에서 볼 때, 여교수 비율과 주요 보직 및 위원회 참여 여교수 비율 두 지표의 배점이 특히 높았다. 위에 제시한 인권지표는 이러한 양성평등 평가지표를 반영한 것이다. 위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임 여교수 비율 목표치는 20%, 인사위원회 여교수 비율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서 선택지에 열거한 비율의 범위를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격권에 대해 검토해 보자. 우리는 앞에서 대학사회에도 권력관계가 엄존하기 때문에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인격모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러한 폭력과 인격모독을 인격권이라는 하위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했다. <표 5-2>에는 인격권에 관련된 다섯 개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P11-9, 10은 비판적 성향의 교수나 소수자 집단 교수가 언어

5) 시간강사는 단지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전임교수에 비하여 월 급여, 신분보장, 사회보험 등에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이러한 제도가 헌법 제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민의 교육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편, 시간강사 문제는 평등권 측면이 아닌 경제적 권리의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명시된 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 보장 권리는 시간강사의 경제적 침해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시간강사 권리 문제를 경제적 권리 범주에서 다를 것이다.

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물어본 지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1987년 C대 총장의 병원장 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P11-11에서는 대학당국이나 재단측이 교수에게 교수 본연의 업무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여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립대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교수를 동원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교수로 하여금 지역 인근 고등학교를 돌게 하여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법정에서 공개된 부산지역 모 대학의 재임용 평가기준에는 놀랍게도 건학이념, 채플참가,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복무태도 및 행정협조, 졸업생 취업률, 발전기금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교수신문, 2009. 9. 21). P11-12와 13은 성추행·성폭력 경험에 관한 지표이다.⁶⁾ 이 지표에서는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빈도를 물어 보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가해자는 동료 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으로 다양할 수 있고 성별로는 여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을 물어보았다.

<표 5-2> 교수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11)	인격권	폭력 (공통)	P11-9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 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P11-10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심하다 ②심한 편이다 ③별로 심하지 않다 ④전혀 심하지 않다
		성폭력 (공통)	P11-11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대학당국이나 재단측이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 학생지도, 연구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여 인격모독을 경험한 교수가 있었는지 여부? (예: 학생 모집, 졸업생 취업, 발전기금 유치 등..) ①있다 ②없다
			P11-12	귀하는 지난 1년간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P11-13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①년3회미만 ②년3회-6회미만 ③년6회-12회미만 ④월1회이상	

6) 성폭력은 통상 강간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성폭력을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혼란이 따른다(김계현 외, 2005: 32-33). 이 보고서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병기할 것이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이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국가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후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과 같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송기춘, 2006: 98). 「세계인권선언」의 전 반부를 구성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1966년 「유엔자유권규약」으로 채택되어 규약 체결 당사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감시와 평가, 권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3> 교수의 시민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I (P12)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간섭 (공통)	P12-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교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가정사, 통신, 교류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명예·신용 비난 (공통)	P12-2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귀하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거주이전 자유권	주거지 (공통)	P12-3	지난 1년간 학생지도 등을 위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양심·사상 자유 (공통)	P12-4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이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종교자유 (공통)	P12-5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으로부터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 보호권, 거주이전 자유권, 양심·사상·종교 자유권으로 나누어 보았다(<표 5-3> 참조). 「유엔자유권규약」 제17조에는, 개인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표 P12-1, 2를 만들었다. 우선, 교수에게 교육·연구와 관련한 제안이나 지시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으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P12-1을 구성했다. 교수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비난도 대학사회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P12-2도 포함시켰다. 한편, 학생지도나 학사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학교 부근에 거주지를 정하라는 압력이 특히 초임 교수에게 가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12-3을 만들었다.

P12-4와 5는 양심과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표이다.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는 신념이나 종교를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표명할 자유까지 포함한다(「유엔자유권규약」 제18조).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후자, 즉 내면적 수용을 넘어서 공개적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일 텐데 그 경우 그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유는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온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자유인데 대학은 이러한 충돌의 중요한 현장이다. P12-4는 대학당국이나 재단이 특정 사상과 이념을 억압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는지, P12-5는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이다.

<표 5-4> 교수의 정치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P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공동)	P13-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해임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3-2	지난 1년간 교육, 연구, 학과(전공)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이 방해받거나 억압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출판 (비전임)	P13-3	비전임 교수들이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나 (예: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카페, 소식지 등)? ①있다 ②없다
	집회결사 자유권	자발적 결사 (비전임)	P13-4	비전임 교수들 간에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 (상위단체 지부, 분회도 포함)? ①있다 ②없다
	참여권	교수(협의)회 (전임)	P13-5	교수(협의)회가 학칙에 명시된 기구인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p13-6			교수(협의)회는 학칙 혹은 내규 상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는가? ①의결권 ②심의권 ③자문기구 ④교수회 없음/ 친목단체 기능	

<표 5-4>에는 교수의 정치적 권리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시민적 권리가 그러하듯이 정치적 권리 역시 본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관련된다. 즉, 개인이 국가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대학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교수의 권리를 지표화 하였다.

교수의 정치적 권리는 언론출판 자유권, 집회결사 자유권,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신체제 하에서 도입된 교수제 임용제는 많은 대학에서 교수의 비판적 연구와 실천 활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1987년 이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제도는 여전히 교수의 의사표현권, 집회결사권, 학사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직원 임면권이 재단에 이양됨에 따라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는 사립대학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게 됐다. P13-1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지표이다.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비판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대학사회에서 흔히 침해된다. 보직 여부, 전임 여부, 임용 순서, 나이 등에 따른 지위의 차이가 의사 표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13-2는 교육, 연구, 학과/전공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 표명이 다른 교수나 분위기에 의해 억압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지표이다. 한편, 비전임교수는 대학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각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보았다. 그들이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언론출판 자유권), 공통관심사항을 논의할 있는 단체가 있는지(집회결사 자유권)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집회결사 자유권은 단위 대학의 독자적인 조직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가 있는 경우도 집회결사 자유권이 확보, 향유되는 경우로 간주했다.

전임교수들의 학사운영 참여권은 개인-국가 간 관계에서의 참정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설정했다. 참여권은 1987년 이후 복원된 교수(협의)회의 법적 기구 여부와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지표화 했다. 교수(협의)회 대신 대학평의회의 기능으로써 참여권을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학평의회는 그 구성이 평교수뿐 아니라 대학당국을 대표하는 보직교수,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따라 형식적 기구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수(협의)회의 존재와 기능에 주목하였다. P13-5는 교수(협의)회가 학칙에 명시된 학칙상의 기구인지, P13-6은 학칙 혹은 내규상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는지 평가토록 했다. 권리가 많은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의결권, 심의권, 자문기구, 친목단체의 순으로 볼 수 있다. 교수

(협의)회의 심의권이 갖는 법적·형식적 의미는 그 기구를 자문기구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내규상 심의권을 명시한 경우와 단순히 자문기구라고 명시한 경우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양자를 구분했다.

3. 경제적 권리

경제적 권리 지표는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두 집단 각각이 처한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를 적정 보수권, 노동권, 노동3권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부교수(급)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정 보수권의 지표로 삼았다. 전임교수의 급여 수준은 시간강사의 강사로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학력·경력을 감안할 때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꽤 낮은 수준에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에 따라 급여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2008년도 대학별 교수연봉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해보면, 가톨릭대(성의)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1억 7천 3백만 원 수준임에 비하여 수원가톨릭대의 경우는 2천 3백만 원에 불과했다. 한국국제대의 경우 전임강사의 평균연봉은 1천 2백만 원대이니 월 급여액이 100만 원 정도인 셈이다(한국대학신문, 2008. 11. 3). 대학들의 연봉 분포를 고려하여 P14-1 지표를 만들었다. 기준 직급은 정교수 바로 아래 직급인 부교수(급)로 삼았다.

비정년트랙 교원이란 최초 임용 당시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재임용 횟수 역시 1-2회로 제한하여 임용하는 계약직 교수이다. 2003년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들이 전임교수로 산정되자 적은 비용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이 크게 늘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법적으로는 전임교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전임 교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송병준, 2008). P14-2는 전체 전임교수 중에서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 비율이 대학별로 5-35%의 분포를 보였고, 교수 수로는 50여명에서 170명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전임교수 집단에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근무조건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전임교원의 주당 평균 시수를 평가지표로 삼았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주당 시수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균 시수 9시간을 초과한다. 특히 야간 과정이 있는 일부 사립대학의 경

우에는 시수가 크게 늘어난다. 높은 시수는 당연히 수업과 연구의 부실, 나아가서 건강권 침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를 노동권의 한 지표로 포함시켰다.

<표 5-5> 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P14)	적정 보수권	보수	P14-1	부교수(급)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①3천만원미만 ②3천만원-6천만원미만 ③6천만원-9천만원미만 ④9천만원-1억2천만원미만 ⑤그 이상
			P14-2	전임교원 중에서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20%미만 ④20%-30%미만 ⑤30%이상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P14-3	전임교원 1인의 주당 평균 시수: ①9시간이하 ②9시간초과-12시간이하 ③12시간초과-15시간이하 ④15시간초과
			P14-4	교수업적 평가시 연구, 교육, 학생지도 이외의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예, 신입생모집, 취업률, 발전기금 유치 및 기자재수증, 대중매체 기고 및 출연, 교수자질, 복무태도, 면학분위기 조성, 애교심 등) ①있다 ②없다
			P14-5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가 아닌 항목의 배점 비율?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20%미만 ⑤20%이상
	노동3권	노동조합	P14-6	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나 ? (단위 노조 혹은 상위단체 지부나 분회 포함) ①있다 ②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승진심사, 재임용심사 등 각종 심사에서 활용하는 교수 업적 평가기준은 당연히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 교육, 학생지도에 관한 항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 취업률, 발전기금 유치, 복무태도 등 교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최근에 대법원은 학생모집 활동, 취업률, 발전기금 유치 등을 재임용심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로 삼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 사례도 있다(교수신문, 2009. 9. 21). P14-4와 5는 이러한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P14-6은 교수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 물어본 지표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01년 출범하여 지역별 지부와 대학별 지회를 두고 있다. 교수노조 조직 여부는 곧 대학별 지회가 결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지표이다.

<표 5-6>에는 비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 비전임 교

수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강사는 교수집단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이다.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fact)부터 나열해 보면, 1) 시간강사 수는 2008년도 기준 7만2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2) 이들이 전체 수업시수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3) 주당 9시간 기준 평균 연봉 추정액이 999만원 정도로 전임강사 연봉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4) 4대보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7)

<표 5-6> 비전임교수의 경제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P14)	적정 보수권	보수	P14-7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수준인가?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강사가 속한 등급의 강의료) ①2만원미만 ②2만원-4만원미만 ③4만원-6만원미만 ④6만원-8만원미만 ⑤8만원이상
			P14-8	강의하지 않는 방학 중에도 시간 강사료를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P14-9	시간 강사료 이외의 재정 지원이 있는가? (예: 교통비, 자료복사비, 교재비, 실험실습 재료비, 시험채점비 등) ①있다 ②없다
			P14-10	시간강사 위촉 후 학교나 학생 측 사정으로 폐강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시간강사에게 해 주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P14-11	시간강사의 위촉/계약은 몇 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나? ①한 학기 ②2개 학기 ③3개 학기 이상
			P14-12	총 강의시간 중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시간의 비율은? 산식: (시간강사 수업시수/ 총 수업시수) × 100 ①20%미만 ②20%-30%미만 ③30%-40%미만 ④40%-50%미만 ⑤50%이상
	노동3권	노동조합	P14-13	비전임 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전임(비정규) 교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나 (단위 노조 혹은 상위단체 지부나 분회 포함)? ①있다 ②없다

「유엔사회권규약」 제7조에 따르면, 1) 모든 노동자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으며, 2)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7)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다소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중복 출강을 감안하면 실제 강사 수는 5만3천명 정도인데 비정년트랙 교수 등 비전임교수의 전체 규모는 13만5천명 수준으로 본다. 이들은 대학 강의의 40-70%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당 9시간 강의시 연봉이 약 천만원 정도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강의시수가 부족하여 연봉 5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1차적 요구사항은 최소 급료 보장 문제 이전에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회복이다(국회사무처, 2008).

있는 수준의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교수의 강의가 비전임교수의 그것보다 더 가치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간강사의 낮은 급여는 적정 보수권의 명백한 침해이며, 월 소득 80만원 혹은 그 이하의 소득으로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적정 보수권의 침해이다. 시간당 강의료는 적정 보수권의 핵심이 될 것이기에 P14-7에서 그것을 인권지표의 하나로 삼았다. 교과부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시간당 강사료는 많게는 97,000원에서 적게는 19,000원을 주는 대 학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표의 선택지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간강사의 경제적 애로사항은 시간 강사료가 낮다는 것 말고도, 방학 기간 중에 급여가 없다는 점, 강사료 이외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박인우(2008) 교수 연구팀의 시간강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교육경비를 지급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8%에 불과했으며 교통비나 자료복사비 등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이 두 항목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P14-10에서는 시간강사 위축을 한 후 학교 측 사정으로 폐강이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하게 소득보전을 해 주는지 물어보았다.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이 항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의시간 축소는 궁핍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 경우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14-11에서 13까지의 지표는 노동권과 노동3권에 대해 물어 보았다. P14-11은 시간강사의 위축/계약이 몇 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그 기간을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기 말경 조교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를 구두로 통보하는 형식을 취한다 하니 한 학기 단위로 강사를 위축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행은 시간강사의 고용 불안정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시간강사들의 염원을 담아 계약기간의 범위를 현실보다는 다소 길게 설정했다. 한편 P14-12에서는 총 강의시간 중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시간의 비율을 물어 보았다. 이 지표는 일자리 안정성의 한 지표이다. 시간강사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시간 비율이 낮을수록 일자리 안정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교원으로 바꾸어 그 비율을 0%로 만드는 것이 목

표치가 될 것인데, 다른 한편 어느 대학에서 이 비율이 낮다함은 채용인원이 적어서 시간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노동3권 지표인 P14-13에서는 비전임 교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전임 교수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 물어 보았다.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는 2009년 현재 7개 대학에 분회가, 1개 대학에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다.

4. 사회적·문화적 권리

「유엔사회권규약」 제9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등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교수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장권에 해당하는 것은 4대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강사에게 가해지는 권리 침해 중 하나는 그들 대부분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주호의 시간강사 실태분석에 따르면(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 재인용), 2006년 현재 국립대 42개교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대학은 전혀 없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34개교(81.0%)의 대학에서 보장되고 있었다. 한편 사립대의 경우에는 총 113개교 중에서 국민연금은 2개교, 건강보험은 3개교, 고용보험은 27개교(23.9%), 산재보험은 47개교(41.6%)에서 보장되고 있었다.⁸⁾ P15-1부터 4까지의 지표에서 시간강사의 4대 보험 문제를 다뤘다(<표 5-7> 참조). 이 지표에서 4대 보험 가입여부의 대상을 비전임 교수 일반이 아닌 시간강사로 제한한 이유는, 이 문제가 시간강사 집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각 종목 별로 따로 물어 보았다. 앞의 실태분석에서 보았듯이 보험 별로 보장 비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 측 입장에서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보험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유엔사회권규약」 제13조에는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년/안식년제, 연구비, 연구시설 등은 경제적 권리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위 규약에 근거하여 위 항목들을 문화적 권리의 하나인 교육권으로 보았다. 우선 P16-1과 2에서는 1년당 연구년제/안식년제 수혜교수 비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까닭은 「국민연금법시행령」에 일용근로자와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올과 경비지원 규모를 지표화 하였다. 연구년제와 안식년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년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 등 학교 업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비하여, 안식년제는 학교 업무 면제의 주요 이유를 연구보다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에 둔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생각할 때, 안식년제는 경제적 권리의 노동권에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며 연구년제는 문화적 권리의 하나인 교육권에 더욱 관련된 제도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최근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업적 제고를 위해 안식년제보다는 연구년제를 선호한다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 제도 관련 항목을 교육권으로 분류했다.

<표 5-7> 교수의 사회적·문화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P15)	사회 보장권 (비전임)	4대보험	P15-1	시간강사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2	시간강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3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4	시간강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문화적 권리 (P16)	교육권 (전임)	연구년/안식년 (전임)	P16-1	1년당 연구년제/안식년제 수혜 교수 비율(총 재직교수 대비 %) ①제도 없음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P16-2	연구년제(안식년제) 해외파견 교수에 대한 1년당 경비지원 액수는? ①없음 ②400만원미만 ③400만원-800만원미만 ④800만원-1200만원미만 ⑤1200만원이상
		연구비 (전임)	P16-3	전임교수 1인당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①없음 ②400만원미만 ③400만원-800만원미만 ④800만원-1200만원미만 ⑤1200만원이상
			P16-4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수혜율은?(총 재직교수 대비 %) ①없음 ②10%미만 ③10%-20%미만 ④20%-30%미만 ⑤30%이상
		연구시설 (비전임)	P16-5	시간강사들을 위한 강의준비 및 연구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①없다 ②교양과정 건물에 있다 ③단과대학별로 있다 ④학과/전공별로 있다

P16-3과 4에서는 전임교수들에 대한 교내 연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지표화 했다. 교수들의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비 지원 재단,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지자체, 사기업 등

여러 외부 기관에서 지원되는데 다른 한편 교내의 학술연구 기금이나 재단에서 지원되기도 한다. 외부 기관 지원 연구과제 선정이 매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교내 연구비는 통상 학진 등재지 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비교적 완화된 경쟁조건 하에서 과제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교내 연구비는 선정률이 낮은 외부지원 연구비를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학의 연구 분위기 진작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 규모와 수혜 비율은 대학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와 수혜율을 P16-3과 4로 지표화 했다.

P16-5는 시간강사들의 강의 준비 및 연구 공간에 관한 항목이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로서는 고정된 개인 연구실은 없을지라도 강의 준비나 연구, 짧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도의 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 강의 자료의 검토와 구상을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강사를 위한 대학들의 배려는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 박인우(2008: 48-50) 교수팀의 시간강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시간강사 및 강의전담교수) 중 연구공간을 제공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4.7%(시간강사만의 경우: 19.7%)에 불과했고 휴게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5.9%였다. P16-5에서는 강의준비 및 연구공간의 유무와 규모를 동시에 물어 보았다.

5.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시민적 권리의 하나인 법절차적 권리, 즉 법적 방어권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인데 그 내용으로는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을 포함한다(이창수 외, 2005: 66).⁹⁾ 이러한 국가-개인 간 관계에 관한 법절차적 권리는 대학 상황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당연히 대학사회의 권력관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교수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은, 교수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해 주는 기구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라는 지표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9) 법적 방어권은 국가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민적 권리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논의의 편의상 교수 편과 직원 및 조교 편의 제1단계 지표개발 작업에서는 이 권리를 사생활 보호나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등의 시민적 권리 범주와 분리시켜 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다.

P17-1은 교원 고충처리위원회가 학칙이나 내규로서 규정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단위 대학에 있는지 물어보는 지표이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평교수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고충을 듣고 적법하게 처리해 주는 치료적 기능도 갖지만 다른 한편 부당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학 구성원이 그러한 위원회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이 유명무실하다고 느낀다면 규정상 위원회의 존재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위원회에 대한 교수들의 인지도와 가치 부여 여부는 위원회의 상담 실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P17-2를 만들었다. 한편, P17-5는 비전임 교수들을 위한 고충처리 기구나 프로그램이 규정으로 존재하는지 물어본 지표이다.

<표 5-8> 교수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교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Ⅱ (P17)	법적 방어권	고충처리 (전임)	P17-1	학칙이나 내규 상 교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P17-2	지난 1년간 교원에 대해 고충처리 상담을 해 준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①전혀 없다 ②1회-4회 ③5회-9회 ④10회이상
		징계절차 (전임)	P17-3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예: 소속대학장, 교수협의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P17-4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고충상담 (비전임)	P17-5	비전임 교수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기구나 프로그램이 규정상 존재하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해촉 (비전임)	P17-6	비전임 교수들의 해촉이나 계약해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지침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P17-3과 6은 교수의 징계나 해촉에 관한 지표이다. P17-3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표인데, 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이 대상자 입장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겠으나, 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교수(협의)회 임원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교육부 소청심사나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수 징계사례의 대

부분이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P17-4는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물어본 지표이다. P17-6은 비전임 교수들의 해촉과 계약 해지가 명문화된 규정·지침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물어본 지표이다. 이 두 항목은 그런 제도·규정·지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평가하였다.

6.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이상과 같이 인권 유형에 따라 지표 항목을 구성한 결과, 인간 존엄권 관련 항목 13개, 시민적 권리 항목(법적 방어권 포함) 11개, 정치적 권리 항목 6개, 경제적 권리 항목 13개, 사회적 권리 항목 4개, 문화적 권리 항목 5개 등 도합 52개 항목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항목들 중에는 전임교원 혹은 비전임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도 있고 두 하위집단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표항목도 있었다.

이러한 52개의 지표들은 교수 인권에 관련된 항목들을 가급적 최대한 나열해 본다는 취지, 즉 교수 인권지표 풀(pool)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간추릴 필요가 있다. 물론 중요도에 따라 지표들을 선별하는 작업에는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활용의 면에서는 이러한 선별 작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최종 단계(3단계)의 대학 인권지표 항목 수를 30개로 설정했고 이들 중 교수 인권지표의 수를 7개로 정했다. 그리고 중간단계(2단계)의 항목 수는 3단계 항목 수의 2배수로 정했으며 그에 따라 교수 관련 지표를 14개로 설정했다. 요컨대, 1단계에서의 교수 인권지표 52개를 2단계에서는 14개, 3단계에서는 7개로 단계별로 축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표항목 수를 단계별로 다르게 구성하면 이 지표를 사용할 기관이나 연구자가 개개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세 단계의 지표그룹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단계 교수 인권지표는, 인간 존엄권 4개 항목, 시민적 권리 3개 항목, 정치적 권리 1개 항목, 경제적 권리 4개 항목, 사회적 권리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3단계 지표는 인간 존엄권 2개 항목, 시민적 권리 1개 항목, 정치적 권리 1개 항목, 경제적 권리 2개 항목, 사회적 권리 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구체적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VI. 대학 구성원의 인권 3 : 직원 및 조교 편

1. 인간 존엄권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을 갖는다고 선언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리로서의 인간 존엄권은 다른 모든 유형의 인권의 출발점이자 토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인간의 존엄성은 학살, 고문, 강제노동, 인간실험, 낙태 등 여러 형태로 침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형금지, 강제노동금지, 노예금지, 고문금지, 폭력금지, 차별금지, 신체의 안전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인간 존엄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대학사회에 적용하게 되면, 구성원들, 특히 일반직원과 조교에 대한 차별금지와 폭력금지가 핵심과제로 설정된다. 차별금지와 폭력금지를 각각 평등권과 인격권으로 부를 수 있다면, 평등권은 직원의 채용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에도 보수, 직무배치, 승진, 근무기간 등 모든 직장생활에서 지켜져야 한다.

1) 평등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 2010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일반직원과 조교가 공무원채용과정을 통해 채용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적어도 채용과정에서의 성, 연령, 장애에 따른 차별행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들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징적인 지표항목으로 E11-1과 A11-1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차별적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파악이 가능한 E11-2와 E11-3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지표항목은 채용과정을 직접 가리키지는 않지만 공정한 채용과정의 누적효과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교의 경우에는

일의 성격상 여성 조교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과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보완적인 두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채용 이후 직장생활에서의 보수, 직무, 승진, 근무기간 등에 관련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는 채용과정에 비해 법률로써 규제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직무, 승진, 근무기간 등에서의 차별행위는 대학의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보수와 승진 등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그리고 직무배치 등에서는 장애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에, 국적에 따른 차별, 즉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기 때문에 E11-4와 A11-2에서는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6-1> 일반직원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E11)	채용		E11-1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2	전체 직원에서 여성비율은? ①10%미만 ②10%-25%미만 ③25%-33%미만 ④33%-50%미만 ⑤50%이상
			E11-3	전체 직원에서 장애인 비율은?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보수·직무·승진		E11-4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5	보수, 승진/승급, 정년에 있어서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6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7	과장급 관리 직원에서 여성비율은? ①10%미만 ②10%-25%미만 ③25%-33%미만 ④33%-50%미만 ⑤50%이상
			E11-8	계장 (혹은 대리)급 관리 직원에서 장애인비율은?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근무기간		E11-9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표 6-2> 조교의 인간 존엄권 - 평등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A11)	평등권	채용	A11-1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보수·직무·승진	A11-2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3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4	조교 가운데 일반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 승진, 근무기간 등에서는 차별을 받는 행정조교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근무기간	A11-5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보수의 차별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E11-6과 A11-3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덧붙여서 일반직원에게는 직종에 따른 차별이 그리고 조교에게는 일반직원과 사이에서의 차별이 각각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E11-5와 A11-4를 구성하였다. 승진제도가 분명한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승진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차별의 누적효과를 보여주는 E11-7과 E11-8을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근무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소수집단 가운데서 현재 그 수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여성만을 선택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다루는 지표항목들인 E11-9와 A11-5를 만들었다.

2) 인격권

인간 존엄권의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폭력금지와 관련된 인격권 지표로는 일반적인 폭력지표와 함께 특별히 성폭력지표도 구성하였다. E11-10과 A11-6은 재단사람, 상급직원,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언어적인 혹은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들이다. 이와 함께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교수 및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E11-11~13을 구성하였으며, 조교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장 많이 접하는 상급자인 교수와의 관계에 한정하여 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A11-7을 구성하였다.

<표 6-3> 일반직원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E11)	인격권	폭력	E11-10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혹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1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2	지난 1년 동안 교수에 대한 직원의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3	지난 1년 동안 학생에 대한 직원의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E11-14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혹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5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표 6-4> 조교의 인간 존엄권 - 인격권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A11)	인격권	폭력	A11-6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7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A11-8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9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10	지난 1년 동안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마찬가지로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도 재단사람, 상급직원, 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들인 E11-14 및 A11-8과 함께,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교수에 의한, 그리고 조교의 경우에는 교수 및 학생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E11-15와 A11-9~10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2. 시민적 권리

인간 존엄권에 직접 기초하여 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발전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시민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와 함께 자유권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시민들이 중세 신분사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시민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였던 것이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모두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리키지만, 시민적 권리는 존엄한 인간적인 삶을 저해하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해 정치적 권리는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라는 적극적인 의미와 도구적인 의미를 갖는다. 카렐 바삭(K. Vasak)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인권의 역사에서 볼 때 제1세대의 인권에 속한다고 표현하였다.

시민적 권리에는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소유의 자유,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등의 제 권리가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의 대학에 적용시켜 일반직원과 조교의 사생활 보호권, 거주이전 자유권, 그리고 양심·사상·종교 자유권을 중심으로 지표항목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생활 보호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이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지표로 삼아서 항목 E12-1 및 E12-2와 A12-4 및 A12-5를 각각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사생활 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교에 한하여 재단사람, 상급 직원, 동료 조교 뿐 아니라 교수 혹은 학생으로부터도 사생활 침해를 받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A12-1~3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이전 자유권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학교 인근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학교가 강요하는지를 확인하는 동일한 내용의 항목 E12-3과 A12-6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양심·사상·종교 자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억압이나 강요를 통해 사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

여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표항목 E12-4 및 E12-5와 A12-7 및 A12-8을 각각 구성하였다.

<표 6-5> 일반직원의 시민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I (E12)	사생활 보호권	두발 및 복장	E12-1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E12-2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E12-3	학교 인근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E12-4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종교	E12-5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표 6-6> 조교의 시민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I (A12)	사생활 보호권	임직원 관계	A12-1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교수 관계	A12-2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학생 관계	A12-3	지난 1년 동안 학생으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두발·복장	A12-4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A12-5	조교가 근무하는 학과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A12-6	학교 인근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A12-7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종교	A12-8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3.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는 자유권적인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정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들이다. 정치적 권리의 탄생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에서 시민들이 경제적 위상과 불일치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정치적 권리는 근대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를 이어 여성들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이처럼 정치적 권리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력배분이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뜻하였으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권력 행사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가고 있다.

<표 6-7> 일반직원의 정치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E13)	언론 출판 자유권	의사 표현	E13-1	지난 1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상급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은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 출판	E13-2	직원들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예: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①매체가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②매체가 있지만 자유로이 활용하기 어렵다. ③매체가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 ④매체가 없으며 실제로 만들 수도 없다.
	집회 결사 자유권	결사	E13-3	직원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조 외의 단체 혹은 기구가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 ①단체가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 ②단체는 있으나 활동에 제한이 있다. ③단체가 없다.
	참정권	참정	E13-4 E13-5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①가능하다. ②가능하지 않다.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표 6-8> 조교의 정치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A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 표현	A13-1	지난 1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교수, 상급직원, 혹은 동료에게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은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 출판	A13-2	조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예: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①매체가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②매체가 있지만 자유로이 활용하기 어렵다. ③매체가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 ④매체가 없으며 실제로 만들 수도 없다.
	집회결사 자유권	결사	A13-3	조교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조 외의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 ①단체가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 ②단체는 있으나 활동에 제한이 있다. ③단체가 없다.
	참정권	참정	A13-4 A13-5	A13-4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 조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①가능하다. ②가능하지 않다. A13-5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조교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이와 같이 정치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이든 아니면 시민사회 수준이든 간에 권력 행사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리키지만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언론출판의 권리와 집회결사의 권리도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의 주요 내용에 속한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 권리를 대학사회에 적용시킨다면 국가 수준에서보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정치적 권리를 이해하고 그 실현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 작업에서는 대학 내에서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언론 및 출판 자유권, 집회 및 결사 자유권, 그리고 참정권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을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언론출판 자유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년 동안 직무에 관해 직원들이 상급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그리고 조교는 교수, 상급직원, 혹은 동료에게 각각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 E13-1과 A13-1을 각각 구성하였

다.

그리고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혹은 지금 매체가 없다면 이를 만들 수는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 E13-2와 A13-2를 구성함으로써 언론 및 출판 자유권이 실현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집회 및 결사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직원협의회나 조교협의 회처럼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집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 혹은 기구가 각각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들 단체 혹은 기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E13-3과 A13-3을 구성하였다. 물론 결사 자유권에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도 포함되지만 노동조합의 결성 및 참여의 권리는 경제권에 속하는 노동3권의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조를 제외한 다른 단체 혹은 기구의 결사에 국한시켰다.

이어서 참정권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 일반직원과 조교가 각각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대학평의회(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의 참여로 표현되는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일반직원과 조교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점에 관한 항목 E13-4 및 E13-5와 A13-4 및 A13-5를 각각 구성함으로써 일반직원과 조교가 대학 내에서 행사하는 참정권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이어 제2세대 인권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탄생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간섭을 최소화하려고 한 결과 19세기 서구사회에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것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근대적 시민혁명인 프랑스대혁명의 세 이념 가운데 특히 자유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와 비교해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평등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들이다.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경제

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에 우선하면서 그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권리에는 가장 먼저 재산권이 속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이미 시민적 권리의 하나로서 취급된 바 있다. 그리고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특별히 강조되던 19세기에는 재산의 자유로운 소유 및 처분의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주장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권리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이와 달리 노동권, 노동3권, 적정임금의 권리 등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훨씬 더 강조된 경제적 권리이며 소비자 권리는 20세기 후반에 와서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경제적 권리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게 된 이들 경제적 권리들은 서구사회의 경우 사회적 국가 혹은 사회보장 국가 체제를 통해 제도화되거나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권리를 대학사회, 특히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적정임금의 권리, 노동권, 그리고 노동3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적정임금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적어도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의 보수를 받아서는 적정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적정임금의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 항목 E14-1과 A14-1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통상 사무관리직 종사자의 보수를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중분류에서는 적정임금의 권리 대신에 적정보수의 권리로 표현하였다.

노동권 혹은 근로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강현철·이주일, 2004: 109)”. 즉, 간략히 표현하여 노동권은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대학의 일반직원과 조교는 이미 고용관계를 통해 근로를 행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이러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형태이므로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의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노동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항목 E14-2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조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된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고용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확인하는 대신에 전업(full-time)조교의 재임용기간을 예컨대 1년, 2년, 3년 등으로 관행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항목 A14-2를 구성하였다.

<표 6-9> 일반직원의 경제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E14)	적정 보수권	소득	E14-1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직원의 비율? ①0% ②10%미만 ③10%-25%미만 ④25%-33%미만 ⑤33%이상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E14-2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노동3권	노조 결사	E14-3	일반직원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단체 교섭	E14-4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지? ①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②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6-10> 조교의 경제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A14)	적정 보수권	소득	A14-1	전업조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조교의 비율? ①0% ②10%미만 ③10%-25%미만 ④25%-33%미만 ⑤33%이상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A14-2	일반직원과 달리 전업조교의 재임용기간을 관행적으로 제한하는지? ①제한한다. ②제한하지 않는다.
	노동3권	노조 결사	A14-3	전업조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단체 교섭	A14-4	전업조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지? ①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②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3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닐 경우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강현철·이주일, 2004: 107)”. 근로자의 노

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런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통적으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공무원 가운데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김재기, 2006: 46-47).¹⁰⁾

하지만 2008년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즉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뿐 아니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게 되었으나,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는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의 단결권보호 및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서 노동3권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의 경우 공권력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사업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대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김재기, 2006: 83-91).¹¹⁾

한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현황을 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단결권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며 단체교섭권도 대체로 인정되는 경향인데 비해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다(김재기, 2006: 131). 이렇게 국내법, 국제노동기구의 규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으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규범과 현실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대학인권 지표에서는 일반직원 및

10) 다만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즉 교원노조법은 교원인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단결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법률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의 범위는 초중등교원으로서 대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ILO는 전체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강제근로와 관련된 협약, 차별금지와 관련된 협약, 그리고 아동근로와 관련된 협약 등 4개 부문의 협약을 핵심적인 협약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87호, 98호 등 핵심적인 협약들은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에 의거하여 회원 국가들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 의무를 갖는 협약들로 여겨진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2005: 4 이하).

조교의 단체행동권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제1단계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지표항목 E14-3, E14-4와 A14-3, A14-4로 각각 구성하였고,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단결권만을 선택하여 핵심지표항목으로 삼았다.

사회적 권리란 사회적 기본권 혹은 생존권이라고도 불리며 그 내용이 비교적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권리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2조 이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건강의 권리 등의 형태로 반영되었다가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안경환, 2004: 64-65).

따라서 사회적 권리를 대학의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적용할 때 사회보장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권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보장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4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직원과 조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표항목 E15-1과 A15-1을 각각 구성하였다.

<표 6-11> 일반직원과 조교의 사회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직종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E15) (A15)	사회 보장권	적정 생활수준 유지	일반 직원	E15-1	4대 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의 일부 혹은 전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조교	A15-1	4대 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의 일부 혹은 전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업조교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5.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이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할 수 있다(안경환, 2004: 75).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5조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문화적 권리는 원래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뜻하였으나 차츰 사회의 일반구성원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로 그 의미가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서 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문화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문화의 창조 및 향유를 자유롭게 행할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안경환, 2004: 76).

<표 6-12> 일반직원의 문화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문화적 권리 (E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E16-1	지난 1년 동안 직원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이 무시된 것으로 인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문화생활 참여권	E16-2	근무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 실내체육관,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미술전시실 등) ①있다. ②없다.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E16-3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없다.
			E16-4	지난 1년 동안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E16-5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자유로이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표 6-13> 조교의 문화적 권리 지표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문화적 권리 (A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A16-1	지난 1년 동안 조교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이 무시된 것으로 인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문화생활 참여권	A16-2	근무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 실내체육관,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미술전시실 등) ①있다 ②없다.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A16-3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없다.
			A16-4	지난 1년 동안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A16-5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자유로이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3조에서 이 교육권에 대하여 훨씬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권이 인권과 시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5조는 과학적 활동, 문학적 활동, 예술적 활동을 모두 문화생활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1966년과 1976년에 각각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과 「문화생활에의 일반 대중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도 교육, 과학, 정보 등을 모두 폭넓게 문화적 권리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안경환, 2004: 75-76).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권리에는 문화를 자유로이 향유할 권리 및 문화생활 참여권과 교육권, 정보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일반직원과 조교의 문화적 권리를 확인하는 지표항목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문화의 자유로운 향유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년 동안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이 무시된 것으로 인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목 E16-1과 A16-1을 각각 구성하였으며, 문화생활 참여권과 관련하여

서는 근무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목 E16-2와 A16-2를 각각 구성하였다.

이어서 직원과 조교의 교육권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지표항목을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E16-3과 A16-3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E16-4와 A16-4이다.

끝으로 정보권과 관련하여서는 직원과 조교가 자신들의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자유로이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16-5와 A16-5를 각각 구성하였다.

6. 시민적 권리 : 법적 방어권

<표 6-14> 일반직원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II (E17)	법적 방어권	징계의 객관성	E17-1	징계(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구성? ①징계위원회가 있으며 직원의 징계시 다른 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②징계위원회가 있으나 직원의 징계시 다른 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③징계위원회가 없다.
		자기 변론권	E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①기회가 주어진다. 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적 구제권	E17-3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여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에 속하는 법절차적 권리로서의 법적 방어권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법적 방어권 개념을 대학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을 따른다면 학교당국에 의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중심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징

계과정에서 자기변론권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부당한 처벌로부터 구제받을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함으로써 법적 방어권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자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각각 항목 E17-1, E17-2, E17-3 과 A17-1, A17-2, A17-3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6-15> 조교의 시민적 권리 지표 : 법적 방어권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II (A17)	법적 방어권	징계의 객관성	A17-1	조교의 징계를 다루는 징계(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구성? ①징계위원회가 있다. ②징계위원회가 없다.
		자기 변론권	A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①기회가 주어진다. 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적 구제권	A17-3	조교가 이용할 수 있는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7.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이상과 같이 인권의 유형별로 지표항목을 구성한 결과 일반직원의 경우, 인간존엄권 관련 항목 15개, 시민적 권리 항목(법적 방어권 포함) 8개, 정치적 권리 항목 5개, 경제적 권리 항목 4개, 사회적 권리 항목 1개, 문화적 권리 항목 5개의 총 38개 항목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교의 경우에는 인간존엄권 항목 10개, 시민적 권리 항목(법적 방어권 포함) 11개, 정치적 권리 항목 5개, 경제적 권리 항목 4개, 사회적 권리 항목 1개, 문화적 권리 항목 5개의 총 36개 항목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일반직원과 조교의 인권지표 항목들은 뒤에서 소개될 대학의 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인권지표 항목들과 함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일반직원과 조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그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원과 조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도 포함하는 대학전체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목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대학인권 지표항목의 적정한 수를 30개로 잡을 때 직원과 조교에 직접 관련된 항목은 7개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목을 7개로 줄이는 중간단계에서 최종 항목수의

두 배인 14개로 일단 압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표항목 수를 세 단계로 구성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이들 세 가지 규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직원 38개 항목과 조교 36개 항목을 제2단계에서 총 14개 항목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항목과 조교의 인권지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능한 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인권유형별로 제1단계에서 구성된 항목수를 고려하여 제2단계에서는 인간존엄권 항목 4개, 시민적 권리 항목 3개, 정치적 권리 항목 2개, 사회경제적 권리 항목 3개, 문화적 권리 항목 2개의 총 14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제1단계에서 시민적 권리I과 시민적 권리II로 나누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시민적 권리로 통합하였다.

제2단계에서 항목을 압축시킬 때 주로 사용된 방법은 E21-1과 같이 일반직원의 지표 몇 개를 결합하여 일반직원뿐 아니라 조교에게도 적용하거나 혹은 E22-1처럼 조교의 지표 몇 개를 결합하여 조교에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E23-1처럼 일반직원의 지표와 조교의 지표를 결합하여 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지표항목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E24-2와 E24-3처럼 일반직원의 지표와 조교의 지표를 그대로 14개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끝으로 제3단계에서는 제2단계의 14개 지표항목들을 인권유형별로 절반으로 줄여 7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먼저 인간 존엄권 지표로서는,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31-1을 구성함으로써 일반직원과 조교의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31-2를 구성함으로써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민적 권리 지표로서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32-1을 구성함으로써 일반직원과 조교의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E32-2를 구성함으로써 대학의 일반직원과 조교에게 자기 변론권과 법적 구제권이 실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권리 지표로서는,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혹은 직원대표)과 조교들(혹은 조교대표)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33-1을 구성함으로써 참정권의 실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6-16> 일반직원 및 조교의 제3단계 7개 인권지표 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인간 존엄권 (E31)	평등권	E31-1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 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4+9
	인격권	E31-2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0~13
시민적 권리I (E32)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E32-1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2-4+5 + A12-7+8
	법적 방어권	E32-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자기변론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한다. ②자기변론 기회 제공과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존재한다. ③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E17-2+3
정치적 권리 (E33)	참정권	E33-1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혹은 직원대표)과 조교들(혹은 조교대표)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①직원과 조교가 참여할 수 있다. ②직원과 조교 가운데 한 편만 참여할 수 있다. ③직원과 조교 모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E13-5 + A13-5
경제 사회적 권리 (E34)	노동3권	E34-1	일반직원들과 전업조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가 가능한지? ①일반직원과 조교가 함께 혹은 각각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②일반직원이나 조교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참여할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않다. ③일반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E14-3 + A14-3
문화적 권리 (E35)	교육권	E35-1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이 일반직원과 조교 모두를 위해 있다. ②담당조직이 일반직원 혹은 조교 가운데 한 쪽만을 위해 있다. ③일반직원이나 조교 누구를 위해서도 담당조직이 없다.	E16-3 + A16-3

경제사회적 권리로서는, 일반직원들과 전업조교들이 노동조합을 결사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E34-1을 구성함으로써 노동3권 가운데서 특히 결사권의 실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적 권리 가운데서는 교육권과 관련하여,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E35-1을 구성하였다.

VII. 대학의 제도 및 운영과 인권

앞에서는 주로 대학 구성원 가운데 학생, 교수, 직원 및 조교라는 집단유형에 따른 인권 실현 혹은 침해 실태를 확인하는 지표항목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들 세 집단 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되거나 혹은 이 세 집단에 걸쳐 있는 소수자 집단에 관련된 인권 쟁점들도 많다. 이들 쟁점은 주로 대학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대학의 제도 및 운영이 인권에 친화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항목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규정, 기구, 재정/인력, 시설,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다섯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각 분야가 어느 정도 인권에 친화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인권지표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의 규정과 인권

대학의 학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은 대학운영의 기본적인 틀, 원칙, 그리고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규정이 인권에 친화적인가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신, 이를 위한 원칙, 혹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규정이나 지침의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대학인권의 실태와 전망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대학 학칙에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로 간주되어, 이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M11-1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대학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의 조항이 제정되는 것이 대학인권의 증진에 필요하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학칙상의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11-2, M11-3, M11-4를 구성하였다.

물론 소수집단이 아닌 일반 구성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늘날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수많은 개인 정보가 대학의 전산망에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산화된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유익하지만 외부인이 전산망에 침입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학 구성원이 여러 목적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항목 M11-5는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정보는 다른 형태로도 존재한다. 최근에 와서 대학 안팎에서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각종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한편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갖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 공간의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엄격히 관리할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지표항목 M11-6은 이러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표 7-1> 대학 규정 관련 인권지표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규정 (M11)	학칙의 인권 침해성	M11-1	학칙에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소수집단 인권보호	M11-2	여성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3	장애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4	외국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개인정보 보호	M11-5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6	대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실험실 내의 인권보호	M11-7	실험실 학생과 연구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차원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끝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험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지침도 필요하다. 실험실은 대학 공간 가운데서도 여러 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 공간이

다. 먼저는 자연과학 분야의 학생, 특히 대학원생이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좁은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 간의 혹은 학생과 교수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 유지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의 활동결과가 개인의 학업이나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실험실에 있는 학생, 실험조교, 교수 사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이 종종 발생하지만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덮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학교차원에서 실험실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지표항목 M11-7은 바로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2. 대학의 기구와 인권

대학의 각종 규정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인권보호 조치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구, 재정, 인력,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구로서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직접 실행하는 집행기구, 대학의 특수성에 따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학생자치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대학 바깥의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인권관련 상담기구도 인권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인권지표에는 이들 각각의 기구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집행기구로서는 인권부서 혹은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기구가 대학본부에 설치되어 있는지,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수집단인 외국인 학생 및 교직원을 각각 위한 지원기구와 또한 국제결혼자녀 학생을 위한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12-1에서 M12-6까지의 여섯 항목이 구성되었다.

연구기관으로는 대학에 인권연구기관, 여성연구기관, 그리고 다문화연구기관이 각각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M12-7, M12-8, 그리고 M12-9를 구성하였다. 인권연구기관은 인권문제 전반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여성연구기관과 다문화연구기관은 각각 대학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소수집단인 여성과 외국인 혹은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지표항목에 포함되었다.

<표 7-2> 대학 기구 관련 인권지표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기구 (M12)	집행기구	M12-1	대학본부에 인권부서 혹은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2	교직원을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①고충처리기구가 있다. ②고충처리기구가 없다.
		M12-3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①고충처리기구가 있다. ②고충처리기구가 없다.
		M12-4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없다.
		M12-5	외국인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없다.
		M12-6	국제결혼자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없다.
	연구기관	M12-7	인권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8	여성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9	다문화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교육기관	M12-10	인권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1	다문화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상담기구	M12-13	대학구성원이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구나 상담인력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4	대학바깥의 지역사회주민이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구나 상담인력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학생 자치기구	M12-15	학생자치기구에 인권위원회 같은 인권기구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6	학생들의 인권동아리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교육기관으로는 인권교육기관, 다문화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M12-10, M12-11, 그리고 M12-12를 각각 구성하였다. 물론 인권 교육 전반을 다루는 인권교육기관만 설치되어 있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교육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은 각각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출신 내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혹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한국생활에 가장 필요한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는 이들 교육기관의 설립 없이도 인권 관련 교육이 교양강좌나 전공강좌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교과과정과의 연관을 떠나서 인권교육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내의 다른 구성원인 교직원들과 대학 바깥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 대학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구와 대학바깥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전문 상담기구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들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M12-13과 M12-14를 각각 구성하여 지표안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역에 사무소를 갖고서 행하거나 아니면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없는 지역이 훨씬 많으며 있는 경우에도 여러 여건상 전문적인 상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인권 상담 기구가 설치되어 대학 안팎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권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인권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상담기관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 교육, 그리고 상담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함께 그러나 전문적으로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최대 다수 구성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특별히 중요하다. 비록 공식적인 인권기구가 대학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치기구 안에 공식적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대학생들 사이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권문화 전반의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학생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치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 다양한 목표와 형태를 갖춘 인권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활동한다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으는데 유익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구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활동할 때 대학의 공식적인 인권기구나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인권문화 발전에 여러모로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공식적인 자치기구에 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동아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항목 M12-15와 M12-16을 각각 구성하였다.

3. 대학의 재정 및 인력과 인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특별히 인권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과 또한 인권에 관련하여 확보한 인력도 대학에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대학 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대학기구의 설치에 어느 정도 재정과 인력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학기구가 최소의 재정과 인력으로써 겨우 유지되거나 혹은 대학 바깥의 재정과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후자는 오늘날의 대학들이 대학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방안이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에서 인권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이 기본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인권과 가능하다면 이에 덧붙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과 인력은 각 대학의 구성원과 특히 대학 관리자들이 인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를 비교적 쉽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재정과 관련해서는 대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 인권의 집행, 연구, 교육, 상담 등 “인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인권관련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M13-1과 전체 인권관련 기구의 예산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항목 M13-2가 포함되었다. 대학에 공식적인 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권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테지만, 공식적인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권 관련 사업과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권기구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인권관련 예산항목의 존재 여부는 인권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항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인권에 대해 각 대학이 기울이는 관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

다. 그래서 이 관심의 크기를 재정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 및 교직원 100명당 인권 관련 기구에 배정된 총예산 규모를 확인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인권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인권분야를 전공하는 교수가 없이는 대학의 다양한 인권기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의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먼저 인권분야 업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대학 안팎의 각종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권업무에 능통한 직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M13-3은 대학에 인권분야를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M13-4는 위에서 다루어진 대학의 인권기구들, 즉 인권의 집행, 연구,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공식기구에 상근하는 직원과 이들 기구가 없더라도 인권의 집행, 연구, 교육, 혹은 상담 활동을 전담하는 상근직원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7-3> 대학의 재정 및 인력 관련 인권지표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재정 및 인력 (M13)	재정	M13-1	대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인권관련 예산항목이 들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3-2	학생 및 교직원 100명당 인권관련 기구*에 배정된 총예산은? (*인권의 집행, 연구, 교육, 상담 기구와 학생자치기구의 인권 하위기구, 인권동아리를 모두 포함한다.) ①없다 ②1,000원미만 ③1,000원-5,000원미만 ④5,000원-10,000원미만 ⑤10,000원이상
	교수	M13-3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명-1명미만 ④1명-2명미만 ⑤2명이상
	직원	M13-4	대학의 공식적인 인권기구에 상근하는 직원이나 혹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의 수는 직원 100명당 얼마나 되는지? (인권기구는 각종 인권 관련 기구 모두를 포함하며 직원에는 전업조교도 포함됨) ①없다 ②1명미만 ③1명-3명미만 ④3명-5명미만 ⑤5명이상

4. 대학의 시설과 인권

대학 캠퍼스는 수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공간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공간과 시설도 대학의 인권친화성을 측정하는 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공간과 시설 가운데에는 인권 침해적인 것들도 있는 반면에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간과 시설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등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큰 자원을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관심 혹은 인권감수성이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도 예컨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공간 접근성이나 시설 편의성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시설기준이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대학에서도 이러한 시설기준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한 모든 시설기준을 법제화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갖추어진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인권친화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학의 인권친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시설 가운데서는 한 가지 항목만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사회적 약자 집단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시설 항목들을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의 일반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 여기서 한 가지만 항목으로 선택한 것은 앞의 학생 인권 편, 교수 인권 편, 그리고 직원 및 조교 인권 편에서 다루어진 시설들을 여기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반 시설로는 여기서 독립된 인권전문 서가를 덧붙였다. 대학 도서관의 장서 가운데서 특별히 인권관련 자료를 모아 독립된 인권전문 서가를 설치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는 전체 대학 구성원이 인권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당국에서는 독립된 인권서가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인권관련 자료를 확충하는데 혹은 이벤트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인권자료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팀은 도서관에 독립된 인권서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 M14-1을 구성하여 시설 관련 인권지표에 포함시켰다.

대학 내의 사회적 약자 집단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공간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여성을 위한 시설 가운데서는 노동권, 휴식권,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된 시설들이 하나씩 선택되었다. 노동권과 관련된 시설로는 여성 교직원의 직장생활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이 대학에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항목 M14-2를 구성하였으며, 휴식권과 관련된 시설로는 신체적인 이유로 남성과 달리 여학생과 직원에게 더욱 필요한 전용 휴식공간이 각각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 공간에 비치된 침상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항목 M14-3 및 M14-5와 M14-4 및 M14-6을 구성하였다. 건강권과 관련된 시설로는 남성 화장실을 남성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에 비하여 여성 화장실을 여성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가 매우 적은 불균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 M14-7을 구성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운데서는 특히 장애인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주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이 아닌 승강기를 통해 학교 건물의 각 층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시각 장애인이 보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점자판과 같은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항목 M14-8, M14-9, 그리고 M14-10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신체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휴식권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14-11과 M14-12를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통학을 하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기숙사 입사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생들, 특히 시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권과 정보권을 각각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숙사 입사에 우선권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M14-13과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 M14-14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다양하지만 이들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외국인 학생 기구를 위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면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함으로써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함께 노력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용도 외에도 이들은 이 공간을 자신들 사이의 교류, 소통, 그리고 문화 활동 등에 활용함으로써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데 필요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부 시설들을 갖출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학생기구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외국인 학생의 인권 증진 여건을 판단하는데 비교적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확인

하는 항목 M14-15를 구성하여 대학시설 관련 인권지표에 포함시켰다.

<표 7-4> 대학 시설 관련 인권지표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설 (M14)	도서	M14-1	도서관에 독립된 인권전문 서가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여성을 위한 시설	M14-2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M14-3	여학생 전용 휴식공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4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는 여학생 100명당 몇 개 인가? ①없다 ②0.5개미만 ③0.5개-1개미만 ④1개-2개미만 ⑤2개이상
		M14-5	여직원 전용 휴식공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6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는 여직원 100명당 몇 개 인가? ①없다 ②0.5개미만 ③0.5개-1개미만 ④1개-2개미만 ⑤2개이상
		M14-7	남성 화장실 소변기 및 변기 100개 당 여성 화장실 변기의 개수는? ①25개미만 ②25개-50개미만 ③50개-75개미만 ④75개-100개미만 ⑤100개이상
		장애인 시설 및 홈페이지	M14-8
	M14-9		2층 이상 4층 이하 건물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비율은? ①없다 ②25%미만 ③25%-50%미만 ④50%-75%미만 ⑤75%이상
	M14-10		보행시 안내 점자판 등 시각 장애인 지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11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1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비율은? ①없다 ②25%미만 ③25%-50%미만 ④50%-75%미만 ⑤75%이상
	M14-13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제공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M14-14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외국인 학생공간	M14-15	외국인 학생 기구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5. 대학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대학의 기구, 재정, 인력, 시설 등이 대학인권 문화를 파악하는데 사용된 경성 자료에 해당된다면, 대학의 인권증진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연성자료에 해당된다. 본 연구팀은 대학의 인권 문화 실태를 적절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권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인권증진 계획안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그리고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것이다.

먼저, 인권교육은 연성 인권지표의 핵심요소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포괄한다.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강좌가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인권관련 강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모두 개설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한 가지 형태로만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 M15-1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목 M15-2를 구성하였다.

다문화교육과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은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력과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이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인권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은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인권 지표는 다문화교육과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을 인권관련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이들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 M15-3과 M15-4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항목 M15-3은 확인대상 프로그램을 특별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교육 강좌에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을 위해 다문화교육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증진 계획안은 교육프로그램과 달리 인권증진을 위한 일종의 대학운영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대학 당국이 인권증진 계획안을 수립해 있다는 것은 그 계획안의 실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그 대학이 인권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각 대학이 각자의 형편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인권증진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여러 형태로 힘을 실어준다면, 설사 대학의 인권문화 현실은 여러 면에서 크게 미흡하더라도 장래의 대학

인권문화 전망은 밝을 것이다. 이처럼 대학이 독자적인 인권증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인권 문화 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학인권지표의 마지막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M15-5의 형태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물론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인권지표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 7-5> 대학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관련 인권지표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권 증진 프로 그램 (M15)	인권교육	M15-1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인권관련 강좌는? ①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모두 있다. ②교양과목 혹은 전공과목 가운데 한 가지 형태로만 있다. ③전혀 없다.
		M15-2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①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②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③없다.
	다문화 교육	M15-3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M15-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혹은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①제공된다. ②제공되지 않는다.
	인권증진 계획안	M15-5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6. 지표항목의 단계별 축소

이상과 같이 대학인권 지표의 제도 및 운영 편을 규정, 기구, 재정/인력, 시설, 그리고 인권 증진 프로그램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항목을 구성한 결과 제1단계에서 모두 47개의 항목이 만들어졌다. 이를 각 영역별로 보면, 규정 관련 항목이 7개, 기구 관련 항목이 16개, 재정 및 인력 관련 항목이 4개, 시설 관련 항목이 15개, 그리고 인권증진 프로그램 관련 항목이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적으로 제도 및 운영 편의 지표항목을 모두 47개 가운데서 6개로 압축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단 중간단계인 제2단계에서는 이들을 12개로 압축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제1단계에서 구성된 지표항목이 영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만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2단계에서는 다섯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항목수를 분배하였다. 그런데 제1단계에서 기구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를 더 추가하였다. 그리고 시설 관련 항목이 두 번째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들을 확인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을 여학생과 여직원에게 분리하여 확인하는 항목들도 포함된 결과로 항목수가 많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서 세 번째로 많은 규정 관련 항목들은 비록 소수자 집단 관련 항목도 하나씩 포함하고 있지만 대학의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들도 여럿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 항목을 더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제2단계에서는 규정 관련 항목 3개, 기구 관련 항목 3개, 재정 및 인력 관련 항목 2개, 시설 관련 항목 2개, 그리고 인권증진 프로그램 관련 항목 2개의 총 12개의 항목으로 압축시켰으며, 최종적인 제3단계에서는 이를 다시 반으로 줄여서 규정 항목 1개, 기구 항목 2개, 재정 및 인력 항목 1개, 시설 항목 1개, 그리고 인권증진 프로그램 항목 1개의 총 6개로 압축시켰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6개의 인권지표는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대학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대학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존 학칙의 조항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M31-1을 구성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을 위한 인권보호 규정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인권지표의 하나로 삼았다. 이 항목은 이전 단계의 유사한 항목들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

대학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에 인권부서나 인권위원회 같은 인권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M32-1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인권 연구 및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M32-2이다. 전자는 제2단계의 두 항목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후자는 제1단계의 두 항목을 제2단계에서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대학본부와 학생들이 각각 공식적인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교수들이 전문적인 인권연구기관과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대학의 인권문화 발전에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재정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인권관련 기구가 대학에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인권관련 예산도 자연스럽게 배정되므로, 여기서는 재정 대신에 인력 관련 항목을 최종 지표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인력 가운데서는 상근직원보다 인권 전

문가 교수의 확보 여부와 규모가 더욱 선결과제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인권 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 M33-1을 구성함으로써 인권분야 전공교수의 확보 정도를 가장 중요한 인권지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 항목은 제1단계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표 7-6>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제3단계 6개 인권지표 항목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규정 (M31)	인권보호 규정	M31-1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①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한다. ②기존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들어 있다. ③전혀 없다.	M11-1~4
기구 (M32)	집행기구 및 학생자치 기구	M32-1	대학본부 및 학생자치기구에 인권부서,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 하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모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②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③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인권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12-1+14
	연구 및 교육기관	M32-2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인권 연구와 교육을 모두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②인권 연구나 교육 가운데 한 가지만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③인권 연구와 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	M12-7+9
채정 및 인력 (M33)	교수	M33-1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명-1명미만 ④1명-2명미만 ⑤2명이상	M13-3
시설 (M34)	여성을 위한 시설	M34-1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M14-2
인권증진 프로그램 (M35)	인권증진 계획안	M35-1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5-5

대학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위한 시설을 최종적인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제1단계에서

구성된 15개 시설 항목이 제2단계에서는 여성을 위한 시설 항목 한 개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 항목 한 개의 총 두 개로 압축되었으나, 제3단계에서는 대학 구성원 가운데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M34-1을 최종적인 지표항목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항목도 제1단계에서 구성되어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 그대로 채택되었다.

끝으로 인권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M35-1을 최종적인 인권지표로 채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지표항목으로 네 개나 구성되었고 제2단계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인권증진 계획안과 함께 지표항목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는 인권교육기관의 존재 여부나 인권분야 전공교수의 확보 정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항목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우면서도 대학 인권문화의 발전에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인권증진 계획안이 대학차원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인권지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 항목 역시 앞의 두 항목과 마찬가지로 제1단계에서 구성된 형태 그대로 제2단계에 이어 제3단계에서도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VIII. 대학종합평가 지표와 인권지수

1. 대학종합평가 지표와 대학 인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82년 출범과 함께 대학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학평가 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인데, 종합평가의 주요 목적은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등에 있다고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a: 2-3). 그런데 평가의 결과가 대학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더구나 대학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할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대학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내용이 대학종합평가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종합평가 지표에 인권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학 인권 상황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종합평가의 학부 평가는 6개 영역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그 영역을 나열해 보면, 1) 대학경영 및 재정 영역, 2) 발전전략 및 비전 영역, 3)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4) 연구 및 산학연 협동 영역, 5)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 6)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이다. 이 6개 영역 중에서 인권 관련 지표는 5)와 6) 2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2개 영역을 중심으로 대학 인권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

이 영역은 대학의 세 주체를 다루고 있다. 우선, 학생에 관한 지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학생자치활동·교육과정·실험실습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졸업생 취업률이나 평판도 등을 지표화한 것들인데 인권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교수 및 직원에 관한 지표 중에는 인권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표 8-1>과 같다.

<표 8-1> 대학종합평가 인권 관련 지표 : 학생 및 직원·교수 영역

구 분	평가 지표	평가 내용
5.2.1.4	전임교수의 인사제도 및 운영실태는 합리적인가?	교수채용·승진 제도 및 절차의 합리성과 엄정성, 교수평가 기준의 합리성 등
5.2.2.1	전임교수당 주당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주당 9시간 미만 ~ 12시간 이상 (일반대)
5.2.2.3	전임교수를 위한 후생복지는 적절한가?	보수 수준, 후생복지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후생복지 만족도
5.2.3.1	최근 3년간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우수한가?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내용, 수준, 참가자 수
5.2.3.3	대학의 연구년제 운영은 적절한가?	연구년제 참여 실적 중심으로 평가
5.2.4.1	시간강사 의존율은 어느 정도인가?	35% 미만 ~ 40% 이상
5.2.4.2	대학의 시간강사 관리 및 처우는 적절한가?	시간당 강사료 중심으로 평가하되, 임명 절차와 연구실(휴게실) 현황 등을 고려
5.2.4.4	대학의 조교관리 및 처우는 적절한가?	조교의 자격요건, 근무관리의 합리성, 각종 복지 지원, 보수수준의 적절성 등
5.3.1.2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활용은 적절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유형, 비정규직 활용 현황 등
5.3.1.3	직원인사의 제도 및 운용은 합리적인가?	채용 및 승진 제도 및 절차의 합리성, 엄정성 등
5.3.1.4	직원 업무평가 제도와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업무평가 목적, 내용, 절차, 결과 활용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
5.3.2.3	노사간의 갈등관리 체제는 적절한가?	갈등조정 관리체제의 유무, 인적 구성, 운영내용 및 실적,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등
5.3.2.4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적절한가?	보수 수준, 후생복지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후생복지 만족도
5.3.3.1	최근 3년간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실적?	연간 연수실적(연수 참여율) 중심으로 평가
5.3.3.2	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체제는 적절한가?	업무담당 조직, 업무 정착 정도, 행·재정적 지원, 연간 사업계획 등.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표 8-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종합평가 지표 중에는 교수와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개발한 지표와 유사한 지표도 있었고 다소 성격이 다른 인권 관련 지표도 있었다. 지표 개발의 목적이 다르기에 빚어진 당연한 결과이다.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평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표 구분번호 5.2.1.4를 보면 전임교수의 인사제도와 운영실태가 합리적인지 묻고 있는데 그 지표의 평가내용으로는 제도와 절차의 합리성과 엄정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의 합리성·엄정성은 물론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기준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구체화된 기준의 하나로 채용, 승진, 교수평가 관련 규정에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의 차별금지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출신지, 정치적 성향,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의미한다. 이 점은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지표인 구분번호 5.3.1.3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평가 내용이 교수집단의 경우와 동일한데 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대학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평등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는 별도의 하위 법들에 의해 2중, 3중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규에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분번호 5.2.4.2에서는 시간강사의 관리 및 처우의 적절성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 평가내용으로는 시간당 강사료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이 지표 역시 인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중한 지표이다. 그런데 강사료 인상이 처우 개선에 핵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덧붙여 방학 중 강사료 분할 지급 제도의 존재 여부와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보장 여부를 평가내용으로 포함시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교원 지위의 회복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물론 정당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강사료 현실화와 더불어 방학중 강사료 지급과 보험 보장의 문제이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장 문제는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대학 측에 압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보장을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2)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이 영역에서는 학생지원체제, 교육지원체제, 연구지원체제, 정보지원체제 등 총 네 가지 지원체제에 관한 지표가 다뤄지고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지표는 주로 학생 인권과 관계되는 항목이었다. <표 8-2>에 인권 관련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

소개된 지표들 중 첫 번째 지표는 본래 제3영역인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에 포함된 지표였으나 교육 관련 지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제6영역의 지표들과 함께 제시했다.

<표 8-2> 대학종합평가 인권 관련 지표 :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구 분	평가 지표	평가 내용
3.2.1.2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적절한가?	교양교육과정 편성비율의 적절성,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6.1.1.1	최근 3년간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외 장학금 총액의 비율은?	2.5% 미만 ~ 10.0% 이상
6.1.1.2	최근 3년간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15% 미만 ~ 30% 이상
6.1.2.1	학생 편의·복지시설은 양호한가?	종류, 관리 및 운영상태 등
6.2.1.1	대학의 강의실 여건과 활용 실태는 양호한가?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중심
6.2.2.2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의 관리 및 활용상태는 양호한가?	기자재목록 및 사용일지 관리, 유지·보수체계, 청결상태,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등
6.4.1.1	재학생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수는 어느 정도인가?	1인당 35점 미만 ~ 65점 이상
6.4.1.2	최근 3년간 구입한 도서의 질(구입단가)은 어느 정도인가?	권당 10,200원 미만 ~ 16,900원 이상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b

구분번호 3.2.1.2는 교양교과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표이다. <표 8-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양교과 편성과 운영의 세부 평가내용으로는 교양교과 편성비율의 적절성, 인성 교육과 전공 기초 교육으로서의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양과목은 인성교육과 전공기초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갖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점을 평가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적절할 텐데, 구체화의 방법으로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몇 개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강력한 후보 과목으로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깨달음은 인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과목으로는 환경보호, 휴머니즘, 동양사상, 소통과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삼은 교과목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

학생 및 교육 지원시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편의·복지 시설(6.1.2.1)이나 강의실 여건(6.2.1.1)에 대한 지표는 있지만 장애인 시설에 관한 지표는 생략되어 있다. 장애인은 수적으로 볼 때 극소수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 - 최다(最多)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다. 장애인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며 소수자는 배려 받아 마땅하다는 보편적 인권 가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대학 구내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공간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 전용 화장실, 보행시 안내 점자판,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등 여러 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 시설의 설치 여부나 정도를 구분번호 6.1.2.1 혹은 6.2.1.1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지표로 독립시킨다면 장애인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학종합평가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과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지표들 중에서 대학 인권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평가를 하는 기관은 대교협과 중앙일보(2009) 두 군데인데, 영향력 면에서는 대교협의 평가가 압도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학종합평가의 결과는 해당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모나 자율화 허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학종합평가에 인권친화적 지표가 가급적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 마련일 텐데 대학종합평가가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인권지수

앞 장(제IV장- 제VII장)에서 대학 인권을 학생, 교수, 직원, 제도 및 운영 네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별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인권지표의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 대학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치(composite measure), 혹은 개별 대학의 범주별·인권유형별 종합 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진은 대학 인권지수(Index of Human Rights in University) 개발에 착수하였다¹²⁾.

12) 지수나 척도 개발의 제1원칙은, 만일 믿을 만하면서도 이용 가능한 지수나 척도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한다(Miller, 1991: 174). 본 연구진이 대학 인권지수 개발에 착수하게 된 까닭은 물론 대학 인권지수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수 개발 작업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받기 쉽다는 약점은 있지만 동시에 도전적이

지수(index)란 종종 척도(scale)와 혼용되는데, 그것은 상대적 혹은 절대적 측정치일 수도 있고 단일의 혹은 2개 이상 지표의 측정치일 수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측정치를 뜻한다 (Miller, 1991: 174). 지수와 척도를 구분할 경우 척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지표들 간에 일정한 서열을 갖출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김경동, 1996: 349). 대부분의 경우 지수는 단일의 지표보다는 복수의 지표들을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측정치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위광·학력·수입 세 지표를 통합한 던칸(O. D. Duncan)의 사회경제적 지수나 시쇼(S. E. Seashore)의 집단응집성 지수 등이 사회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종합지수(composite index)의 예이다 (Miller, 1991: Part 6 참조).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종합지수를 개발해 대학들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평가·비교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시할 것이다.

대학 인권지수는 제3단계 인권지표 30개 항목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다. 가장 흔하고 간편한 지수 구성 방식은 문항별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가중치에 대한 고려 없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수로 삼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30개 지표 항목의 척도가 2점, 3점, 4점, 5점 척도 등으로 다양하여 그 값들을 단순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척도를 비교 가능하도록 일정한 표준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준화의 한 방식은 어떤 지표항목의 점수가 그 항목의 평균 점수로부터 몇 단위의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치인 표준점수(Z-score: $(\text{점수} - \text{평균값}) \div \text{표준편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각 지표항목들의 표준점수의 합을 지표항목 수로 나누어 그것을 인권 지수로 삼을 수 있다. 이 방식은 구정우·공석기·정진성(Koo et. al., 2009)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1990 - 2007년 기간 중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는데, 각 인권지표 항목의 표준점수(각 항목의 관찰기간 중 평균값 기준)의 합산 점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값을 인권지수로 삼았다. 이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얻어진 지수를 가지고 특정 시점의 인권 상황이 기준 년도로부터 얼마나 개선되거나 혹은 악화되었는지 평가하였다.

표준화의 다른 한 방식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홀링스헤드와 레드리치(Hollingshead & Redlich)의 사회적 지위 지수(Index of Social Position)를 그 예로 들 수 있다(홍두승, 1994: 159-161 참조). 사회적 지위 지수는 응답자의 거주지, 가구주 직업, 가구주 학력 세 지표항목으로 구성된 종합 지수인데 세 항목의 척도가 제각각 달랐다. 이들은 응답자의 계급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을 종속변수로 삼고 거주지 등 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삼았다. 그리하여 각 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 값들을 합산하여 각 응답자의 사회적 지위 지수 점수를 측정했다.

고 흥미로운 작업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인권지수 개발 작업은 당연히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우리의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30개 인권지표 항목을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종속변수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점수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이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표준점수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평균값은 각 지표항목의 대학별 점수들의 평균값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30개 인권지표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각 대학별 지수 값을 구하고 그 지수를 통해 각 대학의 인권상황이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표준화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하기 다소 불편한 점이 단점이다.

우리는 상이한 척도의 지표 항목들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모든 지표 항목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각 지표의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선택지의 점수를 재 부호화(recoding)하는 방식이다. 각 지표별로 100점은 인권상황이 가장 양호한 상태이고 0점은 가장 열악한 상태를 의미하도록 하고 급간(interval)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재 부호화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각 지표의 선택지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의 가정을 하는 셈이다.

2점 척도:	0점(인권열악)			100점(인권양호)	
3점 척도:	0점	50점		100점	
4점 척도:	0점	33점	67점	100점	
5점 척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각 지표항목의 최고점을 100점, 최저점을 0점으로 하면 3단계 30개 지표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가 0점에서 3000점까지 분포될 것이다. 한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수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김병연 외, 2009: 21 참조). 즉, 총 합계점수를 300으로 나누어 지수 최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수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인권지수 IHRU} = \sum_{i=1}^{30} (IS_i) / 300$$

$$(0 \leq IS_i \leq 100, \quad i = 1, 2, \dots, 30)$$

대학 인권지수는 개별 대학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3단계 30개 지표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권지수를 각 범주별(학생, 교수, 직원, 제도/운영) 혹은 인권유형별(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지표항목별 선택지 점수를 재 부호화(recoding)한 점수들의 표가 <표 8-3>에 제시되어 있다. 어느 대학에 대한 조사의 첫 번째 문항(S31-1)을 예로 든다면, 만일 그 대학의 학생 선발이나 학생활동에 관한 대학규정에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다면 선택지 ‘① 있다’에 √ 표시를 할 텐데 그 값을 <표 8-3>에 의거하여 100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30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구하여 합산한 후 그 총 점수를 300으로 나누면 그 점수가 해당 대학의 인권지수 점수가 된다.

대학 인권지수는 특정 시점에서의 각 대학 간 인권상황 비교·평가를 통해 보다 인권 친화적 대학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만, 조사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 인권상황의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 보다 폭넓은 비교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3> 30개 지표항목 선택지 점수의 재 부호화

지표체계 분류	인권유형/ 중(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학생 인권 편	인간 존엄권/ 평등권	S31-1	학생 선발 및 학생 활동 관련, 차별 금지 규정 여부 ①100 ②0
	인간 존엄권/ 인격권	S31-2	폭력·성폭력 신고기구, 법률지원·대외협력 체계 존재 여부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시민적 권리/ 법적 방어권	S32-1	피의자 소명과 재심 요청 기회 ①0 ②33 ③67 ④100
	시민적 권리/ 사생활 보호권	S32-2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①100 ②75 ③50 ④25 ⑤0
	시민적 권리/ 종교 자유권	S32-3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활동 강제성 ①0 ②100
	정치적 권리/ 집회결사 자유권	S33-1	정치단체 참여 제한 규정 ①0 ②100
		S33-2	동아리 설립과 활동 제한 규정 ①0 ②100
	정치적 권리/ 의사결정 참여권	S33-3	대학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경제적 권리/ 노동권	S34-1	근로학생 최저임금과 보상지급 규정 ①0 ②33 ③67 ④100
사회적 권리/ 인권 교육권	S35-1	인권 및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개설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교수 인권 편	인간 존엄권/ 평등권	P31-1	여교수 비율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인간 존엄권/ 인격권	P31-2	언어적, 신체적 폭력 여부* ①0 ②100
	시민적 권리/ 법적방어권	P32-1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100 ②0
	정치적 권리/ 언론출판 자유권	P33-1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승진누락이나 중징계 여부* ①0 ②100
	경제적 권리/ 노동권	P34-1	연구·교육·학생지도 이외 항목의 배점 비율 ①100 ②75 ③50 ④25 ⑤0
		P34-2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권	P35-1	시간강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100 ②0

지표체계 분류	인권유형/ 중(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직원/ 조교 인권 편	인간 존엄권/ 평등권	E31-1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 여부* ①0 ②100
	인간 존엄권/ 인격권	E31-2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 여부* ①0 ②100
	시민적 권리/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E32-1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억압이나 강요 여부* ①0 ②100
	시민적 권리/ 법적 방어권	E32-2	징계절차 중 자기변론 기회와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 ①100 ②50 ③0
	정치적 권리/ 참정권	E33-1	총장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과 조교 참여 여부 ①100 ②50 ③0
	경제사회적 권리/ 노동3권	E34-1	직원과 조교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 ①100 ②50 ③0
	문화적 권리/ 교육권	E35-1	직원과 조교의 교육·훈련 담당조직 존재 여부 ①100 ②50 ③0
제도/ 운영 편	인권규정/ 인권보호규정	M31-1	인권보호 위한 독립된 규정이나 지침 존재 여부 ①100 ②50 ③0
	인권기구/ 집행기구 및 학생자치기구	M32-1	대학본부 및 학생자치기구에 인권 하위기구의 존재 여부 ①100 ②50 ③0
	인권기구/ 연구 및 교육기관	M32-2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 존재 여부 ①100 ②50 ③0
	인권자원/ 교수	M33-1	인권분야 전공 교수 수 ①0 ②25 ③50 ④75 ⑤100
	인권시설/ 여성용 시설	M34-1	교직원 자녀 위한 직장보육시설 ①100 ②0
	인권증진프로그램/ 인권증진 계획안	M35-1	인권증진 계획안 존재 여부 ①100 ②0

* 이 다섯 가지 지표는 교수, 직원, 조교 단체 임원이나 개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다.

IX. 맺음말

다니엘 벨(D. Bell)은 기업, 특히 제조업체가 산업사회의 중심 조직이었다면 지식사회에서는 대학이 그와 같은 위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벨의 이러한 지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대학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회적 비중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 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대학의 이러한 높은 사회적 위상에 비해 실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대학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리고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 대학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미래학자들 가운데는 지식의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어 대학의 경쟁력이나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의 역할이 경제적인 역할에 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신과 가치를 마련하여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내면화한 사회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사회,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인권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의 보편적 규범으로 가장 널리 그리고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인권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에 속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권문화의 요소들을 제공하고 인권문화에 더욱 친숙한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필두로 대학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대학의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권문화의 발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껏 대학 인권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매우 짧은 탓에 본 연구팀이 모든 지표항목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구결과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본 연구팀은 이 연구가 선구적인 연구로서 결코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대학문화의 많은 요소

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과 대학 종합 평가들의 개선에 대학 인권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의 인권문화나 인권지표에 대한 완성도 높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인권지표의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이루어진다면 대학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문화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http://www.unesco.or.kr/hrtreaty/>
- 「고등교육법」. 로앤비. <http://www.lawnb.com/>
- 「고등교육법시행령」. 로앤비. <http://www.lawnb.com/>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로앤비. <http://www.lawnb.com/>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로앤비. <http://www.lawnb.com/>
- 「대한민국헌법」. 로앤비. <http://www.lawnb.com/>
- 「사립학교법」. 로앤비. <http://www.lawnb.com/>
- 「세계인권선언」. 1948. <http://www.unesco.or.kr/hrtreaty/>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http://www.unesco.or.kr/hrtreaty/>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로앤비. <http://www.lawnb.com/>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로앤비. <http://www.lawnb.com/>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로앤비. <http://www.lawnb.com/>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로앤비. <http://www.lawnb.com/>
-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 <한국대학신문>. <http://unn.net/>
- 강현철·이주일. 2004.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2008. 『대학 시간강사 기본현황(통계) 분석 보고』. 2008.9.11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 2006. 『국·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운영지침 및 평가계획 (안)』. 2006.3
- 국가인권위원회. 2004.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검토 결정문”. 2004. 6. 2.
- 국회사무처. 2008. 『제279회 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제2호』.
- 길은배·이용교·김영지. 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1-R42.
- 김경동·이은숙. 1996. 『사회조사연구방법』 (중판). 박영사.
- 김계현·김은경·신상숙·박정미·김보명 (편). 2005.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연구』. 학지사.

-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2009.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재기. 2006. 『공무원과 노동인권』 한국학술정보.
- 김중섭. 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김중섭 (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 연구』. 도서출판 오름. 15-48쪽.
- 김중섭. 2004.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과 인권 증진.” 김중섭, 토모나가 겐조 (편). 『세계화와 인권 발전』. 도서출판 오름. 159-189쪽.
- 김중섭. 2006. “지역 공동체와 인권: 인권 실행의 증진 방안을 찾아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권 4호. 131-153쪽.
- 박인우. 2008.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센터.
- 송기춘. 2006. “시민적·정치적 권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2006. 『인권법』. 아카넷.
- 송병춘. 2008. “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20회. <프레스리안> 2008. 12. 30. <http://www.pressian.com/>
- 안경환. 2004.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도서출판 오름.
- 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 200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이창수 외. 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2006. 『인권법』. 아카넷.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2005. “공공부문 근로자와 ILO 노동기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정인섭 (편역). 2000.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2009. “2009 대학평가 지표와 설명.” http://support.kfpp.or.kr/menu/u02/sub_01.asp?VA_Page=1&SM=02&sBrdID=2408.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6-R05.
- 통계청. 2008. 『200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a. 『2006 대학 종합평가 편람』. 자료 RM 제2006-7-300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b. 『2006년도 대학 종합평가의 평가기준』. 자료 RM 제2006-9-302호.

- 한상희. 200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2006. 『인권법』. 아카넷.
- 홍두승. 1994. 『사회조사분석』 (제2판). 다산출판사.
- Buergenthal, Thomas. 1997.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9. pp. 703-723.
- Donnelly, Jack.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vans, Tony (ed.). 1998. *Human Rights Fifty Years on: A Reappraisal*.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reeman, Michael. 1994.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pp. 491-514.
- Koo, Jeong-Woo, Sukki Kong, Chin-Sung Chung. 2009.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s."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and the Social: Making a New Knowledg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nd, Kenneth C. 1992. "Social Indicators." E. F. Borgatta & M. L. Borgatta (ed.). *Encyclopedia of Sociology*. Vol. 4.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 1844-1850.
- Miller, Delbert C. 1991.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5th edi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Robertson, A. H. & J. G. Merrills. 1996. *Human Rights in the World* (4th).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학생의 인권지표 (제1단계 : 138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평등권	차별 규정	S11-1	학생 선발(신입, 편입) 규정에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	학생자치기구 규정에 차별(인종, 연령, 국적, 지역, 신체조건 등) 조항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	학생자치기구 규정에 성차별 조항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차별 실태	S11-4	교육 과정(수강 과목 신청)에 차별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5	장학금 수혜자 선발이나 기숙사 입사 선정에 차별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6	학생회 구성에 양성 평등 참여 기회 여부 ①있다 ②없다
	인격권	폭력	S11-7	1년간 학생 1,000명당 교내 폭력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8	폭력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9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0	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S11-11	1년간 여학생 1,000명당 교내 성폭력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12	성폭력 경험(성적 수치심 야기 등 성희롱 포함)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13	성폭력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4	성폭력 신고기구 상근자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15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6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시설(예: 성폭력 상담소 등)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S11)	안전권	범죄	S11-18	1년간 학생 1,000명당 교내 범죄 건수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19	범죄 신고기구 운영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0	범죄 신고기구 상근자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21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2	범죄 피해자 상담 시설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1-23	범죄 피해자 지원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4	교내 긴급 구호 전화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5	교내 순찰 실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안전사고	S11-26	1년간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비율 [평가척도] ①1건미만 ②1건-5건미만 ③5건-10건미만 ④10건-30건미만 ⑤30건이상
			S11-27	안전사고 시 교내 응급 처치 시설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8	안전사고 처리 및 후속 조치 체계(예: 비상 연락망, 응급후송)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29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0	안전 교육 이행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1-31	1년당 시설물의 안전 점검 회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회-3회 ③4회-6회 ④7회-9회 ⑤10회이상
			시민적 권리 (S12)	법적 방어권
S12-2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3	징계 대상자의 재심 요청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사생활 보호권	다기능 학생증	S12-4		다기능 학생증(일명 스마트 카드) 도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기숙사 생활	S12-5		기숙사 출입 시간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S12-6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대미만 ③1대-3대미만 ④3대-5대미만 ⑤5대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S12)	학문 자유권	검열	S12-7	학교 규정상 출판 검열 규정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8	학회 발표 등 학문 활동의 사전 허가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징계	S12-9	지난 1년간 학문 자유 관련 징계 사례 [평가척도] ①없다 ②5건이하 ③6건-10건 ④11건-20건 ⑤21건이상
	종교 자유권	종교활동	S12-10	학교 규정에 종교 자유 제한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2-11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활동 강제성 부여 여부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S13)	언론출판 자유권	신문	S13-1	1년간 대학 신문 발간 횟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5회이하 ③6회-12회 ④13회-24회 ⑤25회이상
			S13-2	학생 100명당 1년 동안 대학 신문에 발표 참여기회 [평가척도] ①없다 ②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S13-3	대학신문 제작 이전의 검열 제도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방송	S13-4	한 달간 대학 방송(TV, 라디오) 방영 시간 [평가척도] ①없다 ②30시간미만 ③30시간-60시간미만 ④60시간-90시간미만 ⑤90시간이상
			S13-5	대학 방송 대본에 대한 교직원의 사전 검열제도 실시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6	대학 방송 제작의 학생 참여 여부 ①한다 ②하지 않는다
	집회 결사 자유권	정당 활동	S13-7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집회 자유	S13-8
		동아리 활동	S13-9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 제한 규정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0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1	학생 100명당 동아리 수 [평가척도] ①1개미만 ②1개-4개미만 ③4개-7개미만 ④7개-10개미만 ⑤10개이상
			S13-12	학생 1명당 참여 동아리 수 [평가척도] ①1개미만 ②1개-2개미만 ③2개-3개미만 ④3개-4개미만 ⑤4개이상
			S13-13	동아리 당 평균 회원 수 [평가척도] ①10명미만 ②10명-20명미만 ③20명-30명미만 ④30명-40명미만 ⑤40명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정치적 권리 (S13)	자치권	학생 자치기구	S13-14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5	학생회 선거의 참여 보장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6	학교 규정에 학생 자치 활동 영역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7	학생 자치 활동 공간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18	학생 100명당 자치 활동 공간 규모[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3m ² 미만 ③3-5m ² 미만 ④5-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의사결정 참여권	의사결정 기구	S13-19	대학 전체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0	학생의 대학평의회 참여기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 [평가척도]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S13-21	단과대학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2	학과의 교수 학생 협의체 구성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3-23	기타 조직 협의체(예: 생활협동조합)에 학생 참여 여부 ①있다 ②없다
경제적 권리 (S14)	경제활동		S14-1	학생 경제활동(인턴, 아르바이트 등) 지원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노동권	교내근로
	S14-3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 위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4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 지체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4-5	작업장(실험실 포함) 내 업무 관련 불만 처리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복지권	장학금/ 학자금		
			S14-7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 비율 [평가척도] ①10%미만 ②10-20%미만 ③20-30%미만 ④30-40%미만 ⑤40%이상
			S14-8	학자금 용자 지원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9	학생 100명당 학자금 용자 수혜 학생 수 [평가척도] ①10미만 ②10-15명미만 ③15-20명미만 ④20-30명미만 ⑤30명이상
			S14-10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학자금 용자 수혜액 비율 ①10%미만 ②10-20%미만 ③20-30%미만 ④30-40%미만 ⑤40%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S14)	복지권	생활비	S14-11	학생 1인당 1달 평균 용돈(주거비 제외) [평가척도] ①10만원미만 ②10만원-15만원미만 ③15만원-20만원미만 ④20만원-30만원미만 ⑤30만원이상
			S14-12	학생 용돈(주거비 제외)의 학생 본인 부담 비율 [평가척도] ①10%미만 ②10%-30%미만 ③30%-50%미만 ④50%-70%미만 ⑤70%이상
	복지지원	S14-13	학생 복지 담당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14	학생 1,000명당 학생 복지 담당 기구 상근자 수 ①0.1명미만 ②0.1명-0.3명미만 ③0.3명-0.6명미만 ④0.6명-0.9명미만 ⑤0.9명이상	
사회적 권리 (S15)	교육 선택권	과목 선택	S15-1	교과목 개설 논의 과정의 학생 참여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	학생들이 교육 과정 선택(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3	다양한 수강 신청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인쇄물)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4	강의 평가제도 도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	교과 과정(커리큘럼)에 대한 정보의 사전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6	강의계획서 사전 공지/ 배포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7	수강 과목의 변경/ 철회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8	학과 선택을 위한 전과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진로/ 직업 선택		S15-9	진로/ 직업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및 준비 과정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0	퇴학(자퇴/제적) 후 재입학 기회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1	진로/ 취업 지원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12	학생 1,000명당 진로/ 취업 지원 기구 상근자 수 ①0.1명미만 ②0.1명-0.3명미만 ③0.3명-0.6명미만 ④0.6명-0.9명미만 ⑤0.9명이상
	교육기회 평등권	등록	S15-13	지난 1년간 등록률 [평가척도] ①70%미만 ②70%-80%미만 ③80%-90%미만 ④90%-95%미만 ⑤95%이상
S15-14			지난 1년간 전체 학생 대비 자퇴, 제적 등 탈락률 [평가척도] ①1%미만 ②1%-3%미만 ③3%-5%미만 ④5%-10%미만 ⑤10%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교육기회 평등권	등록	S15-15	지난 5년간 졸업생들의 평균 재학 년한 [평가척도] ①4년미만 ②4년-4.5년미만 ③4.5년-5년미만 ④5년-6년미만 ⑤6년이상
			S15-16	개설 교과목 1개 당 평균 학생 수 [평가척도] ①20명미만 ②20명-30명미만 ③30명-40명미만 ④40명-50명미만 ⑤50명이상
	인권 교육권	인권 교육	S15-17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수 [평가척도] ①없다 ②1개-2개 ③3개-5개 ④6개-9개 ⑤10개이상
			S15-18	학생 100명당 인권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 수 비율 [평가척도]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양성평등 교육	S15-19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0		학생 100명당 양성평등 교육 교과목 수강 학생수 [평가척도]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S15-21	다문화 교육 교과목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2	학생 100명당 다문화 교육 교과목 수강생 비율 ①1명미만 ②1명-5명미만 ③5명-10명미만 ④10명-20명미만 ⑤20명이상
	정보 접근권	컴퓨터 시설	S15-23	유비쿼터스 실행 장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4	학생 100명당 학생 공용 컴퓨터 대수 [평가척도] ①1대미만 ②1대-5대미만 ③5대-10대미만 ④10대-20대미만 ⑤20대이상
			S15-25	컴퓨터 구입의 재정적 지원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6	컴퓨터 구입 편의(예: 공동구매, 정보제공)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정보교육	S15-27	정보 교육기관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8	정보 교육 교과목 개설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29	학생 100명당 정보 교육 교과목 수강 학생 수 [평가척도] ①5명미만 ②5명-10명미만 ③10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도서관 정보접근		도서관 정보접근	S15-30	지난 1년간 학생 1인당 대출 허용 권수 [평가척도] ①4권이내 ②5권-10권 ③11권-15권 ④16권-20권 ⑤21권이상
			S15-31	지난 1년간 학생 1인당 대출 허용 기간 [평가척도] ①5일이내 ②6일-10일 ③11일-20일 ④21일-30일 ⑤31일이상
			S15-32	도서 구입 비율 (전체 기성회 예산 대비) [평가척도]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S15-33		학생 100명당 좌석수 [평가척도] ①5석미만 ②5석-10석미만 ③10석-20석미만 ④20석-30석미만 ⑤30석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환경권	교지/교사시설	S15-34	교지 확보율 [평가척도] ①100%미만 ②100%-150%미만 ③150%-200%미만 ④200%-300%미만 ⑤300%이상
			S15-35	교사시설 확보율 [평가척도] ①100%미만 ②100%-130%미만 ③130%-160%미만 ④160%-200%미만 ⑤200%이상
			S15-36	학생 100명당 기숙사 수용 비율 [평가척도] ①없다 ②10명미만 ③10명-20명미만 ④20명-30명미만 ⑤30명이상
		정화 시설	S15-37	실험실의 오염물질 정화 시설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건강권	교육공간	S15-38	유해물질로부터 실험실 등을 보호하는 장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39	실험실의 환기 시설(예: 환풍기)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휴식공간	S15-40	실내 휴식 공간(예: 음악 감상실, 카페)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체육시설	S15-41	옥외 체육시설(스타디움, 대형 운동장)의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5-42	학생 100명당 옥외 체육 시설 공간 크기 [평가척도] ①10m ² 미만 ②10m ² -30m ² 미만 ③30m ² -50m ² 미만 ④50m ² -100m ² 미만 ⑤100m ² 이상
			S15-43	옥내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유무 ①있다 ②없다
			S15-44	학생 100명당 옥내 체육 시설 공간 크기 [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m ² -3m ² 미만 ③3m ² -5m ² 미만 ④5m ² -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식당	S15-45	학생 100명당 식당 좌석수 [평가척도] ①1석미만 ②1석-5석미만 ③5석-10석미만 ④10석-20석미만 ⑤20석이상
			S15-46	식당 메뉴 종류 [평가척도] ①2개미만 ②2개-4개미만 ③4개-6개미만 ④6개-8개미만 ⑤8개이상
			S15-47	채식주의자 식단 제공 여부 ①있다 ②없다
		상담시설	S15-48	상담 시설(예: 학생생활상담소)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49	상담 시설에 전문 상담 요원 배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S15)	건강권	보건시설	S15-50	보건(진료)소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1	전문 의료인(의사, 간호사) 배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2	정기 검진 실시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5-53	학생 지원 의료 보험 가입 여부 ①있다 ②없다
문화적 권리 (S16)	문화활동 참여권	문화시설	S16-1	학생 100명당 옥내외 공연장 면적 [평가척도] ①1m ² 미만 ②1m ² -3m ² 미만 ③3m ² -5m ² 미만 ④5m ² -10m ² 미만 ⑤10m ² 이상
			S16-2	전체 기성회 예산 대비 학생 문화 공연 지원 예산 비율 [평가척도] ①0.1%미만 ②0.1%-0.5%미만 ③0.5%-1%미만 ④1%-2%미만 ⑤2%이상
		공연활동	S16-3	지난 1년간 교내 문화 공연 횟수 [평가척도] ①10회이하 ②11회-30회 ③31회-50회 ④51회-70회 ⑤71회이상
			S16-4	지난 1년간 교내 문화공연 종류 (예: 오페라, 연극, 전람회, 영화상영, 음악회, 콘서트, 기타) ①0-1개 ②2개-3개 ③4개-5개 ④6개-7개 ⑤8개이상
	종교 활동 보장권	종교 활동	S16-5	종교 활동 제한 여부 ①있다 ②없다
		종교 시설	S16-6	종교 시설(예: 기도실, 법당)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부록 2> 교수의 인권지표 (제1단계 : 52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11)	평등권	채용/ 교수평가 (공통)	P11-1	학교규정에 신앙관련 건학이념이 교수채용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1-2	학교규정에 신앙 관련 건학이념이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심사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1-3	지난 1년간 귀 대학의 교수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차별대우 (공통)	P11-4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총장·보직교수, 재단측 인사가 교수의 비판적 성향, 출신지나 출신학교, 성별과 인종,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각종 심사와 평가에서 차별대우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P11-5	차별대우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심하다 ②심한 편이다 ③별로 심하지 않다 ④전혀 심하지 않다
		보직/ 위원회 (전임)	P11-6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산식: 여교수 수/ 전체 교수 수) × 100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15%미만 ④15%-20%미만 ⑤20%이상
	P11-7		부처장급 이상 보직 여교수 비율은? (산식: 보직여교수 수/ 전체 보직교수 수) × 100 ①2%미만 ②2%-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P11-8		본부 위원회 여교수 위원 비율? (산식: 여교수 위원 수/ 전체 위원 수) × 100 ①2%미만 ②2%-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인격권	폭력 (공통)	P11-9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 등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P11-10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심하다 ②심한 편이다 ③별로 심하지 않다 ④전혀 심하지 않다
		인격모독 (공통)	P11-11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대학당국이나 재단측이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 학생지도, 연구 이외의 활동을 강요하여 인격모독을 경험한 교수가 있었는지 여부? (예: 학생 모집, 졸업생 취업, 발전기금 유치 등..)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공통)	P11-12	귀하는 지난 1년간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P11-13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①년3회미만 ②년3회-6회미만 ③년6회-12회미만 ④월1회이상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I (P12)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간섭 (공통)	P12-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교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가정사, 통신, 교류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명예·신용 비난 (공통)	P12-2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귀하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거주이전 자유권	주거지 (공통)	P12-3	지난 1년간 학생지도 등을 위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양심·사상 자유 (공통)	P12-4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이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종교자유 (공통)	P12-5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으로부터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P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공통)	P13-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해임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P13-2	지난 1년간 교육, 연구, 학과(전공)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이 방해받거나 억압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출판 (비전임)	P13-3	비전임 교수들이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나 (예: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카페, 소식지 등)? ①있다 ②없다
	집회결사 자유권	자발적 결사 (비전임)	P13-4	비전임 교수들 간에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 (상위단체 지부, 분회도 포함)? ①있다 ②없다
	참여권	교수(협의)회 (전임)	P13-5	교수(협의)회가 학칙에 명시된 기구인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p13-6			교수(협의)회는 학칙 혹은 내규 상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는가? ①의결권 ②심의권 ③자문기구 ④교수회 없음/ 친목단체 기능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P14)	적정 보수권 (전임)	보수	P14-1	부교수(급)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①3천만원미만 ②3천만원-6천만원미만 ③6천만원-9천만원미만 ④9천만원-1억2천만원미만 ⑤그 이상
	노동권 (전임)	일자리 안정성	P14-2	전임교원 중에서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20%미만 ④20%-30%미만 ⑤30%이상
		근무조건	P14-3	전임교원 1인의 주당 평균 시수: ①9시간이하 ②9시간초과-12시간이하 ③12시간초과-15시간이하 ④15시간초과
		업적평가	P14-4	교수업적 평가시 연구, 교육, 학생지도 이외의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예, 신입생모집, 취업률, 발전기금 유치 및 기자재수증, 대중매체 기고 및 출연, 교수자질, 복무태도, 면학분위기 조성, 애교심 등) ①있다 ②없다
			P14-5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가 아닌 항목의 배점 비율?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20%미만 ⑤20%이상
	노동3권 (전임)	노동조합	P14-6	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나? (단위 노조 혹은 상위단체 지부나 분회 포함) ①있다 ②없다
	적정 보수권 (비전임)	보수	P14-7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수준인가?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강사가 속한 등급의 강의료) ①2만원미만 ②2만원-4만원미만 ③4만원-6만원미만 ④6만원-8만원미만 ⑤8만원이상
			P14-8	강의 하지 않는 방학 중에도 시간강사료를 분할지급하는 제도가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P14-9	시간 강사료 이외의 재정 지원이 있는가? (예: 교통비, 자료복사비, 교재비, 실험실습 재료비, 시험채점비 등) ①있다 ②없다
			P14-10	시간강사 위촉 후 학교나 학생 측 사정으로 폐강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시간강사에게 해 주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노동권 (비전임)	일자리 안정성	P14-11	시간강사의 위촉/계약은 몇 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나? ①한 학기 ②2개 학기 ③3개 학기 이상
			P14-12	총 강의시간 중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시간의 비율은? 산식: (시간강사 수업시수/ 총 수업시수) × 100 ①20%미만 ②20%-30%미만 ③30%-40%미만 ④40%-50%미만 ⑤50%이상
	노동3권 (비전임)	노동조합	P14-13	비전임 교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전임(비정규) 교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나 (단위 노조 혹은 상위단체 지부나 분회 포함)?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P15)	사회 보장권 (비전임)	4대보험	P15-1	시간강사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2	시간강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3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15-4	시간강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문화적 권리 (P16)	교육권 (전임)	연구년/안식년 (전임)	P16-1	1년당 연구년제/안식년제 수혜 교수 비율(총 재직교수 대비 %) ①제도 없음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P16-2	연구년제(안식년제) 해외파견 교수에 대한 1년당 경비지원 액수는? ①없음 ②400만원미만 ③400만원-800만원미만 ④800만원-1200만원미만 ⑤1200만원이상
		연구비 (전임)	P16-3	전임교수 1인당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①없음 ②400만원미만 ③400만원-800만원미만 ④800만원-1200만원미만 ⑤1200만원이상
			P16-4	연간(年間) 교내 연구비 수혜율은?(총 재직교수 대비 %) ①없음 ②10%미만 ③10%-20%미만 ④20%-30%미만 ⑤30%이상
	연구시설 (비전임)	P16-5	시간강사들을 위한 강의준비 및 연구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①없다 ②교양과정 건물에 있다 ③단과대학별로 있다 ④학과/전공별로 있다	
시민적 권리Ⅱ (P17)	법적 방어권	고충처리 (전임)	P17-1	학칙이나 내규 상 교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P17-2	지난 1년간 교원에 대해 고충처리 상담을 해 준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①전혀 없다 ②1회-4회 ③5회-9회 ④10회이상
		징계절차 (전임)	P17-3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예: 소속대학장, 교수협의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P17-4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고충상담 (비전임)	P17-5	비전임 교수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기구나 프로그램이 규정상 존재하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해촉 (비전임)	P17-6	비전임 교수들의 해촉이나 계약해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지침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부록 3> 일반직원의 인권지표 (제1단계 : 38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E11)	평등권	채용	E11-1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2	전체 직원에서 여성비율은? ①10%미만 ②10%-25%미만 ③25%-33%미만 ④33%-50%미만 ⑤50%이상
			E11-3	전체 직원에서 장애인 비율은?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E11-4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5	보수, 승진/승급, 정년에 있어서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6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7	과장급 관리 직원에서 여성비율은? ①10%미만 ②10%-25%미만 ③25%-33%미만 ④33%-50%미만 ⑤50%이상	
		E11-8	계장 (혹은 대리)급 관리 직원에서 장애인비율은? ①1%미만 ②1%-2%미만 ③2%-3%미만 ④3%-5%미만 ⑤5%이상	
		근무 기간	E11-9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 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인격권	폭력	E11-10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혹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1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2	지난 1년 동안 교수에 대한 직원의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3	지난 1년 동안 학생에 대한 직원의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E11)	인격권	성폭력	E11-14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하급 직원, 혹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5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I (E12)	사생활 보호권	두발·복장	E12-1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E12-2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E12-3	학교 인근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E12-4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종교	E12-5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E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 표현	E13-1	지난 1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상급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은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출판	E13-2	직원들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예: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①매체가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②매체가 있지만 자유로이 활용하기 어렵다. ③매체가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 ④매체가 없으며 실제로 만들 수도 없다.
	집회·결사 자유권	결사	E13-3	직원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조 외의 단체 혹은 기구가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 ①단체가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 ②단체는 있으나 활동에 제한이 있다. ③단체가 없다.
	참정권	참정	E13-4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①가능하다. ②가능하지 않다.
			E13-5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경제적 권리 (E14)	적정 보수권	소득	E14-1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직원의 비율? ①0% ②10%미만 ③10%-25%미만 ④25%-33%미만 ⑤33%이상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E14-2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노동3권	노조결사	E14-3	일반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단체교섭	E14-4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지? ①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②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권리 (E15)	사회 보장권	적정생활 수준유지	E15-1	4대 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의 일부 혹은 전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문화적 권리 (E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E16-1	지난 1년 동안 직원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이 무시된 것으로 인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문화생활 참여권	E16-2	근무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 실내체육관,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미술전시실 등) ①있다 ②없다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E16-3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없다.
			E16-4	지난 1년 동안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E16-5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자유로이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II (E17)	법적 방어권	징계의 객관성	E17-1	징계(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구성? ①징계위원회가 있으며 직원의 징계시 다른 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②징계위원회가 있으나 직원의 징계시 다른 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③징계위원회가 없다.
		자기 변론권	E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①기회가 주어진다. 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적 구제권	E17-3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여부? ①있다 ②없다

<부록 4> 조교의 인권지표 (제1단계 : 36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A11)	평등권	채용	A11-1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보수· 직무· 승진	A11-2	보수, 직무배치, 승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3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4	조교 가운데 일반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 승진, 근무기간 등에서는 차별을 받는 행정조교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근무 기간	A11-5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인격권	폭력	A11-6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7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성폭력	A11-8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9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10	지난 1년 동안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I (A12)	사생활 보호권	임직원 관계	A12-1	지난 1년 동안 재단사람, 상급 직원, 혹은 동료 조교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교수 관계	A12-2	지난 1년 동안 교수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학생 관계	A12-3	지난 1년 동안 학생으로부터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두발· 복장	A12-4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발 및 복장 제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감시 카메라	A12-5	조교가 근무하는 학과 사무실에 폐쇄회로 TV 혹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 (A12)	거주이전 자유권	거주	A12-6	학교 인근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사상	A12-7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종교	A12-8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A1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 표현	A13-1	지난 1년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교수, 상급직원, 혹은 동료에게 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방해받은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언론출판	A13-2	조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예: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①매체가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②매체가 있지만 자유로이 활용하기 어렵다. ③매체가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 ④매체가 없으며 실제로 만들 수도 없다.
	집회·결사 자유권	결사	A13-3	조교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조 외의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 ①단체가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 ②단체는 있으나 활동에 제한이 있다. ③단체가 없다.
	참정권	참정	A13-4 A13-5	A13-4 대학의 총장 선출과정에 조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①가능하다. ②가능하지 않다. A13-5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조교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경제적 권리 (A14)	적정 보수권	소득	A14-1	전업조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조교의 비율? ①0% ②10%미만 ③10%-25%미만 ④25%-33%미만 ⑤33%이상
	노동권	일자리 안정성	A14-2	일반직원과 달리 전업조교의 재임용기간을 관행적으로 제한하는지? ①제한한다. ②제한하지 않는다.
	노동3권	노조 결사	A14-3	전업조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단체 교섭	A14-4	전업조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지? ①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②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A15)	사회 보장권	적정생활 수준유지	A15-1	4대 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의 일부 혹은 전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업조교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문화적 권리 (A16)	문화권	문화 향유권	A16-1	지난 1년 동안 조교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취향이 무시된 것으로 인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문화생활 참여권	A16-2	근무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 실내체육관,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미술전시실 등) ①있다 ②없다
	교육권	업무역량 제고	A16-3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 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 조직과 전담직원이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 조직과 담당직원이 모두 없다.
			A16-4	지난 1년 동안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정보권	업무정보 획득	A16-5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자유로이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II (A17)	법적 방어권	징계의 객관성	A17-1	조교의 징계를 다루는 징계(관련)위원회의 존재 여부? ①징계위원회가 있다. ②징계위원회가 없다.
		자기 변론권	A17-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①기회가 주어진다. 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적 구제권	A17-3	조교가 이용할 수 있는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의 존재 여부? ①있다 ②없다

<부록 5>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1단계 : 47항목)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규정 (M11)	학칙의 인권 침해성	M11-1	학칙에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소수집단 인권보호	M11-2	여성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3	장애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4	외국인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개인정보 보호	M11-5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6	대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실험실 내의 인권보호	M11-7	실험실 학생과 연구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차원의 지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기구 (M12)	집행기구	M12-1	대학본부에 인권부서 혹은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2	교직원을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①고충처리기구가 있다. ②고충처리기구가 없다.
		M12-3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①고충처리기구가 있다. ②고충처리기구가 없다.
		M12-4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없다.
		M12-5	외국인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없다.
		M12-6	국제결혼자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나 전담직원이 존재하는지? ①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있다. ②행정기구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다. ③행정기구와 전담직원이 없다.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기구 (M12)	연구기관	M12-7	인권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8	여성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9	다문화연구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교육기관	M12-10	인권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1	다문화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상담기구	M12-13	대학구성원이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구나 상담인력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4	대학바깥의 지역사회주민이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구나 상담인력이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학생 자치기구	M12-15	학생자치기구에 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하위기구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6	학생들의 인권동아리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재정 및 인력 (M13)	재정	M13-1	대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인권관련 예산항목이 들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3-2	학생 및 교직원 100명당 인권관련 기구*에 배정된 총예산은? (*인권의 집행, 연구, 교육, 상담 기구와 학생자치기구의 인권 하위기구, 인권동아리를 모두 포함한다.) ①없다 ②1,000원미만 ③1,000원-5,000원미만 ④5,000원-10,000원미만 ⑤10,000원이상
교수		M13-3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명-1명미만 ④1명-2명미만 ⑤2명이상	
직원	M13-4	대학의 공식적인 인권기구에 상근하는 직원이나 혹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상근 직원의 수는 직원 100명당 얼마나 되는지? (인권기구는 각종 인권 관련 기구 모두를 포함하며 직원에는 전업조교도 포함됨) ①없다 ②1명미만 ③1명-3명미만 ④3명-5명미만 ⑤5명이상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시설 (M14)	도서	M14-1	도서관에 독립된 인권전문 서가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여성을 위한 시설	M14-2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M14-3	여학생 전용 휴식공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4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는 여학생 100명당 몇 개 인가? ①없다 ②0.5개미만 ③0.5개-1개미만 ④1개-2개미만 ⑤2개이상
		M14-5	여직원 전용 휴식공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6	전용 휴식공간에 비치된 침상 수는 여직원 100명당 몇 개 인가? ①없다 ②0.5개미만 ③0.5개-1개미만 ④1개-2개미만 ⑤2개이상
		M14-7	남성 화장실 소변기 및 변기 100개 당 여성 화장실 변기의 개수는? ①25개미만 ②25개-50개미만 ③50개-75개미만 ④75개-100개미만 ⑤100개이상
		장애인 시설 및 홈페이지	M14-8
	M14-9		2층 이상 4층 이하 건물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비율은? ①없다 ②25%미만 ③25%-50%미만 ④50%-75%미만 ⑤75%이상
	M14-10		보행시 안내 점자판 등 시각 장애인 지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11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4-1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비율은? ①없다 ②25%미만 ③25%-50%미만 ④50%-75%미만 ⑤75%이상
	M14-13		장애 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제공하는지? ①예 ②아니오
	M14-14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외국인 학생공간	M14-15	외국인 학생 기구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권 증진 프로 그램 (M15)	인권교육	M15-1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인권관련 강좌는? ①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모두 있다. ②교양과목 혹은 전공과목 가운데 한 가지 형태로만 있다. ③전혀 없다.
		M15-2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①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②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③없다.
	다문화 교육	M15-3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M15-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혹은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①제공된다. ②제공되지 않는다.
	인권증진 계획안	M15-5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부록 6> 학생의 인권지표 (제2단계 : 20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 처
인간 존엄권 (S21)	평등권	S21-1	학생 선발(신입, 편입)이나 학생 활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1-1+2
		S21-2	교육과정(수강 과목 신청)이나,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숙사 입사 선정에 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1-4+5
	인격권	S21-3	성폭력 신고기구나 피해자를 위한 상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 ①신고 기구나 상담 시설이 없다. ②신고 기구는 있으나 상담 시설은 없다. ③신고 기구는 없으나 상담 시설은 있다. ④신고 기구와 상담 시설이 별도로 있다. ⑤신고 기구와 상담 시설이 함께 있다.	S11-13+ 14+16
		S21-4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있는가? ①법률지원이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없다. ②법률지원체계는 있으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는 없다. ③법률지원체계는 없으나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는 있다. ④법률지원과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⑤법률지원과 대외 협력(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함께 운영된다.	S11-15+ 17
	안전권	S21-5	폭력 신고기구가 있으며,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나 대외 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1-8~10
시민적 권리 (S22)	법적 방어권	S22-1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있는가? ①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없다. ② 피의자 소명 기회는 있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없다. ③ 피의자 소명 기회는 없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있다. ④ 피의자 소명과 재심 요청의 기회가 모두 있다. ⑤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 규정은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S12-1~3
	사생활 보호권	S22-2	기숙사 출입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2-5
		S22-3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는? ①없다 ②1대미만 ③1대-3대미만 ④3대-5대미만 ⑤5대이상	S12-6
	종교 자유권	S22-4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가입 여부나 활동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2-10+ 11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 처
정치적 권리 (S23)	집회 결사 자유권	S23-1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를 제한하고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3-7
		S23-2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3-9
	자치권	S23-3	학생회 구성이나 자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학교 규정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3-14+ 16
	의사 결정 참여권	S23-4	대학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은?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S13-19+ 20
경제적 권리 (S24)	노동권	S24-1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나? ①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며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②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③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은 지체하지 않는다. ④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며 근로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지 않는다. ⑤근로 학생 제도가 없다.	S14-3+ 4
		S24-2	작업장(실험실 포함) 내 업무 관련 불만 처리 기구 설치 여부 ①있다 ②없다	S14-5
사회적 권리 (S25)	교육 선택권	S25-1	교과목 개설 논의나 강의 평가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5-1+ 4
		S25-2	진로/ 직업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및 준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5-9
	인권 교육권	S25-3	인권 관련 교과목이 몇 개 개설되어 있는가? ①없다 ②1개-3개 ③4개-6개 ④7개-9개 ⑤10개이상	S15-17
		S25-4	다문화 교육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5-21
	건강권	S25-5	실내 휴식 시설(예, 음악 감상실, 카페)이 학과, 단과 대학, 전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가? ①학과, 단과 대학, 전체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전체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다. ③단과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④단과 대학과 전체 학교에 제각기 설치되어 있다. ⑤학과, 단과 대학, 전체 학교에 제각기 설치되어 있다.	S15-41

<부록 7> 교수의 인권지표 (제2단계 : 14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21)	평등권	차별대우 (공통)	P21-1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총장·보직교수, 재단측 인사가 교수의 비판적 성향, 출신지나 출신학교, 성별과 인종,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각종 심사와 평가에서 차별대우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보직/위원회 (전임)	P21-2 P21-3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산식: 여교수 수/ 전체 교수 수) × 100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15%미만 ④15%-20%미만 ⑤20%이상 본부 위원회 여교수 위원 비율? (산식: 여교수 위원 수/ 전체 위원 수) × 100 ①2%미만 ②2%-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인격권	P21-4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 등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간섭 (공통)	P22-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교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가정사, 통신, 교류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공통)		P22-2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이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법적방어권(전임)		P22-3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정치적 권리 (P23)	언론출판 자유권	의사표현 (공통)	P23-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해임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경제적 권리 (P24)	노동권 (전임)	근무조건	P24-1	전임교원 1인의 주당 평균 시수: ①9시간이하 ②9시간초과-12시간이하 ③12시간초과-15시간이하 ④15시간초과
		업적평가	P24-2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가 아닌 항목의 배점 비율? (예, 신입생모집, 취업률, 발전기금유치 및 기자재수증, 대중매체기고 및 출연, 교수자질, 복무태도, 면학분위기 조성, 애교심 등)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20%미만 ⑤20%이상
	적정 보수권 (비전임)	보수	P24-3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수준인가?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강사가 속한 등급의 강의료) ①2만원미만 ②2만원-4만원미만 ③4만원-6만원미만 ④6만원-8만원미만 ⑤8만원이상
			P24-4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 중에도 시간강사료를 분할지급하는 제도가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사회적 권리 (P25)	사회 보장권 (비전임)	4대보험	P25-1	시간강사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P25-2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부록 8> 일반직원/조교의 인권지표 (제2단계 : 14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인간 존엄권 (E21)	평등권	E21-1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4+9
		E21-2	조교 가운데 일반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 승진, 근무기간 등에서는 차별을 받는 행정조교가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1-4
	인격권	E21-3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0+13
		E21-4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4+15
시민적 권리 (E22)	사생활 보호권	E22-1	지난 1년 동안 조교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상급직원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사생활침해를 받아서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A12-1+2
	양심· 사상· 종교 자유권	E22-2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2-4+5
	법적 방어권	E22-3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①자기변론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신청 혹은 구제제도가 존재한다. ②자기변론 기회의 제공과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존재한다. ③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E17-2+3
정치적 권리 (E23)	언론출판 자유권	E23-1	일반직원과 조교들의 생각을 다수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지? (예: 신문, 방송, 잡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①일반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매체가 있다. ②일반직원과 조교 가운데 한 쪽에만 매체가 있다. ③일반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매체가 없다.	E13-2 + A13-2
	참정권	E23-2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혹은 직원대표)과 조교들(혹은 조교대표)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①직원과 조교가 참여할 수 있다. ②직원과 조교 가운데 한 편만 참여할 수 있다. ③직원과 조교 모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E13-5 + A13-5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경제 사회적 권리 (E24)	노동권	E24-1	전체 직원 및 조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 ①0% ②15%미만 ③15%-30%미만 ④30%-45%미만 ⑤45%이상	E14-2
	노동3권	E24-2	일반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가 가능한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E14-3
		E24-3	전업조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지? ①노동조합이 있으며 실제로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③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A14-3
문화적 권리 (E25)	교육권	E25-1	일반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없다.	E16-3
		E25-2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있다. ②전담직원만 있다. ③담당조직과 전담직원이 모두 없다.	A16-3

<부록 9>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2단계 : 12항목)

영역	소분류	고유번호	지표 항목	출처
규정 (M21)	학칙의 인권 침해성	M21-1	학칙 상에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1
	소수집단 인권보호	M21-2	여성,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 이나 학칙상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①여성, 장애인, 외국인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항 이 모두 있다. ②여성, 장애인, 외국인 가운데 하나 혹은 둘을 위한 규정이나 조항이 있다. ③여성, 장애인, 외국인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항 이 전혀 없다.	M11-2~4
	개인정보 보호	M21-3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지 침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1-5
기구 (M22)	집행기구	M22-1	대학본부에 인권부서 혹은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
	연구 및 교육기관	M22-2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인권 연구와 교육을 모두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②인권 연구나 교육 가운데 한 가지만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③인권 연구와 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	M12-7+ 10
	학생자치 기구	M22-3	학생자치기구에 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하위기구가 존재하는지? ①있다 ②없다	M12-15
재정 및 인력 (M23)	재정	M23-1	대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 “인권”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인권관련 예 산항목이 들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3-1
	교수	M23-2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1명미만 ④1-2명미만 ⑤2명이상	M13-3
시설 (M24)	여성을 위한 시설	M24-1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M14-2
	장애인 시설	M24-2	2층 이상 4층 이하 건물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비율은? ①없다 ②25%미만 ③25%-50%미만 ④50%-75%미만 ⑤75%이상	M14-9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인권 증진 프로 그램 (M25)	인권교육	M25-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권교육 강좌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①학생을 위한 강좌와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모두 있다. ②학생을 위한 강좌만 있다. ③전혀 없다.	M15-1+2
	인권증진 계획안	M25-2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5-5

<부록 10> 학생의 인권지표 (제3단계 : 10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 처
인간 존엄권 (S31)	평등권	S31-1	학생 선발(신입, 편입)이나 학생 활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1-1+2
	인격권	S31-2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기구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있는가? ①신고기구나 상담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없다. ②신고기구나 상담시설은 있으나 법률지원체계나 대외협력체계는 없다. ③신고기구나 상담시설은 없으나 법률지원체계나 대외협력체계는 있다. ④신고기구나 상담시설과,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⑤신고기구, 상담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함께 운영된다.	S11-9+10 +13+14 +15+16 +17
시민적 권리 (S32)	법적 방어권	S32-1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있는가? ①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없다. ②피의자 소명 기회는 있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없다. ③피의자 소명 기회는 없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있다. ④피의자 소명과 재심 요청의 기회가 모두 있다. ⑤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 규정은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S12-1~3
	사생활 보호권	S32-2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는? ①없다 ②1대미만 ③1-3대미만 ④3-5대미만 ⑤5대이상	S12-6
	종교 자유권	S32-3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가입 여부나 활동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2-10+11
정치적 권리 (S33)	집회 결사 자유권	S33-1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를 제한하고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3-7
		S33-2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S13-9
	의사결정 참여권	S33-3	대학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은?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S13-19+20
경제적 권리 (S34)	노동권	S34-1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나? ①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며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②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③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은 지체하지 않는다. ④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며 근로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지 않는다. ⑤근로 학생 제도가 없다.	S14-3+4
사회적 권리 (S35)	인권 교육권	S35-1	인권이나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①없다 ②1개-3개 ③4개-6개 ④7개-9개 ⑤10개이상	S15-17+21

<부록 11> 교수의 인권지표 (제3단계 : 7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인간 존엄권 (P31)	평등권 (전임)	보직/ 위원회	P31-1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산식: 여교수 수/ 전체 교수 수) × 100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15%미만 ④15%-20%미만 ⑤20%이상
	인격권 (공통)	폭력	P31-2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총장·보직교수, 재단측 인사가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 등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 (P32)	법적방어 권(전임)	징계절차	P32-1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정치적 권리 (P33)	언론출판 자유권 (공통)	의사표현	P33-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해임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경제적 권리 (P34)	노동권 (전임)	업적평가	P34-1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가 아닌 항목의 배점 비율? (예, 신입생모집, 취업률, 발전기금유치 및 기자재수증, 대중매체기고 및 출연, 교수자질, 복무태도, 면학분위기 조성, 애교심 등)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20%미만 ⑤20%이상
	적정 보수권 (비전임)	보수	P34-2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수준인가?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강사가 속한 등급의 강의료) ①2만원미만 ②2만원-4만원미만 ③4만원-6만원미만 ④6만원-8만원미만 ⑤8만원이상
사회적 권리 (P35)	사회 보장권 (비전임)	4대보험	P35-1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부록 12> 일반직원/조교의 인권지표 (제3단계 : 7항목)

인권 유형	중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인간 존엄권 (E31)	평등권	E31-1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 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 4+ 9
	인격권	E31-2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1-10~13
시민적 권리 (E32)	양심·사상·종교·자유권	E32-1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E12-4+ 5 + A12-7+ 8
	법적 방어권	E32-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자기변론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한다. ②자기변론 기회의 제공과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존재한다. ③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E17-2+ 3
정치적 권리 (E33)	참정권	E33-1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혹은 직원대표)과 조교들(혹은 조교대표)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①직원과 조교가 참여할 수 있다. ②직원과 조교 가운데 한 편만 참여할 수 있다. ③직원과 조교 모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E13-5 + A13-5
경제 사회적 권리 (E34)	노동3권	E34-1	일반직원들과 전업조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가 가능한지? ①일반직원과 조교가 함께 혹은 각각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②일반직원이나 조교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참여할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않다. ③일반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E14-3 + A14-3
문화적 권리 (E35)	교육권	E35-1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이 일반직원과 조교 모두를 위해 있다. ②담당조직이 일반직원 혹은 조교 가운데 한 쪽만을 위해 있다. ③일반직원이나 조교 누구를 위해서도 담당조직이 없다.	E16-3 + A16-3

<부록 13> 대학의 제도 및 운영 관련 인권지표 (제3단계 : 6항목)

영역	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출처
규정 (M31)	인권보호 규정	M31-1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①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한다. ②기존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들어 있다. ③전혀 없다.	M11-1~4
기구 (M32)	집행기구 및 학생자치 기구	M32-1	대학본부 및 학생자치기구에 인권부서,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 하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모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②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③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인권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12-1+ 15
	연구 및 교육기관	M32-2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인권 연구와 교육을 모두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②인권 연구나 교육 가운데 한 가지만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③인권 연구와 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	M12-7+ 10
채정 및 인력 (M33)	교수	M33-1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1명미만 ④1-2명미만 ⑤2명이상	M13-3
시설 (M34)	여성용 시설	M34-1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M14-2
인권증진 프로그램 (M35)	인권증진 계획안	M35-1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M15-5

<부록 14> 대학 인권지표 (제3단계 : 30항목)

지표체계 분류	인권유형/ 중(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학생 인권 편	인간존엄권/ 평등권	S31-1	학생 선발(신입, 편입)이나 학생 활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차별(인종, 국적,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 조항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인간존엄권/ 인격권	S31-2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기구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예: 의료기관, 수사기관) 체계가 있나? ①신고기구나 상담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없다. ②신고기구나 상담시설은 있으나 법률지원체거나 대외협력체계는 없다. ③신고기구나 상담시설은 없으나 법률지원체거나 대외협력체계는 있다. ④신고기구나 상담시설과,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⑤신고기구, 상담시설, 법률지원이나 대외협력 체계가 함께 운영된다.
	시민적 권리/ 법적 방어권	S32-1	징계 절차상 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있나? ①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의 기회가 없다. ②피의자 소명 기회는 있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없다. ③피의자 소명 기회는 없으나 재심 요청의 기회는 있다. ④피의자 소명과 재심 요청의 기회가 모두 있다. ⑤피의자 소명이나 재심 요청 규정은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시민적 권리/ 사생활 보호권	S32-2	학생 1,000명당 옥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는? ①없다 ②1대미만 ③1대-3대미만 ④3대-5대미만 ⑤5대이상
	시민적 권리/ 종교 자유권	S32-3	입학/졸업 요건에 종교 가입 여부나 활동 정도를 반영하고 있나?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집회 결사 자유권	S33-1	학교 규정에 정치 단체 참여(예: 정당 가입 및 활동)를 제한하고 있나? ①있다 ②없다
		S33-2	학교 규정에 동아리 설립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나? ①있다 ②없다
	정치적 권리/ 의사결정 참여권	S33-3	대학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학생 평의원 비율은?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15%미만 ⑤15%이상
	경제적 권리/ 노동권	S34-1	근로학생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나? ①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며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②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 ③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만, 근로 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은 지체하지 않는다. ④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며 근로보상금(장학금 등) 지급을 지체하지 않는다. ⑤근로 학생 제도가 없다.
	사회적 권리/ 인권 교육권	S35-1	인권이나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나? ①없다 ②1개-3개 ③4개-6개 ④7개-9개 ⑤10개이상

지표체계 분류	인권유형/ 중(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교수 인권 편	인간존엄권/ 평등권 (전임)	P31-1	전체 교수 중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산식: 여교수 수/ 전체 교수 수) × 100 ①5%미만 ②5%-10%미만 ③10%-15%미만 ④15%-20%미만 ⑤20%이상
	인간존엄권/ 인격권 (공통)	P31-2	지난 1년간 귀 대학에서 비판적 성향의 교수,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교수, 특정 성별·인종의 교수, 장애인 교수 등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 법적방어권 (전임)	P32-1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정치적 권리/ 언론출판 자유권 (공통)	P33-1	지난 1년간 대학당국이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승진누락이나 중징계(해임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경제적 권리/ 노동권 (전임)	P34-1	교수업적평가 총 배점 중, 연구·교육·학생지도가 아닌 항목의 배점 비율? (예, 신입생모집, 취업률, 발전기금유치 및 기자재수증, 대중매체기고 및 출연, 교수자질, 복무태도, 면학분위기 조성, 애교심 등) ①없다 ②5%미만 ③5%-10%미만 ④10%-20%미만 ⑤20%이상
	경제적 권리/ 적정보수권 (비전임)	P34-2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어느 수준인가? (등급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강사가 속한 등급의 강의료) ①2만원미만 ②2만원-4만원미만 ③4만원-6만원미만 ④6만원-8만원미만 ⑤8만원이상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권 (비전임)	P35-1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장 여부? ①예 ②아니오
직원/ 조교 인권 편	인간존엄권/ 평등권	E31-1	채용, 보수, 직무배치, 승진 혹은 근무기간에 있어서 성별, 출신지역, 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
	인간존엄권/ 인격권	E31-2	지난 1년 동안 동료 사이에서 혹은 재단 사람이나 교수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인격모독이 문제된 일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 양심·사상·종교 자유권	E32-1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억압이나 강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한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한 적이 있었는지? ①있다 ②없다
	시민적 권리/ 법적 방어권	E32-2	징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 및 처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자기변론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가 존재한다. ②자기변론 기회 제공과 이의신청 혹은 구제 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존재한다. ③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표체계 분류	인권유형/ 중(소)분류	고유 번호	지표 항목
직원/ 조교 인권 편	정치적 권리/ 참정권	E33-1	대학평의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학기구에 직원들(혹은 직원대표)과 조교들(혹은 조교대표)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①직원과 조교가 참여할 수 있다. ②직원과 조교 가운데 한 편만 참여할 수 있다. ③직원과 조교 모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제사회적 권리/ 노동3권	E34-1	일반직원들과 전업조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가 가능한지? ①일반직원과 조교가 함께 혹은 각각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②일반직원이나 조교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참여할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않다. ③일반직원과 조교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문화적 권리/ 교육권	E35-1	일반직원과 조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담당조직(기관, 부서 등)의 존재 여부? ①담당조직이 일반직원과 조교 모두를 위해 있다. ②담당조직이 일반직원 혹은 조교 가운데 한 쪽만을 위해 있다. ③일반직원이나 조교 누구를 위해서도 담당조직이 없다.
제도/ 운영 편	인권규정/ 인권보호규정	M31-1	대학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①독립된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한다. ②기존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들어 있다. ③전혀 없다.
	인권기구/ 집행기구 및 학생자치기구	M32-1	대학본부 및 학생자치기구에 인권부서,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 하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①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모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②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③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두 곳에 인권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권기구/ 연구 및 교육기관	M32-2	인권연구 및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①인권 연구와 교육을 모두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②인권 연구나 교육 가운데 한 가지만 행하는 기관이 있다. ③인권 연구와 교육을 행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
	인권자원/ 교수	M33-1	교수 100명당 인권분야 전공 교수*의 수는? (*인권관련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교수) ①없다 ②0.5명미만 ③0.5명-1명미만 ④1명-2명미만 ⑤2명이상
	인권시설/ 여성용 시설	M34-1	대학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인권증진프로그램/ 인권증진 계획안	M35-1	대학의 인권증진 계획안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①있다 ②없다